

2021

정보공개 업무 매뉴얼

www.opengov.seoul.go.kr



- 목 차 -

제1장	정보공개제도 관련 법규	6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6
일반	정보공개제도 개념	7
	정보의 정의	8
	정보공개법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	8
	정보공개 원칙	10
	정보공개 대상기관	13

제2장	01 정보공개청구 개요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청구 처리 흐름도	20
	정보공개 청구권자	19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22
	정보공개의 방법	24
	정보공개청구 처리기간	25
	정보공개 관련 각종 날짜의 기산방법	27
	02 정보공개청구 처리	
	정보공개청구 접수	30
	청구서 배부(처리부서 지정)	31
	정보공개 여부 판단	32
	의견청취(제3자)	36
	의견청취(정보생산기관)	38
	결정통지서 작성	39
	정보공개 수수료 부과 기준	44
	공개 여부 결정 처리(내부결재)	47
	정보공개 결정통지	48
	공개자료 사본제작·공개 실시	49
	청구인 신원확인	51
	정보공개 방법	52

03 기타 청구처리	
정보부존재 처리	54
동일 반복 청구의 종결처리	68
타기관 이송	69
진정·질의 처리	70
04 불복신청 처리	
이의신청	72
정보공개심의회	75
행정심판	78
행정소송	80

**제3장
공개·비공개
사례**

비공개 정보 예시	82
01 다른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101
02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113
0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122
04 진행 중인 재판·수사와 관련된 정보	130
05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140
0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172
07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209
08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237

**제4장
답변 및
공문 예시**

01 정보공개 관련 통지 답변 예시	248
02 관련 공문 예시	263

제1장 정보공개제도 일반

정보공개제도 관련 법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조례 시행규칙

- 정보

[개정법]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2020.12.22. 시행

[구법]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공개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정보공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 일반적 청구권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구할 수 있는 청구권

- 개별적 청구권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 있는 특정한 사안에 대한 청구권(대법원 97누5114)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해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면 열람·사본·복제물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적극적인 형태로 공개하는 제도

- 취득

공공기관이 당해 문서를 수령한 시점 이후의 상태

- 관리

공공기관이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가 조직 내의 공용문서로서의 실질을 갖춘 상태, 즉 당해 행정기관의 조직에서 업무상 필요한 것으로 이용·보존되고 있음을 의미(서울행법 2007구합31478)

- 정보공개청구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
- 사전정보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 없이도 자발적 공개

- 행정정보 공표제도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에 대하여 공개범위, 공개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적극적으로 공개

- 원문공개제도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 원문을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

정보공개에 정의

개정 정보공개법 제2조(정의) ※ 2020.12.22. 시행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 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구법] 제2조(정의)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정보공개법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직무상 활용하기 위해 수집한 통계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신문·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등
-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일반 서적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연한이 경과하여 폐기된 정보
- 현존하지 않는 정보 등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 전자시스템에서 쉽게 생성가능한 자료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지만,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되는 정보의 경우 그 기초자료를 공공기관이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고, 통상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사용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작업이 컴퓨터 시스템 운용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면,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09두6001)

-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공개대상 정보는 정보 그 자체가 아닌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대법원 2010두18918)

- 결재를 득하지 않은 문서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정보' 중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는 반드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 문서'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법령 해석례 12-0188)

- 이메일을 통하여 상급기관에 송부한 문서파일

담당공무원이 특정인의 민원처리 경위에 대하여 일지 형식으로 컴퓨터에 저장하였다가 그 문서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상급기관에 송부한 경우, 그 자료는 담당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메일을 통하여 상급기관에 송부하여 준 행위는 내부적인 보고행위로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으며, 정보공개법의 '정보'에 해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서명에 의한 결재를 거친 문서일 것이 요구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메일을 통하여 송부한 문서파일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정보'에 해당함(대구지법 2010구합3833)

- 통제법 제3조에 따른 통계자료

통계작성기관이 법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면 그 통계기관이 수집 취득 또는 사용한 통계자료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에 해당됨(법령 해석례 08-0224)

- 타 기관에서 생산하여 배포한 문서

타 기관에서 생산한 정보의 경우에도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으로서 사후적으로 배포받아 직무상 이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의 정보에 해당함(서울행법 2007구합31478)

정보공개 원칙

정보공개법 제3조(정보공개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고, 정보공개 예외로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법 제9조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하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대법원 2006두4899)

-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는 당해 정보를 공개해야 함

국민의 알권리는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의 내용을 이루면서도 자유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이 되는 기본권이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1조, 제10조, 제21조, 제34조제1항 참조)와 관련되는 것이므로, 헌법 제37조제2항에 근거하여 **정보공개법이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알권리의 성격에 비추어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이고, 그 제한으로 인하여 국민이 입게 되는 구체적 불이익과 보호하려는 국익의 정도를 비교衡量 하여야 함**(서울행법 2002구합33943)

- 다만, 다른 법률에 정보의 공개에 대한 절차 등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의 절차를 우선 적용 (일반법으로서의 정보공개법)

정보공개법 제4조(적용 범위)

-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해석방법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① 그 특별한 규정이 '법률'이어야 하고, 나아가 그 내용이 ② 정보공개 대상 및 범위 ③ 정보공개 절차 ④ 비공개 대상정보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어야 함(대법원 2007두2555)

※ 다른 법률 예시

- 확정일자(주택임대차 보호법), 건축물대장(건축법), 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법),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부동산등기법),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채무불이행자명부(민사집행법), 소송기록의 열람 및 증명서(민사소송법), 형사재판기록(형사소송법), 지적공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록(의료법) 등

- 법 제4조제1항과 관련한 정보를 정보공개 청구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행정절차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 민원으로 안내(진정·질의 처리)

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과 제9조제1항제1호 비교

제4조제1항	제9조제1항제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p>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비공개로 함제1항제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공개법 적용 배제 •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따라 정보의 발급·열람 등 가능 	<p>효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공개 사유로 규정된 정보인 경우 비공개 결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법 제29조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5조 • 민사집행법 제72조 • 민사소송법 제162조 •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6 • 건축법 제38조 • 부동산등기법 제19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6~27조 • 자동차관리법 제7조 • 의료법 제21조 • 국회법 제128조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등 •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p>관련 법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6항 •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 통계법 제33조 •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7항 • 국가공무원법 제81조, 공무원 징계령 제20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 지방세기본법 제86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6항 • 행정심판법 제41조, 시행령 제29조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3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시행령 제33조 •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 보안업무 규정 제4조 등

정보공개 대상기관(법 제2조제3호, 시행령 제2조)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 포함) 및 그 소속 기관 : 정부조직법상 특별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 합의제 행정기관 포함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에 따른 기관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군·구,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등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 시·도 교육청, 교육지원청, 교육위원회, 교육감 협의체 등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다만,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

- 재개발 조합은 정보공개 대상기관에 해당하지 않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조합은 정보공개법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나, 도시정비법 제124조에 따라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조합원 명부 등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각종 서류 및 관련 자료에 대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열람, 복사 등 정보공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도시정비 사업관련 각종서류 등의 정보공개는 정보공개법이 아니라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원 등에게 공개가 이뤄질 사항임

※ 해당 정보를 지자체 등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경우 지자체에 공개 청구 가능

- 민간위탁기관에서 보유·관리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를 공개 청구한 경우 [부존재 처리 가능]

사단복지법인 00000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의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탁하여 시행하고 있고, 피청구인도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는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을 위탁·운영하는 사단법인 00000에서 생산·보유하는 자료](#)로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위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중앙행심 2015-6687)

정보공개 대상기관의 법적 의무사항

- 청구권리 존중, 정보관리체계 정비 등(법 제6조)
 - 정보공개 업무 주관부서 및 적정 담당인력 배치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정보의 적절한 보존, 신속한 검색체계 유지, 이용자 편의를 위한 홈페이지 구성 등
- 사전행정정보 공표(법 제7조, 영 제4조)
 -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정보
 - 국책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문서목록 작성·비치 및 공개, 정보공개장소 확보(법 제8조, 영 제5조)
 - 정보공개 처리절차, 서식, 수수료 등 편람 작성·비치
 - 정보내용에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도 목록을 작성·공개

※ 정보목록을 공개하기 어려운 경우 예시

- 정보의 존재 자체가 비밀 사항인 경우, ○○에 대한 불시단속계획 등 목록 자체의 공개로 해당 업무의 목적이나 실효성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의 비위 사실 통보 등 공개 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법 제8조2)
 - 전자적으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
-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수립·공개(법 제9조제3항)
- 정보공개책임관 지정(영 제11조의2)
 -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지원
 -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 교육
 -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 정보공개 처리대장 기록유지(영 제16조)

정보공개법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 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며,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 및 신속한 검색,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의 분석 및 공개 등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및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항, 제2항은 2020.12.22.부터 시행, 제5항은 2021.6.23.부터 시행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1항 본문은 2020.12.22.부터 시행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 ① 공공기관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8조의2(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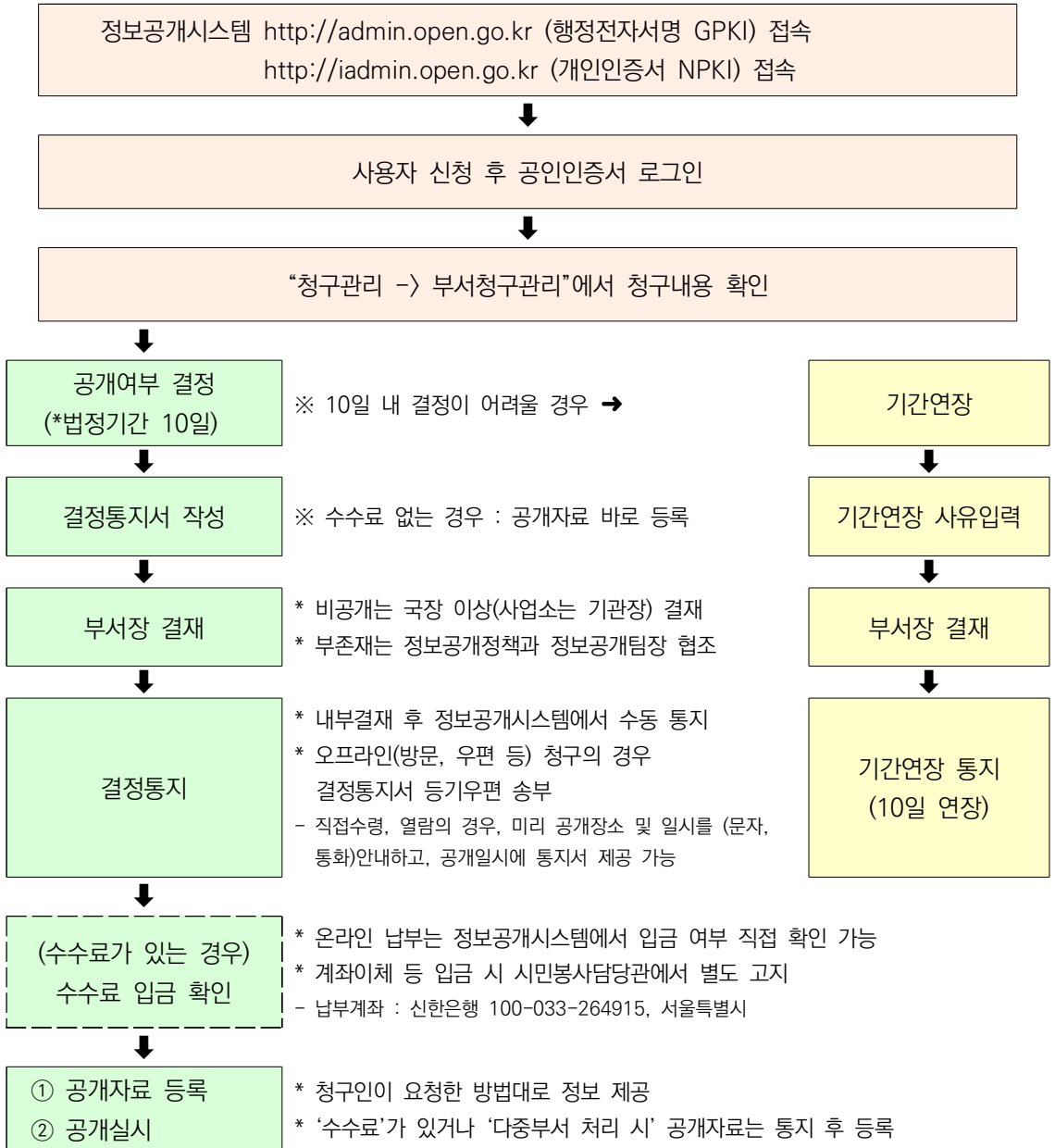
-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장 정보공개청구

01 정보공개청구 개요

정보공개청구 처리 흐름도

• 정보공개청구 처리 절차



정보공개 청구권자

정보공개법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모든 국민
 -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자 등 포함
 -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포함(종중, 동창회 등)
- 외국인(시행령 제3조)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예 :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경우)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청구권자 관련 판례

정보공개청구제도는 국민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함으로써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며,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정신적 자유 영역인 알 권리로서의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민을 정보공개청구권자로, 지방자치단체를 국민에 대응하는 정보공개 의무자로 상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법상 '국민'에 해당되지 아니함(서울행법 2005구합10484)

법 제5조제1항의 '국민'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되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등의 경우에는 설립 목적을 불문함(대법원 2003두8050)

- 정보공개 청구권의 제한

실제로는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처럼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옳음(대법원 2014두9349)

과거에 권리를 남용한 적이 있다는 점만으로 장래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청구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모두 비공개하기로 한다는 결정은 법적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법이 정한 정보공개의 원칙과 권리남용을 규제하려는 위 법리의 취지에도 위배되어 위법함(인천지법 2015구합51228)

- 시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와 정보공개법과의 관계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 의원의 서류제출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자료제출요구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지위,” 즉 주민의 대표기관 겸 감사·통제기관의 지위에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행사하는 “권한”이라 할 것이지,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행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할 것임

따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의 “법령”의 범위에는 정보공개법이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 의원의 서류제출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근거하여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유권해석하고 있음

지방의회가 의회를 통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이라면 정보공개법이 아닌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자료제출 여부를 판단해야 함(법령 해석례 07-0376)

- 의원 서류제출요구 한계

시의원(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제45조)

- 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 ②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할 경우
- ③ 기타 개별법에서 제출을 제한한 자료

국회의원(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 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 ②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할 경우
※ 직무상의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 국회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와 그에 따른 서류제출이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제4호(사전공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회 상임위원회나 국회의원의 서류제출 요구는 국회법 제128조를 근거로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조사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인 바, 이는 국회법에 따른 질문이나 질의를 하기 위한 단서나 그 근거를 찾고 관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 자료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그 자체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국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이라고 볼 수는 없음(법령 해석례 12- 0203)

※ '서류제출 요구 자체, 요구에 따른 제출 내용'은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로 볼 수 없다는 의미

정보공개청구방법

정보공개법 제10조(정보공개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개정법] 제10조(정보공개청구방법) 제1항

1. 청구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청구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이에 준하는 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를 말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본인임을 확인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 제1호, 제2호는 2021.6.23.부터 시행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 또는 담당 임직원(이하 "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정보공개청구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청구 가능

청구방법	직접방문, 정보통신망, 우편, 팩스
청 구 서 기재항목	청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말로써 청구 시 담당공무원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은 정보공개 청구 조서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전화청구의 가능여부 : 불가

말로 청구하는 경우는 전화 등을 통해서 청구하는 방법이 아니며, 예외적으로 병이나 문맹, 기타이유 등으로 청구서를 직접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청구 방법을 의미함 (2019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 P57)

- 정보공개청구의 신청 및 처리결과는 정보공개포털에서 확인 가능

정보공개포털 → 공개청구 → 청구신청조회
직접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청구건도 정보공개시스템에 청구내용을 등록하여 처리하므로 온라인에서 확인 가능(청구 신청 시 기재했던 비밀번호 입력 후 비회원 로그인)

정보공개방법

정보공개법 제2조(정의)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 문서, 도면, 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으로 제공 가능
- 필름 및 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을 제공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은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을 제공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을 제공
- 이미 공개된 정보의 경우 인터넷 주소 및 게시장소 등 접근경로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소재(所在) 안내
- 공개할 때 본인 등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의 방법을 이용하여 보낼 수 있음(시행령 제14조제2항)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전자적 형태로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함(법 제15조)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
 - 공공기관은 공개방법의 선택에 대한 재량권이 없음

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 청구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고,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음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을 뿐 공개 방법을 열람으로 제한할 수 없음(대법원 2003두 8050)

정보공개청구 처리기간

정보공개법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공개여부 결정통지 : 정보공개 법정 처리기간은 10일
 - ※ 청구인의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우리 시는 7일 내 처리 권장
 - 정보부존재, 진정·질의 통지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일 이내
- 처리기간 기산 : 초일은 처리기간에 산입하고, 토요일·공휴일은 미 산입
- 처리기간 기산점(업무처리 시간 내를 기준으로 함)
 - 청구인이 직접 방문한 경우 청구서를 제출한 날
 - 우편 또는 팩스로 청구한 경우 청구서가 기관에 도착한 날
 - 인터넷을 통하여 청구한 경우는 청구서가 시스템에 입력된 날
 - 타 기관으로부터 이송된 경우 이송된 날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 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사유(시행령 제7조)

1. 한꺼번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 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2.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 청구된 정보와 관련 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 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 부분과 비공개 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해진 기간 내에 부분 공개 가능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 폭주 등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 처리기간 연장 결정 시 연장사실 및 연장사유를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연장 통지서는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표준양식을 참고하여 연장 근거법령, 연장기간 및 구체적인 연장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온라인(정보공개시스템)의 방법으로 청구한 경우 시스템 결정통지로 갈음 가능하되, 오프라인(직접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청구한 경우는 결정통지서를 우편, 교부,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송부, 단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함(행정절차법 제14조)

정보공개 관련 각종 날짜의 기산 방법

개정 정보공개법 제29조(기간의 계산) ※ 2020.12.22.부터 시행

- ① 이 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른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결정기간
 2.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후 경과한 기간
 3. 제18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기간

- 원칙 : 민법에 따른 기산(초일 불산입, 공휴일 산입)
 -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만료일은 그 익일로 함

구 분	방 법
제3자 이의신청 제기기간	• 공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법 제21조제2항)
제3자 의사에 반한 공개 시 공개일	•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함 (법 제21조제3항)
정보량이 방대한 경우 정보 제공	•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 정보 제공(법 제13조제2항, 시행령 제12조제2항)

- 예외 : 초일 산입, 공휴일·토요일 불산입

정보공개청구 처리기한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 10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법 제11조)
이의신청 처리기한	•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7일 / 7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법 제18조)
청구인 이의신청 제기기간	•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법 제18조제1항)

제2장 정보공개청구

02 정보공개청구 처리

정보공개청구 접수

• 정보공개청구 접수

- 정보공개 청구서가 제출된 경우 기관의 접수자가 정보공개시스템 입력을 통하여 정보공개 처리대장(시행규칙 별지 제4호)에 기록하고 접수증 교부
※ 접수단계에서 신원 확인 의무는 없으며 공개여부 결정 시 신원 확인을 해야 함
- 즉시 또는 말로써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우편·팩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수한 경우 접수증 발급 생략 가능(청구인 요청이 있는 경우 교부)

• 정보공개청구 보완

- 접수한 청구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문서 또는 구술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보완 요구
※ 청구인이 문서로 보완 요구할 것을 요청한 경우 문서로 실시
- 청구인은 해당 청구의 처리가 완료되기 전에 신청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 가능(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행령 제24조)

• 정보공개청구 취하

- 청구 취하는 청구인이 직접 취하하도록 안내하고,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작성된 취하원 접수 후 처리(별도 취하원 양식은 없으며, 취하 여부 확인이 가능하면 됨)
-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행정청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은 그 처리기간에 미산입(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

• 민원처리법에 따른 처리(시행령 제6조제3항)

- 청구된 내용이 정보공개 청구가 아닌 진정·질의 등에 해당할 경우 민원으로 처리
- 민원처리 사유 등을 포함한 정보공개 청구외 통지서 교부

- 민원신청 방식으로 정보공개를 요청한 경우

청구인이 비록 민원신청의 방식으로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였더라도 그 신청내용과 청구인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위 민원신청을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회신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임.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공개 청구를 위한 형식적인 요건은 민원서류 보완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함

청구서 배부(처리부서 지정)

처리부서 지정 기준

- 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각 부서별 업무를 근거로 처리부서를 지정
- ② 명시된 업무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 관련성이 큰 부서를 처리부서로 지정
- ③ 업무가 이관될 경우 업무를 이관받은 부서를 처리부서로 지정
- ④ 업무가 폐지된 경우 폐지된 업무를 최종 수행하였던 부서를 처리부서로 지정

- 정보공개접수자(기관 관리자)는 청구된 정보의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부서의 정보공개담당자(부서 담당자)는 청구건을 처리할 처리자를 지정
- 부서의 정보공개담당자가 처리자 지정 시 대상자 명단에서 업무 담당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자가 타 부서로 설정되어 있거나 시스템 미가입 상태일 수 있으므로 사용자 정보를 현행화 하거나 사용자 등록하도록 조치 후 지정
- 담당부서 변경 필요 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여 정보공개시스템에서 반려 처리 후 정보공개정책과(기관 관리자)에게 재지정 요청
- 다중처리부서 지정 시 처리

- 다중처리부서 처리 시 주관부서에서 지원부서 입력내용을 포함하여 총괄 결재 및 청구인에게 통지
- 지원부서는 소관사항에 대해 공개여부 자체검토 후 결정입력(필요 시 내부결재)
-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청구로서 소관기관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는 지체 없이 소관기관으로 이송(법 제11조제4항)

주관부서 지정 기준 (하나의 청구서상에 복수의 청구를 한 경우)

- ① 업무관련성이 큰 부서,
 - ② 청구 처리 건이 많은 부서,
 - ③ 청구서 상에 우선순위로 요구된 정보를 처리하는 부서
- 순으로 주관부서를 지정하며, 단 부서 간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협의에 따라 지정함

정보공개 여부 판단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며, 청구내용 중 일부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한하여 비공개(법 제9조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의 비공개 사유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6호는 2020.12.22.부터 시행

- 비공개 결정 시 공공기관은 대상이 된 정보의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법 제9조제1항 몇 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여야 함(대법원 2006두 4899)
 -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는 국민의 알권리 등 공개로 인한 이익과 공개로 침해되는 다른 이익에 대한 보호이익 등을 비교·형량하고, 개별 법령의 공개여부 관련 조문, 유사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판단

- 이미 알려진 정보를 청구한 경우에도 공개 여부 결정을 해야 함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이나 관보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 인터넷검색이나 도서관에서의 열람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음 (대법원 2005두15694)

- 우회적인 방법으로 공개된 정보라도 공개 여부 결정을 해야 함

청구인이 소송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청구정보를 공개하는 셈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우회적인 방법은 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방법으로 법에 의한 공개라고 볼 수 없으므로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되지 않음(대법원 2002두6583)

개정 정보공개법 제6조의2(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 ※ 2020.12.22.부터 시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와 관련된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다)는 정보공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비공개 부분과 공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비공개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

정보공개법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부분 공개의 의미

정보공개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부분공개란 공공기관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의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고 함은 이 두 부분이 물리적으로 분리 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정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 대상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내지 삭제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말함(대법원 2001두6425)

- 처리부서에서 공개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할 경우 예외적으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후 심의 결과를 검토하여 공개여부 결정 가능(시행령 제11조제2항)
- 청구된 정보가 다른 기관이나 제3자와 관련될 경우 당해 기관 또는 제3자에게 청구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음(법 제11조3항, 시행령 제8조, 제9조)
- 원칙적으로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는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대법원 2008두 8680),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다목에 따라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비공개 정보에 대한 공개를 검토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 청구목적 또는 취지를 감안하여 공개 여부 결정
- 기록관(정보공개정책과 관리 서고)에 보존·관리하고 있는 문서의 경우 해당 문서 대출 후 처리부서에서 공개여부 결정

한시적 비공개(공개 유예)

- 정보공개법 제9조제2항에서는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공개청구를 하는 시점(또는 해당 정보 생산 시점)에서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어 공개가 불가하였으나, 시간의 경과 등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없어지게 되어 공개결정 시점에서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여야 함. 예를 들자면, 사업계획에 대한 정보로서 사업실시 중에는 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어렵게 될 사유가 있어 비공개 하였으나, 사업이 완료되어 비공개 사유가 없어졌다면 공개를 하여야 함
- 아울러, 그 종료시점을 미리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에 그 기일과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불필요한 불복제기를 사전 예방하여야 함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제5호 단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제5호 단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5호 단서는 2021.6.23.부터 시행

의견청취(제3자)

정보공개법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청취절차

- 접수일자, 접수번호,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건물번호, 상세주소, 참고항목 제외), 공개대상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 의견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 등(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 청구된 정보가 비공개 대상일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할 실익이 없으나,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 청구인이 불복(이의신청 등)을 제기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즉시 문서로 통지

• 제3자의 의미

제3자의 의미는 정보공개 청구자와 이에 대한 공개결정 여부의 처분을 하여야 할 공공기관 이외의 이해관계인(정보생산기관 포함)을 의미하며, 제3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공공기관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입증(2019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 P67)

• 제3자 의견의 기속여부

제3자의 의견청취는 공공기관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제3자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제3자의 의견만을 근거로 비공개하여서는 안 됨(대법원 2008두8680)

• 제3자 의견청취 시 청구자의 신상 공개 타당성 여부

정보공개법은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 서식에 의거 정보공개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건물번호, 상세주소, 참고항목은 제외)를 작성하게 되어 있으며, 이는 이해관계인인 제3자가 청구내용과 관련된 청구자의 인적사항을 사전에 인식하여 자신의 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임

다만, 이 경우에도 주소는 상세지번을 제외하여 제3자에게 알려주되 청구자에게도 제3자에게 이와 같은 사항이 통지된다는 점을 미리 알려 사전에 민원발생을 예방하여야 하며, 제3자에 대한 통지는 반드시 법정서식인 문서로 통지해야 함(2019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 P67)

-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문서로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자가 원하는 경우 말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함(시행령 8조,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주의사항 : 제3자가 의견을 제출할 경우

- 제3자의 기본정보 및 제출받은 의견을 정보공개시스템에 입력·관리
 - 시스템에 미입력 시 제3자의 이의신청서 시스템 등록 불가
-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 결정통지서는 우편, 교부,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송부, 단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함(행정절차법 제14조)
 - 이 경우 제3자가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보장(법 제21조제3항)
 - 제3자는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가능.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신청(법 제21조제2항)
- 제3자 의견청취 시 사회통념상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와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게시판, 관보,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함(행정절차법 제14조제1항)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한 처분은 위법하며 취소 사유에 해당함(대법원 2002두8350)

제3자 의견청취 및 조치방법

- 정보공개법 제11조,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이 때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자의 의견을 들은 공공기관은 그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며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유의 해당여부 및 공익과 사익을 교량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함
- 또한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에 반하여 (부분)공개하기로 결정했을 경우 청구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부분)공개 결정을 통지하고, 해당 정보는 공개를 결정한 날에 바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 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이 동안에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마찬가지로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에 따라 제3자의 의견에 반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도 제3자의 행정심판 또는 소송 제기를 위한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동일하게 최소 30일의 기간이 보장되어야 함

의견청취(정보생산기관)

시행령 제9조(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경우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접수된 정보인 경우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검토하여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에서 결정
 - 별도서식은 없으며 기관 간 업무협조 등을 통해 실시

다른 기관에서 생산한 정보라도 직무상 취득·관리하고 있는 경우, 정보공개 결정은 공개청구를 받은 기관에서 처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을 존중하여 당해 공공기관이 독자적으로 판단 후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2019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 P67)

결정통지서 작성

[정보공개결정]

- 공개여부 결정유형 : ① 공개, ② 부분 공개, ③ 비공개

- 즉시공개 : 즉시 또는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로, 공개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경우 즉시공개 결정(법 제16조)

- 즉시공개 대상

- 가. 법령 등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 나.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 다.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 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즉시공개 시 수수료는 일반적인 청구와 동일하게 처리

[비공개 내용 및 사유]

- 부분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 시 결정통지서는 청구인이 결정통지서를 통해 기재된 내용의 비공개 사유를 이해하고 불복신청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
 - 비공개 근거조항(법 제9조제1항 각호 등), 비공개 사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등(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비공개 정보가 일부 포함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전체를 비공개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공개 가능한 부분은 공개하여야 함(법 제14조)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법 제9조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하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객관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대법원 2006두4899)

[청구인 신원확인이 필요한 경우]

정보공개 청구시점에서부터 본인 확인을 실시할 필요는 없으며 정보공개 시점에 실시

-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확인(시행령 제15조제3항)
 - 특정인에게만 공개할 수 있는 정보인 경우 '청구인 신원확인 필요' 항목에 '예' 선택
 - 불특정 다수인에게 널리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음
- 정보공개청구 자체를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청구인과 요청대상자가 상이할 경우)는 공개여부 결정 전 신원확인을 실시하여 필요 시 민원서류의 보완을 요청하고, 그 여부에 따라 처리
 -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보완되지 않는 경우 비공개 검토

[공개방식]

정보공개법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 ②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또는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 ④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제15조(정보의 전자적 공개)

- ①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 공개방법 및 교부방법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요청한 방식으로 하 되, 부득이한 경우 청구인과 협의하여 변경
-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법 제11조, 시행령 제12조제2항)
 - 청구인에게 먼저 열람하게 한 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사본·복제물 제공(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에 제공)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전자적 형태로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함(법 제15조)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

- 공개방법의 선택에 대한 재량권 없음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청구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고,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두8050 등 참조),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을 뿐 공개 방법을 열람으로 제한할 수는 없음(서울행법 2007구합20416)

청구인이 전자파일의 형태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달라고 요청한 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는 공개 결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으로서 위 정보가 담긴 전자파일의 교부를 거절함으로써 사실상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이나 다름 없음(중앙행심 2016-13423)

[공개자료 등록]

- 수수료 산정 기준에 의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찾아보기' 버튼을 이용하여 공개자료 파일 첨부(5개 이내, 20MB 이내)
 -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는 수수료 납부여부 확인 이후 공개자료 별도 등록

- 정보공개 청구량 과다 시 청구인에게 안내방안

정보공개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본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음. 다만,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당해 공공기관이 청구자에게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함

- ① ‘~일체’ 식의 과다 청구인 경우 청구인이 법 제8조에 의거 사전공개 된 ‘정보목록’ 검색을 안내 하는 등 구체적인 청구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청구의 보완을 요청
- ②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2항을 적용하여 우선 열람한 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사본 교부를 요청토록 하고, 열람방식에 행정행위의 부관인 ‘조건’ 부기
- ③ 열람형식으로 수수료를 철저히 산출하고 수수료 납부 전에는 사본의 복사 지양(수수료가 많을 경우 비용부담에 응하지 않는 사례가 많음) 등

[공개일시]

-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여부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공개 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시행령 제12조)
- 다만, 청구인이 요청하는 때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음
-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할 경우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함(법 제21조제3항)

정보공개 청구취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청구자가 공개 요청한 정보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판단할 때 우선 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공개를 전제조건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 해당 정보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공개로 인한 청구자의 이익과 공개로 인해 침해되는 다른 이익에 대한 보호이익을 비교하여 후자의 이익이 클 경우에는 해당 비공개 정보 부분을 가린 형태로 부분공개 할 수 있음
- 다만, 공개로 인한 청구자 이익이 무엇인지의 판단은 청구취지를 파악하여야 할 것이므로 현행법상 청구자가 청구취지를 밝힐 것을 공공기관이 강요할 수 없다 할지라도,
- 공개여부에 대한 비교·형량에 필요한 ‘정보의 사용목적(청구취지)’을 밝히지 않는다면 비교시 공개로 인한 청구자의 이익을 당해 공공기관으로서 알 수가 없으므로 공개로 인해 침해되는 다른 이익에 더 주안점을 둘 수 밖에 없음을 청구자에게 주지시켜야 함
-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14조의 규정에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의미는 공공기관이 공개로 인한 청구자의 이익의 정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파악한 청구인의 정보 사용목적의 범위에 맞게 공개 가능한 정보를 부분공개 하라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의 처리부서에서 판단해야 함

정보공개청구 수수료 부과 기준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제2조(적용) 서울특별시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종류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무 및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

-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에서 규정한 행정정보 공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③ 제2항에 따라 수수료의 감면을 신청하는 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행정정보의 공개(45종):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 인화·복제물
문서· 도면· 사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p>전자파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 1,5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3 이상 3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량에 관계없이 무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종이 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체비용은 별도
-------------	--	---

〈비고〉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 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수수료의 산정방법 등

-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시행령 제17조)
 - 우편요금은 공개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 송부하는 경우에 한정
 - 공개여부 결정통지 등 기본적인 행정절차상 소요되는 우편요금은 징수하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 금액은 조례로 정함
 - 서울시 :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 자치구 : 개별 조례로 정함(각 기관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름)
 - 그 외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등은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름
- 하나의 정보공개청구서에 다수의 내용을 청구한 경우 개별 건별로 수수료를 합산하는 대신 공개 결정된 전체 정보를 대상으로 수수료 산정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감면 가능
 -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비용 감면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감면신청에 대한 소명자료 확인 〉

-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법인이 청구한 경우 항상 감면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 목적이 단체 설립 목적에 부합되어야 함
- 학술·연구 등의 계획서, 비영리 단체·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대학교 총장·학교장의 확인서 등 공공기관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연구, 행정감시,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인지 판단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출

〈 감면비율은 공공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 〉

- 감면비율 : 50%(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 감면대상은 수수료에 한함(우편요금 제외)

- 정보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5일 이내의 범위에서 수수료 납부일을 정함(시행령 제12조 제2항)

* 수수료 과다 발생 시에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정 통지 전 청구인에게 사전 안내

공개 여부 결정 처리(내부결재)

-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는 당해 정보를 접수·생산하여 보유·관리하는 부서에서 결정(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6조, 별표 2)

정보공개 결정유형에 따른 결재방법(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6조 별표 2)

- 공개여부 결정 : 과장(소속 부서장)
- 비공개 결정에 관한 사항 : 실·본부·국장, 사업소장, 소방서장
- 부존재 처리에 관한 사항 : 과장 (정보공개정책과 정보공개팀장 협조)
- 즉시공개 결정에 관한 사항 : 결재생략

※ 자치구 및 그 밖의 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별 상이할 수 있음

- 정보공개시스템의 자동결재 기능을 이용하여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전송 후 결재
 - 자동결재 선택 시 처리자가 작성한 내용이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전송됨
 - 업무관리시스템에서 결재완료 시 결재정보를 정보공개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업무관리시스템과의 연계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자동결재가 불가할 경우 수동결재로 처리
- 업무관리시스템상에서 결재 중에 수정한 내용은 정보공개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수정 후 결재 재상신
- 다중처리부서 처리 시 주관부서에서 지원부서 입력내용을 포함하여 총괄적으로 결재 및 청구인에게 통지
 - 지원부서는 소관사항에 대해 공개여부 자체검토 후 정보공개시스템 결정입력

정보공개 결정통지 : 정보공개시스템에서 '통지' 시 절차 완료

개정 정보공개법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또는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 ④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 ⑤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제2항, 제3항은 2020.12.22.부터 시행

- ⑤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제5항은 2021.6.23.부터 시행

-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개여부 결정 완료 시 청구인 및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
- 온라인(정보공개시스템)의 방법으로 청구한 경우 시스템 결정통지로 갈음 가능
 - 민원인이 요청하는 경우 직인날인 후 문서로 송부
- 오프라인(직접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청구한 경우는 결정통지서를 우편, 교부,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송부(직인날인)
 - 송달여부 입증을 위하여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부 권장
 - 교부에 의한 송달의 경우 수령확인서를 받은 후 결정통지서 교부(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청구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

- 결재완료(즉시공개서 작성 완료) 후 정보공개시스템에서 ‘통지’ 버튼을 선택하면 청구인이 청구서 작성 시 선택한 방법(핸드폰, 이메일, 전체)에 따라 결정통지 안내메시지가 발송되고, 정보공개시스템 상 결정통지 절차가 완료됨

- 정보공개 결정통지 방법

정보공개 결정통지에 관하여는 정보공개법 제13조제1항에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결정통지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청구인이 결정통지 방법에 대한 별도의 요청이 없다면, 행정절차법 제14조를 준용하여 우편, 직접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할 것임(2019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 P70)

공개자료 사본제작 및 공개 실시

- 청구인이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공개자료의 사본을 제작하고 공개자료 파일 첨부 (5개 이내, 총20MB 이내)
 - 수수료 미납에 따른 종결 시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수료 납부 이후 사본 제작 실시
 - ※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결정통지서 작성 단계에서 공개자료 등록
- 수수료 정산을 실시하여 정산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공개일시에 정보 제공
 - [공개자료(첨부문서) 등록] 기능을 이용하여 자료 첨부·저장 후, [공개] 버튼을 누르면 청구인은 공개 실시일에 공개자료 열람 가능
-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일로부터 10일(초일 산입, 토요일, 공휴일 불산입)이 지날 때까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공개에 응하지 않는 경우 종결처리 가능 (시행령 제12조제4항)
 - 정보공개시스템에서는 결정 통지한 공개일 후, 15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종결 처리
- 청구정보의 제공은 수수료 납부 확인 후 실시
 -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수수료 납부 시 수수료 납부여부가 '납부완료'로 표시됨
 - 현금(수입증지 또는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처리자는 납부여부를 확인하고 납부사실을 정보공개시스템에 적용
 - 수수료 납부확인 후 시스템에 미적용 시('수수료 납부처리' 미처리) 처리상태가 '10일 초과 종결'로 변경됨에 주의

수수료의 납부(시행령 제17조제6항)

- 온라인(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수수료 납부 가능(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 청구인이 직접 방문하여 현금 납부 시 정보공개 접수부서(시민봉사담당관)에서 현금영수증(수입증지 소인)을 발급해주고, 해당 처리부서에서 청구정보 공개
- 우편으로 공개할 경우 청구인에게 비용(수수료+우편요금)이 기재된 결정통지서를 송부하고 해당 비용 수령 후 청구정보를 우송

청구인 신원확인

-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하여야 함(시행령 제15조)
 - 불특정 다수인에게 널리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음
- 청구인 본인 확인은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시점에 실시
 - 청구시점에서부터 본인확인을 할 필요는 없음

청구인 대상별 청구인 확인(시행령 제15조제2항)

- 본인

내국인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외국인	여권, 외국인등록증 또는 그 밖에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단체 또는 외국법인	사업자등록증, 외국단체등록증 또는 그 밖에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미성년자(가족관계증명서 등), 후견인(특정·친권·후견 기본증명서 등), 변호사(계약서 등), 재산관리인 등(법원의 법정대리인 결정문 등), 기타 법정대리인 증명 가능한 서류

- 임의대리인

- 위임장(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법정대리인에 해당하지 않는 가족, 보험회사, 법무사 등

-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확인(시행령 제15조제3항)
 - 특정인에 국한하여 공개할 수 있는 정보인 경우 '청구인 신원확인 필요' 항목에 '예' 선택
 - 청구인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원확인 후 결정통지서 열람(신분증명서 제출 생략)

정보공개 방법

- 정보공개 방법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요청한 방식대로 공개하되, 부득이한 경우 청구인과 협의하여 공개방법 변경 가능
- 청구서상 수령방법이 '정보통신망'인 경우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자료 제공으로 같음
 - 별도 전자우편 수령을 요청한 경우 해당 자료를 청구인에게 직접 이메일 송부
- 정보공개 청구량이 과다할 경우 공개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본·복제물을 나누어 교부 또는 우선 열람토록 한 후 필요 부분에 대해서 사본 교부(법 제13조제2항, 시행령 제12조제2항)
- 제3자가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하면서 정보공개 정지를 요청하여 받아들여졌을 경우 정보공개 시스템상의 '실시정지' 기능을 이용하여 정보제공 중지

정보 제공 시 유의사항

- 열람에 의한 공개

- 열람 장소를 확보한 후 청구인에게 정보 제공
- 특별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메모와 촬영 허용
- 부분공개 대상인 경우 비공개 사항을 열람하지 않도록 유의
- 열람은 사본·인화물·복제물 제공과 동일하게 공개의 한 형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사본·인화물·복제물 형태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교부에 의한 공개

- 공공기관은 사본(종이출력물), 인화물, 복제물 제작을 위한 기본적인 설비를 구비할 수 있음
-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 등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

- 정보의 전자적 공개

-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정보공개시스템)이나 매체에 저장·제공(매체비용은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수수료 등에 포함 산정)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 요구할 경우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공개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제공할 수 있음(법 제15조)
- 공문서에 포함된 관인·서명 등 위·변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문서파일에서 제외하고 공개하되, 청구인이 관인·서명이 포함된 형태를 요청할 경우 서면 공개

- 출력물의 진본성 확인 여부

공개된 정보는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원본 그대로 제공되기 때문에 '간인'이나 '원본대조필' 표시를 따로 날인할 필요성과 의무는 없음(대구지방교정청행정심판위원회 2006-26)

- 다만, 청구인이 소송자료 등 중요한 용도로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간인 또는 '원본대조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치 가능
- 공무원이 공개하는 정보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허위로 정보를 공개한다면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됨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지방공무원법 제69조 및 형법 제225조 및 제227조

- CCTV 영상 공개 (2019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 P140)

- CCTV 영상에 포함되어 있는 타인의 얼굴, 차량번호 등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함
- 다만 청구인 본인만이 촬영된 경우 본인에게 공개 가능할 것이나, 청구자 외 다른 사람 얼굴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마스킹 처리를 하는 등 개인(타인)을 식별할 수 없게 처리하여 열람 등 할 수 있을 것이며, 마스킹 처리 등에 수반되는 정보공개수수료는 청구인이 부담해야 할 것임

제2장 정보공개청구

03 기타 청구처리

정보부존재 처리

개정 정보공개법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 2020.12.22.부터 시행

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2.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질의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

-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등 공개 청구의 내용이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 민원으로 분류하여 처리
- 정보부존재 처리
 - 시행령 제6조제4항 따라 ‘정보공개 청구외 통지서’ 교부(시행규칙(별지 제4호의2서식))
 - 정보공개 담당부서(정보공개정책과 정보공개팀장)의 협조결재를 통해 통일성 있는 판단
- 정보부존재 처리기간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일
- 공개(비공개) 정보와 부존재 정보가 혼합된 경우
 - 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를 교부하되, 결정 통지서상에 부존재 내용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 이 경우 정보공개법에 따라 10일 이내 처리
- 정보부존재 통지는 정보비공개결정 통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정보공개법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대상은 아니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은 가능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공공기록물법률 등의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된 경우



정보를 취합·가공해야 하는
경우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1.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생산·접수’의 판단기준]

- 종이기록물 및 업무관리시스템(기록관리시스템 포함) 등의 전산시스템에서 청구 받은 정보를 검색가능한지 여부
- 청구 받은 정보가 법령(직제), 업무 분장, 업무 지침이나 훈령, 예규 등에 따라 서울시의 소관업무인지 여부
- 관련 법령 등에 명시된 정보의 생산·접수시기가 도래했는지 여부
- 정보공개를 위해 추가적인 행정 절차 등이 요구되는지 여부
 - 청구인이 정보를 서울시가 보유·관리할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을 입증할 경우(문서 제목·번호, 작성일자, 관련사항 등 제시)에는 정보의 존부를 적극 판단

구 분	사 례
상당한 개연성을 인정한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행법 2005) 청구인은 공공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이를 확인 조사할 수 없으므로 직접 증거에 의한 증명은 필요 없고 상당한 개연성을 증명하면 됨 • (서울행법 2008) 교육과학기술부가 수능 수험생 원점수를 갖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 인정 • (행심 2004) 법무부가 수용 중인 약물환자의 일반 현황 정보를 갖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 • (행심 2010) 체신청이 대리서명 집배원 수와 비율 정보를 갖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 인정 • ○○노동청이 임금체불 관련 민원 건수와 평균 민원처리기간을 갖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 인정
상당한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행법 2007) KBS가 장르별 제작원가의 세부내역을 갖고 있을 개연성 부족 • (행심 2011) 표준건축비 산출을 위한 설계도서 정보를 작성하여 보유·관리해야하는 의무 규정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 (행심 2009)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청구자가 입증해야 하며, 아무런 입증을 못하면 당해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관리한다고 볼 수 없음

- 타기관 보유 정보의 이송처리(법 제11조제4항)
 - 서울시에는 존재하지 않으나 타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경우
 - 서울시가 생산·접수한 정보를 관련 절차에 따라 타 기관으로 모두 이관한 경우
- 청구인이 대상기관을 이미 알고도 서울시에 청구하였거나, 이송대상 기관이 다수인 경우는 이송 처리 않고 기관 안내 후 정보부존재 처리

민원인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학교를 알고 있으면서도 감독교육청에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해당 학교로 이송해 줄 것을 반복해서 요청하고, 해당 교육청은 민원인에게 학교로 청구서를 제출할 것을 여러 차례 안내하였음에도 민원인이 다시 교육청에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학교로 이송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청구가 아니므로 교육청은 같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학교로 이송하지 않아도 됨(법령 해석례 10-0251)

- 민간위탁기관에서 보유·관리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를 공개 청구한 경우 [부존재 처리 가능]

사단복지법인 00000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의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탁하여 시행하고 있고, 피청구인도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는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을 위탁·운영하는 사단법인 00000에서 생산·보유하는 자료](#)로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위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중앙행심 2015-6687)

2. 정보를 취합·가공해야 하는 경우

['취합'의 판단 기준]

기관 內	기관 外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서별 관리 정보인 경우 취합으로 볼 수 없음(정보공개 여부 판단) <p>예) 서울시 각 부서별 홍보비 예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인은 공공기관 대상 보유·관리 하는 정보를 청구하는 것이고, 부서별로 정보가 나누어져있는 것은 기관 내부의 업무분장에 불과하므로 '취합'의 개념이 아님 부서별로 특정 정보의 관리형태가 다를 경우 이를 청구인 요구에 맞춰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있는 그대로 취합·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 기관의 정보까지 취합·제공할 의무는 없음(정보부존재 처리) 관련 규정 등에 타 기관 정보까지 취합·관리할 의무가 있는 경우는 취합 아님(정보공개 여부 판단) 자치사무 등에 해당하여 청구정보를 자치구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시가 정상적인 업무프로세스상 생산·접수하지 않은 정보일 경우 해당 자치구로 이송 <p>예) 서울시에 자치구 기초수급대상자 지급내역을 요청한 경우 자치구로 이송</p>

- 정보의 생산·가공·취합의 가능 범위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국민의 청구에 따라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할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공공기관이 이미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 등의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열람, 사본 또는 복제물 교부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서울행법 2006구합20716)

다만, 여러 종류의 정보가 복합되어 있거나 여러 부서에서 취합하여 공개하는 경우 등 정보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큰 업무 부담을 유발하는 경우로서 청구인도 정보의 가공에 동의한다면 부분적으로 정보의 가공 공개도 허용

['가공'의 판단 기준]

구 분		사 례
형태 변환	① 非전자 형태 → 전자적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非전자 정보를 스캐너 등으로 전자적 형태로 변환은 공개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2장의 처리대장을 스캐너를 이용하여 PDF형태로 요청한 경우 가공 아님 • 非전자정보를 엑셀 프로그램 등의 전자적 형태로 제공은 가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대장을 엑셀파일(한글파일)로 변환하여 요청한 경우는 가공
	② 전자적 형태 → 非전자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 통계·분석 프로그램으로 시간적·경제적 부담 없이 변환이 가능하면 가공 아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엑셀관리 정보는 원 데이터를 정렬, 삭제하여 공개가능 - 별도의 분석 조건(지역 내 기초수급대상자 수)을 지정하여 추출할 수 있는 경우 가공 아님 • 전자적 정보를 非전자 정보로 변환 시 정보량이 많고 성질이 훼손되면 가공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음파일 형태의 녹취록(3시간)을 서면형식의 녹취록으로 요청한 경우는 가공
추출	① 非전자 정보의 추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의 기존 관리기준으로 추출하는 것은 가공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인허가 제출서류별로 관리하는 것을 건축회사별, 층수별, 주차장 보유여부별 통계 추출은 가공 - OO공사가 관리하는 입사원서를 제출자 출신지·대학별, 소지 자격증별 추출은 가공
	② 전자적 정보의 추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 통계·프로그램 없는 전산정보의 추출은 가공에 해당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OO시스템에서 공무원이 개인정보 열람 내역을 추출하여 공개하는 것은 해당 시스템상에서 통상 사용되는 기술로, 검색·편집이 곤란하므로 가공 - 범죄통계시스템에서 직업별 범죄통계는 관리하지 않는 경우 '헌국회의원 중 범죄자 이름, 정당, 혐의 명, 처분결과'를 추출하는 것은 가공
조합	① 非전자 정보의 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의 기존 관리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조합하는 것은 가공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일별 관리하는 전입세대 신고서를 번지별 분류는 가공
	② 전자적 정보의 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 통계·분석 프로그램 없는 전산정보의 조합은 가공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단위로 공개하는 조선왕조실록을 연 단위로 공개 시 별도 인력, 시간, 예산이 소요되므로 가공 - 동별 관리하는 범죄 발생률을 초·중등학교 특정 반경 내의 발생률로 공개는 가공

- 공공기관이 정보를 취합·가공하여 제공할 의무는 없으나, 업무상황, 정보 관리방식·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취합·가공 여부 판단
- 별도 취합·가공이 필요한 청구의 경우 원 정보 그대로 공개 가능
 - 원본 공개가 오히려 큰 업무 부담을 유발하고 청구인도 가공에 동의하면 제한적 가공 가능
- 비공개 및 공개부분이 쉽게 분리되어 부분공개가 가능하면 가급적 공개

- 전산시스템상 조건별 자료 추출 정보의 정보공개 대상 여부

정보가 독자적인 자료형태로 전산기기 내에 작성·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개개의 기초 정보자료가 모두 입력되어 있고, 그 정보를 이용한 통계자료나 석차 등의 결과물을 검색·편집·작성할 수 있는 경우 결국 사실상 공개대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서울행법 2006구합 47759)

따라서 전산시스템상 별도로 조건을 지정하여 추출한 원시정보를 공개하는 방법과 일정 조건을 지정하여 가공한 정보를 공개하는 방법을 비교하여 공개방법을 결정하여야 함

- 전산자료 가공의 범위에 관한 사례

업종별, 직업별 체납규모 등의 일부 세무조사 관련 정보는 간단한 전산처리를 통하여 쉽게 분리시켜 따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라 할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2000.11.중앙해심)

대입수능 원점수 정보 공개청구에서 정보의 기초자료는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고 당해 기관에서 통상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기술적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기초자료를 검색하여 편집할 수 있고 해당 컴퓨터 시스템 운용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면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되지 않음(대법원 2010, 2009두6001)

3.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폐기’된 경우

[‘보존기간 경과’ 및 ‘폐기’의 판단기준]

- (보존기간 경과) 관련 법령 등에 정해진 보존연한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 보존기간 경과여부는 청구시점이 아닌 ‘공개를 결정하는 시점’ 기준
- (폐기) 청구 받은 정보가 실제 보유·관리 대상인지 여부
 - 보존기간이 경과하여도 실제 폐기되지 않고 보유·관리하고 있을 경우 정보부존재로 판단할 수 없으며 공개 여부 결정을 하여야 함

- 청구 받은 정보가 관련 법령에 따른 보존기간과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안내

예시) 귀하께서 청구하신 2002년 ○○사업 관련 검토보고서는 ○○법 시행령 제○조에 따라 보존연한이 5년으로, 2007년에 폐기하여 정보부존재 통지함을 알려 드립니다.

- 보존기간 내에 있더라도 불가피한 사유로 실제 관리하고 있지 못한 경우 확인 가능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정보부존재 처리

천재지변, 관공서 이전, 업무 이관, 공무원의 고의·과실 등 관리 소홀에 대하여 징계, 처벌, 국가배상청구 가능(헌재 2002헌바59)

- 국가기록원 및 타기관 등으로 이관된 정보의 경우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이송처리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에서 한때 보유·관리하였으나 정보의 폐기·국가기록원 등으로 이관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공공기관에 있음

공개청구자는 그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때 보유·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들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 있음(대법원 2010두18918)

4.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포괄적 청구’의 판단기준]

-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은 사회 일반인 관점에서 청구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어야 함(대법원 2000두9212)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전문직원이 합리적인 노력으로 그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문서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로 청구인이 얻고자 하는 정보의 내용을 제출(서울행법 2006 구합20716)

- 청구기간과 내용 등 청구정보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부존재 처리)

예시) 협회와 관련된 주요 감사내용의 문건은 기간과 감사에 대한 내용이 특정되지 않음

- 청구정보가 다수 규정과 업무·조직·프로그램 등에 걸쳐있는 경우(부존재 처리)

예시) 전년도 문화사업 계획 관련 공문·예산 문서 일체는 특정 부서나 사업에 한정되지 않음

- 정보가 특정되지 않아 공개량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부존재 처리)

예시) 교정기간 내 수용자 처우에 대한 법무부 장관 지시사항

- 정보가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처럼 보이나 실제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부존재 처리)

예시) 기관장 업무추진비와 전 부서와 관련된 42개 항목의 정보공개 청구와 청구일 다음 날에 2개 부서와 관련 15개 항목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등 양이 방대하여 모든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인력과 시간이 소요(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 2018-13)

- 포괄적 청구에 해당할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보완요청하고 그 여부에 따라 처리
 -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보완되지 않은 경우 정보부존재 검토
 - 보완 요구는 접수 후 즉시 문서·말·전화 등의 방법으로도 가능하나, 민원인이 서면으로 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함(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영 제24조)

서울시 부존재 처리 사례분석

1.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청구내용	검토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식품제조가공업체 현황 (식품안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등)에 의거, 식품 제조·가공업체 신고·등록 업무 권한이 자치구청장에게 있다는 사유로 정보부존재 처리함 	<p style="text-align: center;">〈 정보부존재에 해당하지 않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는 자치구 식품제조가공업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시도행정정보시스템에서 25개 자치구의 식품제조·가공업체 현황(업소명, 연락처, 소재지, 폐업유무 등) 정보를 열람 및 추출할 수 있으므로 서울시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해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관할에 임차 가능한 사유지 현황 (자산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조에 의거, 사유재산 관리 사무를 자치구에 위임하고 있다는 사유로 정보부존재 처리함 	<p style="text-align: center;">〈 정보부존재에 해당하지 않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는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자치구에서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는 현황을 열람할 수 있으며 1년에 1회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실시간 변동 현황을 보유·관리하고 있으며, 임차가능한 사유지 현황은 적극 대외적으로 공개하여 사유지에 대한임대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정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서울시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해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거, 각 지역별 다중이용 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대상 명단 (생활환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거, 자치구가 관내 실내공기질측정 대상 명단을 관리하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는 사유로 정보부존재 처리함 	<p style="text-align: center;">〈 정보부존재에 해당하지 않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는 매년 자치구로부터 실내공기질 측정대상 명단(면적 및 주소 포함)을 수합하여 보유하고 있으므로, 서울시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해당함

청구내용	검토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자치구 부동산 실거래내역 (거래일시, 거래된 물건종류, 거래면적, 거래가격 등) (토지관리과) 	<p>〈 정보부존재에 해당하지 않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치구가 부동산 매매신고 사항을 접수 후 국토해양부의 '온나라부동산 포털'에 등록 후 승인처리하면, 서울시는 해당 시스템을 연계하여 등록 정보 중 개인 식별 정보를 가린 일부 정보를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공개(물건명, 계약일, 거래가격 등)하고 있으므로 서울시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해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업체 업체별 소재지와 배출량 (자원순환과) 	<p>〈 정보부존재에 해당하지 않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는 1년에 1회 정기적으로 자치구의 배출자 신고업체 업체별 소재지와 배출량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하고 있으므로 서울시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해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 토양오염유발시설 현황 (물관리정책과) 	<p>〈 정보부존재에 해당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 토양오염유발시설(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의 설치 신고처리업무 등 관리에 관한 권한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특정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규정에 의거, 자치구청장에게 있으므로 서울시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형마트 및 SSM 영업제한 시행 고시문 (소상공인지원과) 	<p>〈 정보부존재에 해당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관련 업무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자치구 소관 업무로, 서울시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관내 소독의무대상시설 (생활보건과) 	<p>〈 정보부존재에 해당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독의무 대상시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규정에 의거 자치구 소관 업무로, 서울시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청구내용	검토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기후변화 해수면 상승 재난방지 대책 (기후대기과) 	<p style="text-align: center;">〈 정보부존재에 해당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기후변화 해수면상승 재난방지대책에 대한 관련 업무는 관련법령(직제) 및 업무분장, 업무지침 등에 의해 서울시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주택유형별 변화전망 자료 (주거재생과) 	<p style="text-align: center;">〈 정보부존재에 해당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주택유형별 변화전망에 관한 업무는 관련 법령(직제) 및 업무분장, 업무지침 등에 의해 서울시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신고 식품접객영업 단속(00월 00일, 00스넥)으로 인한 벌금선고 관련 사건 조사기록 일체 (특별사법경찰과) 	<p style="text-align: center;">〈 정보부존재에 해당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에서 식품위생법 위반(무신고영업)으로 서울시에 고발 의뢰한 사건이며, 사건 조사기록 일체를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62조(사건이송)에 의거, 월 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하여 서울시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사진판독 현황도(최근) 홍지동 00번지외 2필지 (건축기획과) 	<p style="text-align: center;">〈 정보부존재에 해당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지번은 청와대 반경 4km 이내 지역으로서 '비행금지구역'이므로 항공사진 판독 현황도를 제작할 수 없으므로 서울시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에서 사용 중인 임대헬기 현황(임대시기, 임대비용, 임대방식, 임대헬기 사용내역) (119특수구조단) 	<p style="text-align: center;">〈 정보부존재에 해당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리 당시 사용 중인 임대헬기가 없으므로 서울시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2. 정보를 취합·가공해야 하는 경우

청구내용	검토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부서별 홍보비 예산 및 집행내역과 증빙서류 (시민소통담당관) 	<p style="text-align: center;">〈 정보부존재에 해당하지 않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서별로 자료를 수합하는 것은 기관 내부의 업무분장에 불과하므로 취합·가공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부존재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서울시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해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특별시 교통안전시설정보 시스템의 도로도면을 오토캐드 방식으로 제공 (교통운영과) 	<p style="text-align: center;">〈 정보부존재에 해당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시스템은 각종 레이어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GIS용 shape(shp,shx,dbf) 파일들을 조합하여 intraMap이라는 엔진틀을 통하여 웹 상에 표출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캐드 파일로의 변환은 기술적으로 불가하므로, 서울시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가 자치구에 사무를 위임하고 소요경비를 부담한 내역 (보조금법 및 보조금 조례에 근거한 사업보조금 지급내역은 제외) (조직담당관) 	<p style="text-align: center;">〈 정보부존재에 해당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서울시가 자치구에 경비를 지원한 내역은 위임사무명과 예산사업명이 일치하지 않아(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보조금과 위임사무에 대한 지원경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음) 서울시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나대지 현황 (자산관리과) 	<p style="text-align: center;">〈 정보부존재에 해당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정보는 서울시가 생산,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므로 청구정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을 1대 1매칭 검색하여 건축물이 없는 토지 현황을 추출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이러한 가공 과정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대장의 정보가 정확한가에 대한 여부는 실사 검증을 해야 하는 바, 해당 정보를 생산함에 있어 과도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안이므로, 서울시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3.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보존연한이 경과’하여 ‘폐기’된 경우

청구내용	검토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산구 이촌동 현대아파트 사업승인, 준공 관련 서류 (주택정책과) 	<p>〈 보존기간, 폐기여부, 폐기연도 기재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 문서의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확인이 불가하다고 답변하였으나, 청구 문서의 보존기간 및 보존기간 경과에 따른 상세한 폐기 여부 및 기타 미보유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8년 관악구청 ○○○의 소송관련 기록 열람 및 사본 요청 (조사담당관) 	<p>〈 폐기여부, 폐기연도 기재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8년도 서울시 민원접수 여부는 보존기간 5년이 경과하여 사실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으나, 청구문서의 보존기간 경과에 따른 상세한 폐기 여부 및 기타 미보유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8년경 종로구 평창동 산 ○-○ 일대에서 철거된 37개소 기도원명단 (문화예술과) 	<p>〈 보존기간, 폐기여부, 폐기연도 기재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기관(부서)인 서대문구 및 종로구, 서울시 기록물관리부서 및 건축부서 등에 정보제공을 요청한 결과, 해당 자료는 보존연한 경과 등으로 보관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으나, 청구문서의 보존기간 및 보존기간 경과에 따른 상세한 폐기 여부, 최초문서 생산기관 및 이관 여부, 기타 미보유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4.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청구내용	검토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포 외 8개구의 공동주택 건축심의 목록 (건축기획과) 	<p>〈 청구내용 보완 요청 후 그 여부에 따라 처리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기간과 내용 등 청구정보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로서 청구내용의 파악이 어려움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보완요청하고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보완되지 않는 경우 부존재 처리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2년 10월 8일 시장이 도로를 판매매계약서, 재무과에서 도로를 판 내용물(심의위원, 심의내용과 지목 변경한 서류)(자산관리과) 	<p>〈 청구내용 보완 요청 후 그 여부에 따라 처리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여부, 재산의 지번 등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로서 청구내용의 파악이 어려움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보완요청하고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보완되지 않는 경우 부존재 처리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로구 부동산에 대한 현재, 향후 개발 또는 재개발 관련 정보 (재생협력과) 	<p>〈 청구내용 보완요청 후 그 여부에 따라 처리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기간과 내용 등 청구정보가 특정되지 않아 공개량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에 해당됨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보완요청하고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보완되지 않는 경우 부존재 처리 권고

동일·반복 청구의 종결처리

개정 정보공개법 제11조의2(반복 청구 등의 처리) ※ 2020.12.22.부터 시행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의 성격, 종전 청구와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종전 청구와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처리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하는 경우
2. 정보공개 청구가 제11조제5항에 따라 민원으로 처리되었으나 다시 같은 청구를 하는 경우

-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통지, 부존재 등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반복하여 청구하는 경우는 자체 종결 처리(시행령 제6조제5항)
 - 동일 내용이라 하더라도 정보공개 결정 통지를 받지 않은 청구인이 동일 내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재청구에 해당 안 됨
 - 청구인이 동일 내용을 여러 기관에 청구하거나, 동일 내용을 여러 사람이 하나의 기관에 청구하는 것은 반복청구가 아님
- 종결처리 시에는 해당 청구의 취지나 목적 등 중심으로 '동일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
 - 동일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더라도 추가로 공개할 사항이 있으면 종결처리 하지 않고 공개사항은 공개 처리해야 함
- 정보공개시스템 상 입력한 종결처리 사유는 청구인에게 전달되므로 청구인이 처리결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

• 정당한 사유 기준 (2019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 P98)

- 행정기관의 중대한 착오 또는 위법·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사유
-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변동이 발생하여 그 처리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 동일한 청구를 반복하는 것에 청구인의 사정이나 임의적 요구 등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적 경우 등

- 처리절차 : 내부 결재 후 종결처리
 - 필요시 청구인의 불만 등을 해소하기 위해 문서(오프라인) 통보

타기관 이송

정보공개법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청구인이 당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로서 다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하였을 경우 해당 기관으로 청구건을 즉시 이송하여 처리(법 제11조)
 - 이송 후 청구인에게 이송기관명, 이송사유 및 이송일시 등을 포함한 기관이송 통지서 교부(시행규칙 별지 제3호2 서식)
 -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신청의 경우 시스템을 통해 통보
 - 청구내용이 일반적인 사안인 경우 담당자 1인 결재, 중요 사안인 경우 부서장 결재

구청 및 그 밖의 기관의 타기관 이송 시 결재방법은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기관별 위임전결규정에 반영 등 조치
(행정자치부 공공정보정책과-96(2017.1.9))

- 자치사무 등에 해당하여 청구정보를 자치구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시가 정상적인 업무프로세스상 생산·접수하지 않은 정보일 경우 해당 자치구로 이송
- 청구된 정보 중 일부 정보만 타 기관으로 이송이 필요한 경우 ‘타기관 동시처리’ 기능 이용
 - ‘타기관 동시처리’ 시 이송 기관과 별도로 당초 청구를 접수한 기관에서도 처리 가능
- 정보공개시스템 이송이 불가한 경우 우편·팩스 등을 통해 문서로서 대상 기관 이송
 - 정보공개시스템에서는 ‘문서이송(오프라인)’ 기능 이용
- 이송 대상기관이 너무 많아 업무 부담이 과중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송을 생략하고 소관 기관 안내

청구인이 대상 기관을 이미 알고도 당해 기관에 청구하였거나, 이송대상 기관이 다수인 경우는 이송 처리 않고 기관 안내 후 정보부존재 처리 가능

진정·질의 처리

- 공개 청구된 정보가 진정(陳情)·질의 등 공개 청구의 내용이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 민원으로 분류하여 처리(시행령 제6조제3항)
- 통지서에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사유와 민원으로 처리함에 따른 처리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통지(시행령 제6조제4항)
 - '정보공개 청구외 통지서' 교부(시행규칙 [별지제4호의2서식])
- 진정·질의 처리기간 : 질의·상담·고충 민원 7일 이내, 법령 해석 14일 이내
- 다른 법률에 정보 공개 절차 등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행정절차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 민원으로 안내(법 제4조)

예시)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인감증명서(인감증명법) 등을 발급 요청한 경우에는 각 개별 법령에 따른 절차에 의해서 발급할 수 있음을 안내

• 진정·질의 등 인정 사례

- 서울시사편찬원에서 상정하는 “서울”의 개념, 시사편찬 기획 과정, 시사편찬 기획을 위해 가장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지, 다른 기관과 MOU를 맺는다면 제공받고 싶은 정보나 자료의 종류는 무엇인지?(시사편찬과)
- 백화점과 대형할인마트 주차장의 세차장, 카센터 운영으로 인해 오염원 비산으로 시민에게 위험을 줄 소지가 있음에 대한 기관의 의견 등(소방재난본부)

제2장 정보공개청구

04 불복신청 처리

이의신청

정보공개법 제18조(이의신청) [청구인 이의신청]

-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제3자 이의신청]

-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이의신청 제기권자(법 제18조제1항, 제21조 제2항)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청구인)
 - ※ 공개 결정, 정보부존재 및 진정·질의 처리에 대해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청구인)
 - 제3자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제3자)
- 신청기관 : 결정 통지한 공공기관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청구 가능
- 신청방법(시행령 제18조제1항)
 - 문서(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정보공개시스템 이용 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이의신청 제기 시기
 - 청구인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 제3자 : 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이의신청 제기 기간의 산정

- 이의신청 기간은 민법에 따라 초일 불산입, 공휴일 산입(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만료일은 그 익일로 함)하여 산정
-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을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결정통지가 가능하며, 청구인이 서신으로 통지받기를 요청한 경우에는 결정통지서 수취일이 기준이 됨

- 이의신청서 기재사항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짜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짜

- 처리조치(법 제18조제2~4항, 법 제21조제2항)

- 청구인 또는 제3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시행규칙 별지제9호의2 서식)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시행령 제18조제2항)
- 처리기간 연장 시 연장사유, 연장기간 등을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통지(시행규칙 별지제10호서식)
-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함을 결정통지서에 기재 통지(시행령 제18조제3항)
-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제3자가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보장)(법 제21조제3항)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은 이의신청 처리대장에 기록·유지(시행령 제18조제4항)

- 이의신청 결정권자 : 처분청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분권자는 공공기관의 장이므로 심의회 명의를 아니라 공공기관장 명의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함(대법원 2001추95)

- 이의신청 결정 종류

인 용	본안심리 결과 이의신청이 이유 있고, 원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청구인의 청구 취지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의미
부 분 인 용	본안 심리 결과 이의신청이 이유 있으나, 원처분이나 부작위의 일부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청구인의 청구 취지를 기각과 인용으로 구분하여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결정을 의미
기 각	본안 심리의 결과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원 처분을 시인하는 결정을 의미
각 하	이의신청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한 것인 경우에 본안 심리를 거절하는 결정을 의미

정보공개심의회

정보공개법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심의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은 해당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법]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 ③ 심의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 제3항은 2021.12.23.부터 시행

•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 안건 상정절차

1. 안건상정 요청	2. 심의회 소집	3. 심의회 개최	4. 심의결과 통보
처리부서 → 정보공개정책과	정보공개정책과 → 위원	위원, 소관부서, 정보공개정책과	정보공개정책과 → 처리부서
• 안건상정요청서 (심의안건 포함) 송부	• 안건배포	• 안건설명, 답변 (소관부서) • 의결서 작성 및 회의록 정리	• 회의결과 및 조치사항 통보 • 정보소통광장 내 회의록 게시
심의개최일 5일 전	심의회 개최 2일 전	소관부서 담당자 참석	심의회 개최 후 7일 이내 회의록 게시

•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 복수심의회 구성(참석회의)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7조, 제11조)

- 심의회별 위원구성 : 6명(내부위원 1, 외부위원 5) ※2020.12.31. 기준

-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의무

정보공개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그 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1개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함. 심의회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은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 여부 및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할 상급기관에 심의를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음

- 외부전문가 위촉 시 배제 대상 (2019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 P39)

- 당해 기관 및 소속·산하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전직 직원도 가급적 배제)
- 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원, 해당 교육청의 교육의원
- 직접적인 업무 감독, 관할 등의 관계에 있는 기관(유관 기관, 협회 등) 임직원

외부전문가의 위촉 취지는 국민의 입장에서 공공기관의 이해와 독립하여 정부공개에 관한 판단을 하도록 한 것으로, 공공기관과 일정한 관계가 있거나 영향력 범위에 있는 인사는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의 강행성 (2019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 P41)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대법원 2001추 95 판결 참조) 심의 자체는 정보공개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거쳐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

다만, 예외적으로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 가~라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반드시 거치지 않아도 될 것임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대상(시행령 제11조제1항)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정보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
3. 정보 공개 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제3자의 이의신청
4.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법 제18조제2항)

1. 심의회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정보공개법을 제외한 법령)

- 심의회 심의를 제외하는 경우(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

- 가.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 정보공개심의회의 성격 및 심의결과의 기속여부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법적인 의무와 권한을 가진 주체는 공공기관의 장이고, 정보공개심의회는 공공기관의 장이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보아 의견을 요청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여 심의하는 것임(대법원 2001추95)

따라서, 공공기관의 장은 정보공개심의회의 결정과 달리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다만, 정보공개심의회는 정보공개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제도임을 감안할 때, 정보공개심의회의 결정과 다른 조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2019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 P41)

- 정보공개심의회의 의결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님

피청구인에게 한 정보비공개결정 이의신청에 대해 피청구인이 그 당부에 관한 결정을 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심의회 의결만으로는 곧바로 청구인의 권리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피청구인이 심의회 의결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함으로써 비로소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이의신청 기각)을 미치는 효과를 발생하게 되므로 심의회 의결 자체의 취소 또는 그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임(중앙행심 2013-22198)

행정심판

- 행정심판 제기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청구인, 제3자)
 - ※ 공개 결정, 부존재 처리에 대하여도 불복 가능
-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청구인)

- 심판청구서 제출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제3자가 공개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집행금지 신청을 병행해야 함

-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 재결청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급 상급행정기관임
 - ※ 서울시장 명의를 처분인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구청장 및 투자·출연기관장 명의를 처분인 경우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

행정심판위원회의 소관범위(행정심판법 제6조)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가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행정청(행정심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청 제외)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각 교육감 포함)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의회(의회 소속 모든 행정청 포함)
-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행정심판법 제6조제3항제3호에 따른 행정청 제외)

-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 서울특별시 소속 행정청
- 시 관할 자치구의 장, 소속 행정청 또는 시·군·자치구의 의회(의회 소속 모든 행정청 포함)
- 시 관할 둘 이상의 자치구·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

- 행정심판 제기 기간(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 다만 공개실시일 이후에 제3자가 제기하는 공개 결정에 대한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해당 정보가 공개되었기 때문에 심판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될 수 있음

-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행정심판법 제45조, 제46조)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
- 재결은 서면으로 하되, 재결서에는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공개할 경우 공개실시일

행정심판의 재결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제3자의 행정소송 제기를 위한 기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개결정일부터 공개실시일까지 30일의 기간이 보장되어야 함(법령 해석례 06-0058)

행정소송

- 행정소송 제기권자
 - 행정심판 제기권자와 동일
 -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 제기 가능
- 관할 법원(행정소송법 제9조)
 - 피고의 소재지 관할 법원, 중앙행정기관이 피고일 경우 대법원 소재지 법원
 - 서울은 서울행정법원, 기타 지역은 지방법원 행정합의부
- 행정소송 제기 시기(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 집행정지 신청(행정소송법 제23조)
 - 제3자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는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으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해야 함
 - 공공기관이 제3자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진행 중에 해당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제3자의 불복구제의 실익이 없음

제3장 공개·비공개 사례

비공개 정보 예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관련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 등록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 또는 본인의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공개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수급신청 시 조사를 위한 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국민연금 등 관련 전산망의 이용사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6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중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나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시행령 제113조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4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무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 ※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발명진흥법 제1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 본인 동의 시에 공개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6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에 사무소를 둔 법인의 외국환 거래내역 	외국환거래법 제2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방 업무 관련 위치추적 결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비공개 대상정보	관련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컴퓨터파일에 기록된 전자무역문서 및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 ※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가 없고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서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자료 	통계법 제3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내용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심리 중인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그 밖에 공개 시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행정심판법 제41조, 시행령 제2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 관한 정보 	환경분쟁 조정법 제2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긴급지원대상자 금융·국세·지방세·건강보험·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 정보, 긴급지원대상자 및 가구구성원의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7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축전염병 신고자의 신분 ※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비공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6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 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그 밖에 공개 시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국가공무원법 제81조, 공무원징계령 제2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진 결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의2제1항

비공개 대상정보	관련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한 때에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p>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시행령 제33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에 관한 기록 ※ 의료법 제21조제2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 	<p>의료법 제21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사항 	<p>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 보안업무규정 제4조</p>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사 유
<p>을지연습 총무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자 조직구성 및 역할 분장 등을 포함하는 세부일정 • 참가기관명 • 사건·실시계획 <p>※ 단순한 전달사항, 참가기관 통계, 사건계획작성 지침 등 세부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정보는 공개</p>	<p>을지연습의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로서 공개 시적의 침략에 대비하고자 하는 훈련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계획 • 사건메시지 • 처리결과 • 상황보고 • 강평회 보고서 	<p>을지연습 과정에서 생산되는 정보로서 공개 시 훈련의 내용과 전말을 파악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p>
<p>민방위 및 예비군 자원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방위 지휘통제 계통 및 조직구성 • 대피시설 구조도 • 민방위 경보시설 위치 • 민방위 경보시스템 세부정보 •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결과보고 <p>※ 직장 내 민방위 및 예비군 대상자 및 현황 등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정보는 공개</p>	<p>공개 시 적의 공격에 대한 효과적 대피 및 대응에 직접적인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음</p>
<p>전시대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예산 편성의 세부내역 • 전시 주요조치사항에 대한 수행계획 • 전시 인력동원 계획 • 전시 소방대책 	<p>공개 시 전시의 국정 운영 상황등을 알 수 있음</p>

비공개 대상정보		사 유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망 경로(IP 대역) • 시스템 보안 솔루션 •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구조 • 무선통신망 채널(주파수) • 정보통신망 보안성 검토 결과 취약부분 보고 • 전자정부 통합망 구축계획 및 구성도 • 정보통신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및 심사분석 자료 • 시스템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 시스템 로그파일 	공개 시 해킹, 사이버 테러, 도청 등에 이용되거나 정보통신망의 취약점이 드러나게 되어 국가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직접적 개연성이 있음
위기관리 및 재난대응 매뉴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러진압 절차 • 인적자원, 장비 동원 세부계획 	공개 시 테러행위 등에 이용되어 안보에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보분야 위기대응 매뉴얼 • 비공개로 진행되는 위기대응 훈련일정, 참가자, 목표, 결과에 대한 정보 •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태세 •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p>※ 위기·재난 시 행동요령 등이 국민 공표용으로 제작된 경우는 공개</p>	공개 시 악용되어 위기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비밀기록물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밀취급인가자 성명 • 암호자재 • 비밀기록물 분류사유 	비밀에 해당하거나 공개 시 보안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음
귀빈참석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국무위원, 해외 주요 인사가 참석하는 행사 관련 숙소정보 등 참석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정보 	국가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개 시 대통령 및 해외 주요인사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에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음

비공개 대상정보		사 유
청사관리(방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청사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 다만, 입면도는 건물의 외관을 나타낸 것으로 공개에 따른 위험성이 현저하지 않으므로 공개 • 서울시 청사 내 보안시설(전기기계실, 상황실 등) 관련 정보 • 청사 경비 초소 위치 • 청사 순찰 시간 및 순찰경로 • 경비 및 순찰일지 • 경비시스템 위치, 장비 세부내역, 관리일지 • 공공기관 당직명령부 ※ 청사 방호업무에 직접적 해를 끼칠 개연성이 없는 정보는 공개 	공개 시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되어 청사방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주요시설 및 위험물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다중이용 시설의 세부도면이나 구조도 • 폭발물, 인화성 물질, 유독성 화학약품 등 위험물 보관시설 위치, 세부도면 및 구조도 • 상수도관 배수관망도 • 비축물자 보관장소 • 위험물 운반차량 운행 일시, 운행경로 관련 계획 • 보안목표시설에 대한 지리정보 • 취수장, 정수장의 도면, 구조도 • 독극물, 마약, 방사성 물질 등 유해물질 보유시설 위치, 세부도면, 구조도 	공개 시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되어 국가보안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방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사 유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 고압가스, 독극물, 마약, 방사성 물질 등 위험, 유해물질 보유시설의 세부도면, 구조도 • 다중이용시설의 세부도면이나 구조도 <p>※ 다중이용시설 및 교량 등 안전도 조사결과는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전 공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배수 계획 • 민간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경비 및 순찰일지, 순찰 시간 및 순찰 경로, 경비시스템 위치, 장비 세부내역, 관리일지 	공개 시 테러 및 범죄 행위에 이용되어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현저하게 위협을 초래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력 등 피해자 보호시설 수용대상, 수용자 명단, 주소 등 세부정보 	공개 시 가해자, 이해당사자의 보복 등으로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현저하게 위협을 초래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인 및 피의자 성명 등 개인식별정보 • 위법, 부정행위 등의 신고·통보자 인적사항 •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및 주택공급 내역 	공개 시 참고인 및 피의자, 대상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국민의 재산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권, 인감관리대장 	공개 시 위·변조, 범죄목적 등으로 사용되어 공공의 이익을 해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인의 납세실적 및 재산내역 • 특정 지번의 매매가 • 개인별 보상금 산출내역 및 보상금액 	공개 시 특정인의 재산 현황을 추정할 수 있어 범죄에 이용되거나 개인의 재산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사 유
진행 중인 재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장 • 청구서 • 답변서 • 소송 진행상황 보고서 • 소송 대응방침 • 증거자료 • 준비서면 • 법률자문 결과 • 사실조회 결과 • 조서 <p>※ 재판 확정 후 개별 사안에 따라 공개 여부 재검토</p>	<p>공개 시 진행 중인 재판, 소송의 공정한 진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p>
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 사건과 관련한 증거자료 • 수사 진행절차 • 수사의 구체적인 방법 <p>※ 수사 완료 후(기소 될 경우 판결 확정 시) 개별 사안에 따라 공개 여부 재검토</p>	<p>수사 진행 중에 공개 시 수사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 진행상황 보고서 • 참고인 명단 • 수사의견서 • 범죄인지보고서 	<p>공개 시 가해자 및 이해당사자의 보복 등으로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현저하게 위협을 초래할 수 있음</p>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사 유
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시감사계획 ※ 감사 결과는 감사 종료 후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표 또는 공개(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공개 시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 달성을 방해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시감사 업무[감사기법] 개선안 	공개 시 향후 같은 유형의 감사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음
감독·지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시 지도점검계획 • 불시 조사·단속계획 ※ 감독 및 지도점검 결과는 감사 종료 후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표·공개 	공개 시 감독·지도점검 등의 목적 달성을 방해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시 지도점검 업무 개선안 	공개 시 향후 같은 유형의 감독·지도점검 등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감독 결과 중 대표자 등 관계자 자택 주소 및 전화번호 	공개 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 [9조1항6호에 따른 비공개 사유]
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응시자의 성적, 석차, 답안지 	공개 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 [9조1항6호에 따른 비공개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식, 논술시험, 면접시험 채점표 	공개 시 다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시시비비에 휘말려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답안지 표지 채점위원명, 도장날인 부분 	공개 시 채점위원의 신분이 밝혀져 시험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비공개 대상정보		사 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공고 전의 시험 실시계획 ※ 시험공고 후 공개 	공개 시 불공정한 이익을 줄 수 있음
입찰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종료 이전 입찰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예정가격조서, 계약내역 사양서 	입찰 종료 이전 공개 시 입찰 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설계시공 공법 	공개 시 당해업체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 노출되고 공정한 입찰계약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9조1항7호에 따른 비공개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섭완료 전 계약 관련 교섭방침 	교섭 완료 이전 공개 시 교섭의 난항, 지연 등을 초래할 수 있음
기술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산업기술 • 기술개발계획 	공개 시 연구개발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경영상의 비밀이 유출될 수 있음
인사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청심사위원회 회의록, 소청서, 변명서, 조사보고서, 소청심사조서, 입증자료 • 인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시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의사결정 과정, 내부검토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확정 전 사업검토서 ※ 사업 확정 후 공개 	사업확정 이전 공개 시 내용의 변동으로 인하여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용역 중간보고 ※ 용역 완료 후 공개가능 	용역 완료 전 공개 시 연구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지적 소유권 등을 해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위원 후보자 명단 ※ 확정된 심사위원 명단은 심사수행 후 공개가능 	공개 시 후보자들이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압력을 받을 위험성이 있고 그로 인해 공정한 정책결정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등 회의 녹음파일 	의사결정 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공개 시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비공개 대상정보		사 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공식·미확정 유관기관 협의 내용 	<p>공개 시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 의견교환 등을 방해할 우려가 있고 향후 동종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수 있음</p>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2020.12.22.부터 시행

[구법]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비공개 대상정보		사 유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대전화번호(개인용) • 자택주소 • 개인 이메일 주소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수행하는 업무의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적 접촉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번호 • 신용카드번호 • 통장계좌번호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관계 • 다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관계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 및 가족의 사회적 활동에 관한 권리침해 및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비공개 대상정보	사 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출후보자 명단 • 개인의 징계내역 	<p>공개 시 개인의 명예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개인의 사회적 활동 제한 등 사회적 활동에 관한 기회를 제약당할 우려가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 개인에 대한 평가기록 	<p>직무와 상관없는 개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교류신청 • 채용후보자 명부 • 학력 및 경력 ※ 공무원의 직무 전문성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공개가능 •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 신원조사 • 퇴직사실 확인 • 인사기록카드 	<p>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음</p> <p>※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통계 등의 형태로는 제공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사실 기록 • 납세내역 • 재산 및 채무 현황 • 급여 및 수당내역 • 복지포인트 및 사용 내역 •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 개인사유로 인한 휴가·휴직(연가, 병가, 출산휴가 등) 사유 및 휴가지 등 ※ 직무수행 관련 휴가인 경우는 공개가능 	<p>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서 공개 시 개인의 사회적 활동에 위협을 줄 가능성, 명예훼손, 신체적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p> <p>※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통계 등의 형태로는 제공 가능</p>
<p>공인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대전화번호(개인용) • 자택주소 • 주민등록번호 • 신용카드번호 • 통장계좌번호 • 개인 이메일 주소 	<p>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수행하는 업무의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적 접촉을 초래하거나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p>

비공개 대상정보		사 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관계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 및 가족의 사회적 활동에 관한 권리침해 및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력 및 경력 ※ 공인의 직무 전문성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공개가능 • 재산 및 채무, 급여 현황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회활동에 위협이 가해질 우려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사실 기록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서 공개 시 개인의 사회활동에 위협이 가해질 우려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내역 •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서 공개 시 개인의 사회적 활동에 위협을 줄 가능성, 명예훼손, 신체적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일반시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휴대전화번호 • 자택주소 • 개인 이메일 주소 • 신용카드번호 • 통장계좌번호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관계 	공개 시 개인 및 가족의 사회적 활동에 관한 권리 침해 및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력 및 경력 •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 자격증 소지 여부 • 종교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사실 기록 	공개 시 개인의 사회활동에 위협이 가해질 우려가 있음

비공개 대상정보	사 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 및 소득내역 • 재산 및 채무 현황 • 도시계획 관련 주민동의서 • 복지센터 입소 관련 기록 • 보조금 및 지원금 지급대상자 성명, 주소, 개인별 보조금 수령여부 및 지원비용 ※ 전체 지원비용 및 지원건수 등 현황자료는 공개가능 • 피진정인에 대한 조사 내용 ※ 진정인(청구 당사자)에 대한 조사내용은 진정인에게 공개 	<p>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명예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p>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사 유
법인·단체·기업· 위탁업체·개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등 설립 발기인 성명, 주소 및 약력 • 출연재산 종류, 수량, 금액 및 권리관계를 기재한 재산목록 •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증명서(등기소, 금융기관 등) • 사단법인의 사원명부 • 예산서 • 총사업비 • 자금계획 • 입찰자 신용조회 결과 • 매출액, 부가가치세액, 환급액 <p>※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경우 보조 받은 사업에 대한 정보는 별도 검토</p> <p>※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등 사용의무, 출연재산 신고의무, 결산서류 등 관련 법 등에 제출의무가 부과된 경우 공개</p>	공개 시 해당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 참여 고급기술자의 경력 	공개할 경우 입찰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

비공개 대상정보		사 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가 작성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 	<p>도급사 및 하도급사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하)도급 업체의 자재 및 공정별 원가정보, 산출근거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산업기술 • 내부자금 •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내부관리 정보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법인 등의 기술평가 결과 • 계약 등을 위하여 법인 등이 제안한 내용 	<p>공개 시 해당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음</p>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사유
건축, 주택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표 전 주택건설 사업계획 및 도면 • 공표 전 주택건설 사업계획 검토결과 	사업 공표 전 공개 시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음
도시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표 전 도시재정비 사업계획 및 도면 • 공표 전 재건축 사업계획 및 도면 • 공표 전 개발제한구역 사업계획 및 도면 • 공표 전 유통단지 조성 사업계획 및 도면 	
지역개발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표 전 지역개발계획 및 도면 • 공표 전 시설조성계획 및 도면 • 공표 전 혐오시설 유치계획 및 도면 • 공표 전 역세권 개발계획 및 도면 	

비공개 세부기준

-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은 대외적 기속력이 없음

정보공개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 및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위 규정을 비공개 대상정보 해당 여부에 관한 근거규정으로 삼을 수 없음

- 종전에는 공개하던 정보를 비공개 대상정보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세부기준 개정이 가능함

공공기관이 종전에는 공개하던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개정할 수 있음

공공기관이 항상 작성 또는 수집하는 같은 내용의 정보라고 하더라도 사회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있고, 이전에 공개대상정보라고 하여 이를 영구히 공개대상정보라고 보아야 할 근거가 있다고 할 수도 없음

따라서,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여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전에 공개하였던 정보라도 이후 공개가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비공개 대상정보라고 판단할 수 있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추상적·일반적으로 규정된 사유들을 해당 기관의 업무성격 및 구체적 사안을 고려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하는 세부기준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공공기관이 종전에는 공개하던 정보를 비공개 대상정보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으로 세부기준을 개정할 수 있음(법령 해석례 10-0082)

- 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 정보목록에 기재된 공개구분과 달리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정보목록상의 공개 구분대로 결정함이 타당하나, 정보목록상 공개구분은 정보생산시점에 설정된 것으로 **실제 정보공개 업무 처리 시와 시점상 차이가 있어 변경된 사정을 반영할 여지가 있음**

01. 다른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의 의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비공개 함

※ 제1호는 모든 정보공개 청구 건에 1차적으로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조항임

비공개 이유

-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함(대법원 2004두12629)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이라 함은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정한 정보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재량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정하거나 적어도 비밀 또는 비공개로 하는 정보의 내용과 범위 및 구별기준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법률 규정을 의미함(서울행법 2015구합66806)

비공개 여부의 판단 기준

- 다른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7조’는 지방자치법 제167조, 제171조에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은 명령에 불과하므로 해당 규정을 근거로 비공개할 수 없음
-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은 아닌지 여부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민원처리 담당자의 업무상 주의사항 및 노력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규정을 근거로 비공개할 수 없음
- ‘비밀 또는 비공개’의 범위가 구체적인지 여부
 - ‘형사소송법 제198조제2항’은 비밀 또는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을 근거로 비공개할 수 없음

제1호에 의해 비공개 대상정보가 되기 위한 조건

1. 해당 정보가 법률이나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되어 있어야 함
 - 시행세칙, 훈령, 통첩, 예규, 지침, 총리령, 부령, 감사원규칙, 행정규칙 등 ‘비법규 사항’은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근거가 될 수 없음
 - ‘법률에 의한 명령’은 법률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전부를 의미한다기 보다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대법원 2003두8395)
2. 실질적으로도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함
 - 실질적인 비밀이 되기 위해서는 ① 해당 정보가 일반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②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함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해당하지 않는 사례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비밀 또는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가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민원처리 담당공무원의 업무상 주의사항 및 노력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음(법제처 법령해석 11-0014)

※ 민원회신문서는 공개함으로써 유사민원 등을 통해 개인의 민원을 1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등 공개실익이 크므로 공개하되, 개인정보 및 개인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은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행정규칙(대통령 훈령)으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음(서울행법 2006구합23098)

※ ‘**보안업무규정 제4조**’는 대통령령으로서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2호의 위임을 받아 비밀을 분류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서울행법 2005구합 20467)

- 교육공무원법 제13조, 제14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은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명령이라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06두11910)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7조'는 지방자치법 제167조, 제171조 등에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은 명령에 불과하고, 정보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위임규정이라고 할 수 없음(법제처 법령해석 11-0348)

- '형법 제126조'에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은 이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음(법제처 법령해석 11-0349)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제6항'에서 감정평가업자에게 업무상 비밀의 누설금지 의무를 지우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감정평가업자에게 부과하는 의무일 뿐,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에게 부과하는 의무가 아니므로 정보공개를 청구받은 피고로서는 감정평가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감정평가서 등이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보유하고 있는 정보 그대로 공개 할 의무가 있음(서울행법2005구합33241)

- '(구)공무원 징계령 제20조(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에 따른 징계위원회 회의 회의는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의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음(법제처 법령해석 11-0341)

- '형사소송법 제47조'는 일반에게 공표되는 것을 금지하여 소송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판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야기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문으로, 당해 사건의 고소인에게 그 고소에 따른 공소제기내용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하려는 취지는 아니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2006두3049)

- ‘형사소송법 제198조제2항’은 비밀 또는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하지 않고 있어,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음(법령해석례 11-0350)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제1항’은 아동학대범죄의 수사 등을 담당하거나 이에 참여한 자들에게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비밀엄수 의무를 부과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아동복지법 제65조’는 아동복지사업 등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자의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이들 각 조항은 비밀로 하는 정보의 내용과 범위 및 구별기준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제1항, 아동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단서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서울행법 2015구합66806)

- 그 밖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공공기관의 비밀엄수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시 정보 비(부분)공개 사례 분석

청구내용	심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도시계획위원회에 참가했던 외부위원 명단 및 소속 (도시계획과)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 명단 (지구단위계획과) <p>▷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비공개</p>	<p style="text-align: center;">〈 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의 외부명단은 그 명단에 포함될 이름과 신분, 직위 등으로 인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기는 하나, 그 공개로 인하여 위원들의 사생활이 다소 침해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침해는 위원 스스로 위촉 당시 이미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라목 및 마목에 의거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행심 2014-○○○○행정심판에 참여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명단 (법무담당관) <p>▷ 행정심판법 제41조,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9조제3호에 의거 비공개</p>	<p style="text-align: center;">〈 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사건에 대한 심판이 이미 종료되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개 (2015년 제12차 정보공개심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생활, 교통 등 분야별 민원데이터 (시민봉사담당관) <p>▷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비공개</p>	<p style="text-align: center;">〈 부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민원처리 담당공무원의 업무상 주의사항 및 노력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근거로 볼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5년간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으로 인한 징계처분 현황 (인사과) <p>▷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비공개</p>	<p style="text-align: center;">〈 부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권고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등의 형태로는 제공 가능

청구내용	심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자문의료진 명단 (법무담당관) ▶ 행정심판법 제41조에 의거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부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심판이 종료된 경우 참여한 위원명단은 공개, ◦ 자문의료진 명단은 공개 시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적극적인 의사개진이 위축되고, 나아가 유사 사건에 대한 자문 기피 등으로 원활한 위원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2015년 제5차 정보공개심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민원인이 본인에 대해 제기한 민원 내용 및 처분결과 (조사담당관)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부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민원처리 담당공무원의 업무상 주의사항 및 노력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근거로 볼 수 없음 ◦ 다만 개인정보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내용을 통하여 특정인을 유추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제3자 등의 사생활의 비밀 등에 침해가 있을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산콜센터 전화상담 통화내역 (녹취파일 및 녹취록) (시민봉사담당관) ▶ 청구인이 통화 당사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에 의거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부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취파일은 통화당사자뿐만 아니라 상담사의 목소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에 의거 비공개 권고 ◦ 녹취록의 경우 청구인이 당사자인 경우 공개, 당사자가 아닌 경우 당사자의 의견청취 후 개별정황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사업체조사 자료에 지번(위치정보)이 더해진 자료 (빅데이터담당관) ▶ 통계법 제30조, 제31조, 제33조 의거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사업체조사 통계자료는 비공개를 전제로 조사된 자료이며, 통계법 제30조 등에 따라 ‘통계정보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체명과 결합된 형태로는 비공개 (2013년 제5차 정보공개심의회)

청구내용	심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사건 출동 관련 타인의 구급활동일지 (서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는 ‘구조·구급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조항으로 구급활동일지 비공개에 대한 근거조항으로 적절하지 않음 ◦ 환자 및 신고자 인적사항, 환자상태에 대한 평가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타인에게 공개 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당사자 등으로부터의 위임관계 또한 확인된 바 없으므로 제6호에 의거비공개 ◦ 필요 시 청구취지를 감안하여 상기 우려가 없는 수준의 구급출동현황 공개 검토 (2016년 제13차 정보공개심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발표 고액 상습체납자 건설의 시세납부 현황 및 체납항목 및 금액 (세무과) • 특정인의 지방세 심사결정서 (세무과) • 특정인의 20년간 취득세, 등록세 납부내역 (세무과) • 전자담배에 부과된 업체별 부과·징수 금액 (세무과) • 서울시장의 지방세완납증명서 또는 입증증거 (세제과) ▸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 의거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 의거,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공개 권고

청구내용	심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의견서, 녹취록 등 (법무담당관) • 서행심 개별주택가격결정 취소 사건 녹음기록 (법무담당관) • 서행심 ○○○호 변상금 부과처분취소청구 심판 관련 심리 당시 피청구인 진술 녹취록 (법무담당관) <p>▷ 행정심판법 제41조에 의거 비공개</p>	<p style="text-align: center;">〈 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심판위원회 의견서, 녹취록, 녹음기록은 행정심판법 제41조에 의거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에 해당하므로 비공개 (2013년 제3차, 제12차, 2014년 제13차 정보공개심의회)

관련 판례(재결례)

청구내용	판시(재결)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신상정보를 제외한 타인이 제출한 민원문서(진정서)와 답변서 ▶ 1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를 근거로 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위법·부당함 ◦ 청구인은 이미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 보낸 진정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인지하고 있고, 민원사항의 내용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개인 신상정보를 제외한 내용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요청 정보는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려움 (경남행심 2011-1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료교사에 대하여 제출된 민원서의 민원내용 ▶ 1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6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비공개 정보의 내용과 범위 및 구별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민원업무 처리에 있어서 일반적·추상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를 근거로 대상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없음 ◦ 다만 참가인 등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항에 관한 정보가 노출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고, 대상정보의 공개가 원고의 권리구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민원 제기 자체로 참가인 등에 대한 명예 훼손 혐의가 성립한다고도 보기 어려워 해당 정보가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 보기 어렵거나 대상정보의 공개로 인해 원고가 얻게 될 권리구제의 효과가 그로 인해 참가인 등이 침해받을 사익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비공개 (광주고법 제주행정부 2013누88)

청구내용	판시(재결)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들이 입소된 아동복지시설명, 입소기간, 아들을 아동복지시설에 수용하기로 결정한 문서 ▶ 1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복지법 제65조는 아동복지사업 등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자의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이들 각 조항은 비밀로 하는 정보의 내용과 범위 및 구별기준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68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결과 ▶ 1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공무원법 제13조, 제14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은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명령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6조에서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06두119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와 관련된 자료, 국세청 과세전적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 1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와 관련된 자료’와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는 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라 할 것이고, 위 국세기본법의 규정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라 할 것임 (서울고법 2002누 19086, 국무총리행심 03-04988)

청구내용	판시(재결)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 1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해야한다는 명문의 법령 행정심판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29조 규정,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1호에 의거 비공개 (창원지법 2003구합17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비공개 회의를 한 회의 자료 ▶ 1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법 제118조제4항 본문에서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함 (서울행법 2005구합281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에 부과된 과세정보 ▶ 1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제3항은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 (대법원 2006두182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그 첨부서류로 제출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 1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소정의 과세정보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로서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나 세무공무원이 세무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개별 납세자에 관한 자료 일체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소정의 과세정보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09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종교인의 소득세 납부현황 ▶ 1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사건 과세정보는 특정인에 관한 과세정보로서 내용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사적 비밀, 경제생활의 자유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할 것이어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이 보호하는 과세정보에 해당되어 비공개 (서울행법 2011구합36838)

02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의 의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함

비공개 이유

-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공개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가 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함(대법원 2004두12629)

비공개 여부의 판단 기준

- 공개 시 예상되는 안보·국방·통일에 대한 위협요소, 외교마찰 가능성 등 부정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따져 정보 공개로 인해 보장되는 국정의 투명성, 국가적 의혹해소, 국민의 권익보호보다 우선한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경우에 비공개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를 근거로 비공개하기 위해서는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국민으로서의 일반적인 공개청구권을 넘어 청구인이 특별히 가지는 구체적인 이익도 희생시켜야 할 정도로 커야 하고, 그 여부는 정보의 내용, 공개를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그에 관한 청구인의 구체적 이익 등과 공개거부 사유로서 드는 외교관계 등에의 영향, 국가이익의 실질적 손상 정도 등을 두루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서울행법 2002구합33941)

비공개 유형(2019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 p113)

- 을지훈련 관련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보고서, 강평회보고서 등의 문서, 총무계획 관련 각종문서,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결과 보고서와 같은 민방위교육 관련문서, 예비군 관련 각종문건(군사훈련·국가재난훈련)
- 남북경제협력 사업관련 법적지원에 대한 의견조회 등에 관한 접수공문, 검토의견서, 민사·상사관련 북한법제 및 중국법제 등 연구에 있어서 선정연구과제 및 연구 관련자료 등(통일관련)
-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에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북한이탈주민 관련지침 및 000 북한이탈주민 관련문서 등(서울행법 2013구합56140)
- 위험물의 저장위치

서울시 정보 비(부분)공개 사례 분석

청구내용	심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성곽정비복원공사 준공수리보고서 (문화재과) ▷ 군 부대 시설물 현황 및 위치 등이 포함된 도면과 사진은 제외하고 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부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건 중 군부대 시설물 현황 및 위치 등이 포함된 도면과 사진 등은 국가안보·국방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정보는 제외하고 공개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공선 이름, 구입시기, 구입비용, 관리비용, 운행일지 (수상관리과) ▷ 전시대비 시설인 도강예인선과 도강부선의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부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공선 중 도강예인선과 도강부선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해 관리되는 전시대비 시설로 3급 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해당 관공선의 자료를 제외하고 공개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 본관, 별관, 신관 설계도면 (총무과) ▷ 청사방호 및 보안유지를 위하여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부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는 건물 구조의 세부수치 및 설비(전기, 기계, 통신, 공조 등) 공간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공개 시 테러, 범죄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 입면도는 건물의 외관을 나타낸 것으로 공개에 따른 위험성이 현저하지 않으므로 공개 (2016년 제3차 정보공개심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신청사 화생방대피시설 평면도 및 단면도 (공공사업부) ▷ 화생방대피시설(총무시설)은 국가 비상시설이라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생방대피시설은 국가비상사태 시 총무시설로 사용되는 공간에 있는 시설로서, 국가재난훈련과 관련된 정보이므로 대외 공개 시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권고

청구내용	심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사방호시스템 강화계획 및 특정일의 청사방호직원 명단, 현재 및 앞으로 짜여진 당직명령부 (총무과) ▶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45조3 및 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57조에 따라 수행하는 보안 업무로 공개 시 테러 및 범죄 행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사보안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테러, 범죄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으며, 청사방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2013년 제5차 정보공개심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청 용산도서관 용도변경 도면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 도면이 공개될 경우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되어 청사방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청 정보에 포함된 건물 구조의 세부 수치 등이 공개될 경우 테러·범죄 등에 악용되면 다중이용시설의 청사방호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현저한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2019년 제18차 정보공개심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북아리수정수센터의 상황별 위기관리매뉴얼 (강북아리수정수센터) ▶ 해당 매뉴얼은 대테러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상황조치 등 대처방안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수시설은 국가보안시설이며, 해당 매뉴얼은 대테러 등 비상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을 포함, 궁극적으로 서울시민의 생명수인 ‘아리수’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할 목적으로 수립된 것으로, 매뉴얼이 공개될 경우 대테러 등 비상사태에 대한 대처 및 복구에 관한 사전정보가 유출되어 원활한 물적·인적 동원의 차질이 발생하는 등 국가안전 보장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권고

청구내용	심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의정수장 보존대상 시설물 보존계획도면 (구의아리수정수센터) • 김포공항 국제선(구2청사) 공항 시설 내 소방안전시설 (소방통로, 비상구)이 표시된 도면 (강서소방서) • 옛 안기부(現서울종합방재센터) 건물도면(벽체나 구조체, 층간 높이, 평면도, 단면도) (소방재난본부) <p>▷ 국가보안목표시설이므로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p>	<p style="text-align: center;">〈 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방위법 제21조, 통합방위지침(대통령훈령 제28호) 제14조, 제15조, 국가중요시설 지정 및 방호훈령(국방부 훈령 제1057호)에 의거 정수장, 방송국, 공항, 가스·정유시설, 공공청사 등은 파괴되었을 경우 국민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에 해당하므로 비공개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초동 일대 상수 관망도 (급수운영과) <p>▷ 상수배관망, 속성자료, 위치 등은 국가보안사항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비공개</p>	<p style="text-align: center;">〈 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수도관 관망도는 공개 시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을지연습 기본계획(민방위담당관) • 총무4700 교통실시계획(안) (택시물류과) <p>▷ 을지연습 기본계획은 Ⅲ급 비밀로 전시대비계획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국가안전보장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p>	<p style="text-align: center;">〈 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안전보장에 관련 비밀문서로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권고

청구내용	심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매설물(배관) 도면 (공간정보담당관) ▶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6조제1항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에 의해 공개가 제한되는 전력·통신·가스·하수도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간시설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테러 등 에 노출되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 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분야 위기대응 통합연습훈련 설명회 참석결과 보고 (정보통신담당관) ▶ 국가 사이버위기대응훈련 사항으로 공개 시 국가안보 등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사이버위기대응훈련 사항은 서울시 정보통신 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 대책과 전략, 네트워크 경로 및 IP 등의 정보 가 포함되어 있어,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해킹· 사이버테러 등 국가 행정정보의 보호에 현저한 지 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메트로 침해사고 상황보고 관련 자료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서울메트로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에 따라 주요정보 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된 중요 기관으로서 요청정보 내 해당기관의 정보통신망 구성정보 및 보안 취약점 정보 등 공개 시 사이버 공격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기관의 보안 취약점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 시 추가적인 사이버 공격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 므로 비공개 ◦ 다만 시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상기 우려가 없는 사이버 공격 현황 및 조치결과 공개 권고 (2016년 제11차 정보공개심의회)

청구내용	심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결과 보고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각 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개인정보와 해당 시스템에 대한 보안 취약점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청 정보는 영향평가 대상 시스템의 보안취약점, 개인 아이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공개 시 시스템 보안관리 및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비공개 (2014년 제6차 정보공개심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덕수궁 돌담길 회복사업 영국 보안전문가 협의 결과 보고 (도로계획과) ▸ 영국대사관의 경내 보안과 관련된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시 대사관 보안이 의도하지 않게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 시 대사관의 보안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고, 외교마찰 등을 유발하여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2016년 제3차 정보공개심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도시고속도로 교통 정보 DB명 및 DB table 명세 (교통정보센터) ▸ 해킹이나 사이버테러 등에 이용되어 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직접적인 개연성이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정보 DB명 및 DB table 명세는 중요한 대시민 서비스 관련 정보로, 데이터의 조작 또는 손실 시 교통 혼란 등 막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공개 시 해킹이나 사이버테러에 이용되어 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비공개 (2013년 제15차 정보공개심의회)

관련 판례(재결례)

청구내용	판시(재결)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용산기지 내부 16개 지하수 관정에 대한 시료 채취 결과 및 유류오염 관련 항목 분석결과 ▷ 2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 정보는 오염도를 측정한 객관적 지표에 불과할 뿐 가치판단이나 왜곡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지 않고, 용산 미군기지가 오염원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므로 위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의 필요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하면, 공개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법 2015구합726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탈주민 관련 지침 등 ▷ 2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지침 등이 공개될 경우 대한민국 정부의 단계별 조치가 노출되어 북한이탈주민 보호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신변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크므로 비공개 (서울행법 2013구합561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출한 국제중재신청서 원문 ▷ 2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사건 신청서는 공개 시 이후 중재절차에서 대한민국 정부도 여론의 항배에 따라 자유로운 주장이나 외교적 해결수단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제약을 받게 되는 점, 론스타 측의 동의 없이 공개 시 외교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는 국제적 신뢰관계의 유지라는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점, 중재절차 종결 이후 중재자료를 열람하여도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의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 (서울행법 2013구합50999)

청구내용	판시(재결)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 관세화 유예연장을 위한 협상 결과로 작성한 목록 등 ▶ 2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정보는 외교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며, 일정한 통상에 관한 합의 등이 공개되지 아니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이익이 보다 잘 지켜질 수 있으므로 통상교섭에 관한 합의사항의 전부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비공개에 결과 발생하는 투명성 부족의 문제는 국회의 통제나 이후의 합의 실행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한 비판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 해소될 수 있으므로 공표되는 것보다는 비공개로 관리되어야 할 정보에 해당 (서울행법 2005구합204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각종 자료 ▶ 2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통계자료는 이 정보를 이용하여 북한정보기관에 의한 간첩의 파견, 포섭, 선전·선동을 위한 교두보의 확보 등 북한의 대남전략에 있어 매우 유용한 정보로 악용될 우려가 있음 (대법원 2001두82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 FTA 체결을 위한 협정문 초안 ▶ 2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 FTA 체결을 위한 협정문 초안은 무역장벽의 제거를 위한 한·미 양국의 구체적 주장 및 대응내용, 교섭방침 등을 담고 있어 공개 시 이후의 통상교섭에 있어 다른 국가들의 교섭정보로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자합의의 속성상 한·미 양국 사이의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외국과의 통상에 관한 협상 과정에서 생성된 문서를 비공개하기로 한 한·미 양국의 합의를 준수하는 것도 국제적 신뢰관계 유지를 위한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비공개 (서울행법 2006구합23098)

0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의 의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함

비공개 이유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대법원 2004두 12629)
 - ※ 비공개 이유 제4호, 제5호나 제6호의 내용과 중복되는 정보도 있으나, 각 호가 보호하는 성격이 다르므로 별도로 규정하는 것임

비공개 여부의 판단 기준

- 공개 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관련하여 초래될 위험 또는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공개 필요성보다 우선할 경우 비공개하며,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대상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상당한 정도로 확실함을 요함(서울행법 2008 구합31987)

서울시 정보 비(부분)공개 사례 분석

청구내용	심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롯데 시행 석촌호수 주변 지반안정성에 대한 연구용역 관련 시에서 롯데 측에 용역결과 제출을 요청한 공문 및 연구결과 보고서 (물순환정책과) ▷ 제3자가 제출한 정보로 제3자가 비공개 요청한 바 있으나, 서울시가 수행한 연구용역과 동일 주제의 연구로서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안으로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하다는 사유로 심의 요청 	<p style="text-align: center;">〈 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청 정보는 공개 시 주변 부동산 가격 하락 등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불이익을 초래할 개연성이 명확하지 않고, 해당 용역의 수행이 이미 완료되어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보기 어렵고,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 인근 주민의 불안감 해소 등 공개에 따른 공익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공개 (2016년 제5차 정보공개심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절수조사 보고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 절수조사 보고서에 포함된 취수 (수도) 배관설치도가 테러 및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현저한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부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서 중 배관배치도 및 설치도는 공개 시 테러 및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국민의 생명·신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2014년 제17차 정보공개심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상복합의 착공도면 (건축기획과) ▷ 청구 정보의 범위가 광범위하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부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건축물의 착공도면은 건축주 또는 건축주의 위임을 받은 자에게 공개 가능하며, 당사자가 아닌 경우 제3자 의견 청취 후 공개여부 결정 ◦ 특히 소유주가 다수인 집합건물인 경우 각 타인의 재산권 침해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건축주에 한해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가리고 공개 권고

청구내용	심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전체 관내 소방서 관할 1,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건물명, 소재지, 전화번호, 연면적, 우편번호 등(소방재난본부) • 강남구 신사동 내 등록된 다중이용업소의 업종, 상호, 주소, 전화번호(소방재난본부) <p>▷ 방재행정에 방해가 되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p>	<p style="text-align: center;">〈 부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건물의 방화관리대상 해당 여부 및 주소, 우편번호, 연면적, 사업장 전화번호는 경영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 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인전화번호를 제외하고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타운 재개발 실태조사 관련해 현재까지 실태조사가 완료된 구역 모두의 개별 자산평가금액 목록(재생지원과) <p>▷ 특정 개인의 재산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의 재산의 보호에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p>	<p style="text-align: center;">〈 부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자산평가금액 목록은 특정 개인의 재산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재산보호에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고,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지정 및 해제가 결정되고 이에 따른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비공개 ◦ 실태조사 감정평가 등에 관한 기준은 공개(2013년 제8차 정보공개심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유소 위험물 취급소 변경허가 신청서 관련 모든 자료(마포소방서) <p>▷ 제3자가 비공개 요청하였으며, 위험물 시설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제3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비공개</p>	<p style="text-align: center;">〈 부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취급소 변경허가신청서, 위험물 변경내역, 주유취급소 구조설비명세서 및 관련 공문은 공개하고, 지하탱크 저장소 구조설비명세서 및 오염토 정화 토목공사 도면은 파괴 시 국민의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비공개(2014년 제3차 정보공개심의회)

청구내용	심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3.22 ○○어린이집 지도점검 전 민원내용 (출산육아담당관) ▸ 위법, 부정행위 등의 신고, 통보자 인적사항은 공개 시 참고인 및 피의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법, 부정행위 등의 신고, 통보자 인적사항은 공개 될 경우 참고인 및 피의자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민원내용의 개인이름을 가리더라도 다른 정보들에 의하여 특정민원인에 대한 내용임을 쉽게 유추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 (2013년 제11차 정보공개심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토지를 제외한 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 수용재결감정 평가내역 (토지관리과) ▸ 공개 시 특정 개인의 재산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로서 공개 시 개인의 재산 보호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재결 감정평가결과는 개인의 재산내역을 추정할 수 있는 정보로서, 타인에게 공개 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고 개인의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2016년 제12차 정보공개심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토지실거래(수용보상거래 포함) 세부정보(토지지번, 거래일자, 실거래가 등) (토지관리과) ▸ 국민의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또는 단체 등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거래당사자의 사적 활동에 속하며,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2015년 제16차 정보공개심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 허가·준공 도면 서류일체 (건축기획과) ▸ 제3자 비공개 요청하였으며, 개인의 재산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및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의 보호,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우려, 설계자의 창의적인 노하우의 공개에 따른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비공개 (2013년 제2차 정보공개심의회)

청구내용	심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롯데월드 사전재난영향성평가 결과보고서, 재난대응매뉴얼,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건축기획과) ▸ 제3자가 비공개 요청하였으며, 공개 시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재난영향성평가 결과보고서, 재난대응매뉴얼,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는 공개 시 테러 및 범죄 행위에 악용되어 국민의 생명 등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2015년 제11차 정보공개심의회)

관련 판례(재결례)

청구내용	판시(재결)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웹서버 해킹사건 관련 의견서, 진술조서, 수사보고, 내사보고 등 수사기록 ▶ 3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사건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과정에서 보안시스템의 기술적 사항이 이미 상당 부분 드러난 것으로 보이고, 시스템의 허점에 대한 별도의 보완조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의 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법 2011구합192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화사건 관련 의견서, 상황보고서, 수사진행보고, 목격자 등의 진술조서, 수사보고, 변사사건 발생보고 등 수사기록 ▶ 3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 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수사기록에 드러난 참고인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공개 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법 2012누282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연료 공장의 증설 관련 공공기관과 주민자치위원회간 체결한 금전적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상생협약서 ▶ 3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위원회는 동(洞)의 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자문기구일 뿐 지역 주민 전체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피고와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이 사건 협약에 따른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이 사건 협약에서 피고가 이 사건 주변지역의 주민들을 위하여 금전적인 지원 등을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이 사건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재산상의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님 (대전지법 2014구합103014)

청구내용	판시(재결)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아파트에 관한 건설원가 등과 관련한 정보 ▶ 3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성된 아파트에 대한 건설원가의 산출내역에 관한 자료에 불과할 뿐이므로 그 자료의 열람 또는 공개에 의하여 아파트 가격의 부당한 인하를 가져오고, 그로 인하여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우려나 가능성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료라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법 2007구합63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면심사위원 명단과 약력 ▶ 3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면심사위원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관한 위험은 심사과정에서 9인의 위원 중 누가 어떤 의견을 제시하였는지를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아무 위원에게나 폭언·협박 등의 위해를 가하리라는 가정 하에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너무나 막연하고 추상적이어서 이러한 위험을 이유로 비공개를 정당화할 수 없음 ◦ 또한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통하여 형성된 여론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오히려 자의적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높은 사면권의 적절한 행사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사면결과에 관한 대대적·집중적인 비난여론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함 (서울행법 2008구합319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업체의 영업비밀이 경쟁업체에 유출되었다고 제보한 제보자에 관한 정보 ▶ 3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사건 제보자의 신원정보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어 원고가 이를 근거로 형사고발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제보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위와 같은 합법적인 수단을 도모하는 외에 사적으로 제공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달리 인정할 자료도 없음 (서울행법 2008구합26466)

04 진행 중인 재판·수사와 관련된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의 의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함

비공개 이유

- 그 공개가 재판 당사자의 인격적·재산적인 이익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거나, 재판을 위한 증거서류가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것을 꺼려 제출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거나, 판결 전 재판기록이 공개되어 제3자가 그 당부를 논할 경우 재판의 독립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함(서울행법 2013구합50999)
- 공개 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보호를 위함(대법원 2004두12629)
-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 국가의 사법작용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범죄의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 보호하며,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대법원 2010두7048, 대법원 2009두19021, 대법원 2004두12629)

‘진행 중인 재판’이라 함은 적법하게 소장이 접수된 이후 판결이 행해지기 전까지를 의미하며, 일단 하나의 심급에서 판결이 행해졌지만 아직 상급심에의 항소·상고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까지는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함(서울행법 98구 3692)

※ ‘진행 중인 재판’이란 결정일 당시에 확정되지 않은 재판을 말하며, 확정되었을 경우 4호를 이유로 비공개할 수 없음

비공개 여부의 판단 기준

-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시정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 및 시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하여 신중하게 판단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그 자체에 포함된 내용의 정보일 필요는 없으나,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대법원 2010두24913)

'범죄의 예방,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정보원, 정보수집기법 등 정보수집경로와 방법이 노출되어 장차 범죄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해지거나, 그 불법행위의 방식이 정보누출을 피하여 지능화되고 은밀해지게 되어, 향후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에 한함(서울행법 2002구합42299)

'수사'에 관한 사항인 경우 공개청구대상인 정보가 의견서 등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것은 아니고, 의견서 등의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비공개 가능(대법원 2010두7048)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재소자들의 관리 및 질서유지, 수용시설의 안전, 재소자들에 대한 적절한 처우 및 교정·교화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대법원 2009두 12785)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함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2두1342, 2005두15694 등)

서울시 정보 비(부분)공개 사례 분석

청구내용	심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이 제기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감사사전준비로 수집·작성한 일체의 감사자료 문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공개 시 장래의 감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인 측이 제출하거나 이미 수령한 정보로서 공개 시 감사업무 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2016년 제8차 정보공개심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조사담당관 기강감찰팀에서 작성한 신청인 지장이 찍힌 진술서 및 문답서 (조사담당관) ▷ 현재 금품수수 비위사건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상태로 청구인 본인의 문답서, 진술서는 객관적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록 이 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어 진행 중에 있어 수사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나 진술 등이 일부 이루어진 현 시점에서 지장초래의 정도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고 본인의 자기방어권 보장을 위해 공개 (2013년 12차 정보공개심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진구 역 주변 청소년 유해 선정성전단지 광고주 등에 대한 내사계획 (민생사법경찰과) ▷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부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문서 중 수사방법 내지 시의 판단이 노출되어 관련자가 악용할 경우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 (2013년 제2차 정보공개심의회)

청구내용	심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거주시설 ○○행정처분 변경 조치 계획’ 결재문서 • ‘장애인거주시설 ○○조치계획 통보’ 결재문서 (장애인복지정책과) <p>▶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p>	<p style="text-align: center;">〈 부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으로 고발내용 등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 (2016년 제7차 정보공개심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실태조사 내용 (공동주택과) • ○○아파트 방수면적 실측 원본 (공동주택과) • 중구 장충동 산○○-○○ 체육시설 ○○○에 대한 사용수익자 지정 현황 및 쌍방 간의 계약 등 협약 내용 일체 (중부공원녹지사업소) • 장애인복지시설 기부채납 관련 법인대표 면담결과 보고 (장애인복지과) <p>▶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사안으로서 공개 시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p>	<p style="text-align: center;">〈 부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모든 정보가 4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은 아니며, 재판의 심리·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공개 ◦ 진행 중인 재판의 종료 등으로 비공개 사유 소멸 시 개인정보 및 법인의 영업 이익과 같은 비공개 정보를 가리고 부분공개

청구내용	심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 침수 관련 서울시 자체 감사결과 보고서 (감사담당관) ▸ 문서위조 의혹 등으로 경찰청에 수사의뢰한 사항으로, 공개 시 수사 수행곤란 및 관련자 개인 정보보호 등의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부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는 언론 등에 기 공개되었고, 시 자체 감사결과 보고서는 수사기관에 제공되어 수사에 미칠 영향이 적다고 판단되어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고 공개 (2013년 제4차 정보공개심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 중 확정된 소송의 사건번호 및 진행 중인 소송 건수 (법률지원담당관) ▸ 소송 사건번호 공개 시 소송상대방의 비밀 또는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부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정된 소송의 사건번호는 공개 시 소송 상대방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 진행 중인 소송 건수는 그 공개로 인해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한다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에 침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공개 (2016년 제4차 정보공개심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채용 변호사 성명 및 변호사별 담당사건 (법률지원담당관, 인사과) ▸ 변호사별로 맡고 있는 자문사건은 내부검토 중인 문서로서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부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호사 담당사건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 시 해당 변호사의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 변호사 성명은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에 해당하므로 공개 (2015년 제14차 정보공개심의회)

청구내용	심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악구 남현동 ○○아파트 화재사건 관련 화재조사보고서 (관악소방서) • 적발된 불법 자동차 도장 업체의 자치구별 현황(상세지번 등 제외) (민생사법경찰단) • ○○재단의 시설명세서와 소유한 미술품 목록 (문화예술과) • 운수물류담당관-12867(09. 5. 13)호와 관련, 행정처분 통보에 대한 사실근거 및 행정처분 사항에 대한 모든 문서 (택시물류과) <p>▷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자료로 공개 시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p>	<p style="text-align: center;">〈 부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에 관한 모든 정보가 4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은 아니며, 정보의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공개 ◦ 수사 완료 후 개인정보 및 법인의 영업 이익과 같은 비공개 정보를 가리고 부분공개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가 원고·피고로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소송 현황 (법률지원담당관) <p>▷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재판의 심리 및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으며, 사건번호는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사건검색)를 통하여 소송 상대방을 비롯한 소송 진행 내용에 대한 상세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 및 법인단체의 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p>	<p style="text-align: center;">〈 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행 중 또는 종결된 소송의 사건번호, 소송물, 당사자, 소송액, 소송사유는 공개 시 소송 상대방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진행 중인 소송의 경우 소송 관련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2015년 제9차 정보공개심의회)

청구내용	심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사건립공사 민사소송 응소 방침 결재서류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 ‘서울광장 동성애축제 사용허가 취소’사건 응소계획(안) (총무과) <p>▷ 진행 중인 재판으로 관련된 정보로 서울시의 대응 방향 등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시 재판의 심리 및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p>	<p style="text-align: center;">〈 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 공개 시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으므로 비공개 (2014년 제2차 정보공개심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비리 특별감사 연도 추가 연명부제출’ 결재문서 (공동주택과) <p>▷ 향후 조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내용일부에 대해서는 수사 중에 있으며, 문서가 공개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영향을 미치거나 우리 시를 상대로 소송제기의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p>	<p style="text-align: center;">〈 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수사 및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 공개 시 그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고, 또한 향후 동종의 조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보에 해당하므로 비공개 (2014년 제1차 정보공개심의회)

관련 판례(재결례)

청구내용	판시(재결)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강 정비사업 공사 관련 입찰공고에 명시된 업종별 추정금액(추정가격)의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기준 관련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동강살리기사업에서의 특정 8개 공구의 입찰공고에 명시된 추정금액의 산출근거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정보가 현재 위 재판과 직접적·구체적으로 관련된 정보인지 여부 자체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위 재판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를 공개하는 것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여 위 재판에 도움이 될 여지가 있으므로 공개 (부산고법 2010누56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토지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서류, 농지전용허가 서류, 산지전용허가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사건 정보는 유효한 분양계약의 존부나 대여금 채권의 존부 등이 문제가 되는 위 각 재판의 쟁점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청주지법 2012구합20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인 진술이 기재된 수사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인의 진술은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수사상 기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개 시에도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없음 (대전지법 2007구합44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에서 지출하거나 책정 및 지급 예정인 변호인 수임료 내역(변호인 이름과 법인명, 담당재판, 수임료의 금액, 지급일 또는 책정 내지 지급예정일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사건 정보는 사건별 소송대리인과 그 수임료에 관한 자료로서 소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불과하여 이러한 정보가 공개된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 (중앙행심 2015-1888)

청구내용	판시(재결)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2014년 법무부에서 지출하거나 책정 및 지급 예정인 변호인 수임료 내역 (변호인 이름과 법인명, 담당재판, 수임료의 금액, 지급일 또는 책정 내지 지급예정일 포함) ▸ 4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4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정보는 사건별 소송대리인과 그 수임료에 관한 자료로서 소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불과하여 이러한 정보가 공개된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중앙행심 2015-18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가보조금 관련 각종 조사 및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명 ▸ 4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업체가 동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에 계류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단지 업체명이 공개되었다고 하여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중앙행심 2016-007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법원 ○○호 사건 관련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대리인별 착수금, 성공사례금 구분하여 공개) ▸ 4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사건 정보는 소송대리인의 수임료에 관한 자료에 불과하여 재판의 수행과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로 볼 수 없음 (중앙행심 2011-25182)

청구내용	판시(재결)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관리대상 수용자의 수용·관리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관리대상 수용자의 수용·관리계획’은 특별처우, 계호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어 동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재소자들의 관리와 근무자들의 안전 확보 등 교정행위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되므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국무총리행심 2005-08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자 건강기록부 내용 중 구치소 의무관이 외부전문의에게 의학적 자문을 구한 내용과 그 자문에 응한 외부전문가의 이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전문가들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이 사건 비공개 정보는 교정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음 (인천지법 2006구합3920)

05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비공개 대상 정보의 의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함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종료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개정법]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2021.6.23.부터 시행

비공개 이유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를 공개할 경우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고자 함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이 왜곡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영향과 압력을 받을 가능성을 차단하여 독립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비공개 함(대법원 2001두8827)

[행정내부에서의 자유롭고도 솔직한 의견의 교환을 확보하고, 내부검토단계의 미성숙한 정보가 외부에 제공되어 주민에게 무용한 혼란이나 오해를 초래하는 것이나 일부의 자에게만 부당한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는 것을 회피하며,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 중 공개되면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운영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연구·개발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함\(대법원 2010두24913\)](#)

비공개 여부의 판단 기준

-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

이에 해당여부는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대법원 2010두2913)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은 한시적 비공개 사유로서,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시 해당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인에게 종료사실을 통지하여야 함(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시험’에 관한 사항은 공개될 경우 그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

시험업무와 관련된 정보 중 고도의 전문성, 기술성, 기밀성 등을 요하는 대인적·주관적 평가 영역에 속하는 정보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차질을 초래함으로써 그 직무의 속성에 반하고 종국적으로는 더 이상 당해 직무의 존립을 부정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는 경우 비공개

이에 해당여부는 당해 시험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취지, 당해 시험 및 그에 대한 평가행위의 성격과 내용,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의 증가,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대법원 2000두6114)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제공된 관련 자료나 의사결정 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고 집행된 경우 또는 내부검토를 마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음(대법원 2002두12946)

이 경우에도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공공기관에 있음

서울시 정보 비(부분)공개 사례 분석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

청구내용	심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정책실 주거실태조사 보고서 용역 결과 전문 (주택정책과) ▶ 정책수립을 위한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 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청 정보는 주택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참고적 성격으로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2014년 제7차 정보공개심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산공원 접근수단(삭도시설) 개선방안 연구 자료 일체 (공공재생과) ▶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 시 외부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미 해당 용역이 완료되어 공개 시 진행 중인 용역업무 등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 (2015년 제4차 정보공개심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 서울형 복합쇠퇴지수 분석결과 (재생정책과) ▶ 연구의 중간단계의 결과물의 공개는 공정한 연구수행과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등급별 해당 지역이 공개될 경우, 향후 계획의 확정과정에서 변동사항 발생시, 개인 및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청회에서 관련 자료를 통해 이미지 형태로 제공된 사항으로 구체적인 수치 공개를 통하여 발생하는 업무수행에 초래할 지장의 정도가 현저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공개 (2015년 제11차 정보공개심의회)

청구내용	심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담당관) ▷ 현재 시의회에 제출되어 상임위 및 예결위의 심의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에서 시의회로 제출 완료한 사항으로, 예산 수립 과정에의 시민 참여 확대 및 시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공개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서울시장 요청사항 (평가담당관) ▷ 상반기 평가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청 정보는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공개 (2020년 제14차 정보공개심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실태조사에 따른 과태료 부과 관련 동대문구청과 주고받은 질의회신문서 (공동주택과) ▷ 처분에 대한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 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법 및 규정의 해석에 관한 단순 질의회신으로 공개 시 업무 추진에 초래할 지장의 정도가 현저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공개 (2015년 제7차 정보공개심의회)

청구내용	심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사물인터넷(IoT) 추진 기본계획’ 결재문서 (정보기획담당관) ▷ 구체적 사업내용 등이 확정되지 않았고,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안이라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괄적 수준의 사업 기본계획으로 지역주민과의 협의 등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 ◦ 다만 향후 세부사업의 변동 가능성을 함께 고지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 (2015년 제4차 정보공개심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교통영향 관련 주민설명용 자료 (도로계획과) ▷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을 수립 중인 사항으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등 수립 완료 이후 공개 가능하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청 정보는 주민협의회에서 열람의 형태로 기 제공된 바 있는 자료로,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2014년 제8차 정보공개심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증진협력약국 시범사업을 위한 사업계획서 (보건의료정책과)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어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부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인이 요청한 행정정보는 계획이 수립되어 진행 중인 사업으로 민원발생 개연성 등을 들어 비공개할 근거가 없으므로 공개 ◦ 다만, 자문위원단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제외 (2013년 제5차 정보공개심의회)

청구내용	심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점포 변경등록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로 질의한 내용 (소상공인지원과) ▷ 요청 정보는 유통산업발전법의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질의문서로 내부검토 과정에 있어 공개 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정 대규모점포의 경영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 시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부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 지번, 개설자 등 대상 점포에 대한 상세 정보는 경영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 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고, 법령해석에 대한 서울시 의견은 미확정된 민원사항 관련으로 공개 시 공정한 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 ◦ 이를 제외한 부분은 공개 시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개 (2015년 제16차 정보공개심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경전철 수익성 확대를 위한 검토용역 보고서, 경전철 수익성 확대를 위한 협의회 관련 정보 (도시철도계획부) ▷ 서울시 경전철 수익성 확대를 위한 협의회 구성현황, 개최실적, 회의자료, 회의결과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부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서는 해당 영역이 이미 종료되어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개 ◦ 협의회 구성현황, 회의자료 및 결과는 공개 시 업무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만한 민감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인정보 및 발언자명을 제외하고 공개 ◦ 그 밖에 개최실적은 공개 (2015년 제15차 정보공개심의회)

청구내용	심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랑구 중화동 소재 ‘이화교 증설 확장사업’에 대한 세부계획 (도시계획과) • 홍제 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홍제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협의 (도시정비과) • 서울풍물시장 위탁관리자 선정 심의내용 (도로행정과) • 강남모노레일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결과보고서 (교통정책과) • 브랜드택시 사업 추진(안) (택시물류과) •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과 주민지원협의체간의 자원회수시설 가동에 관한 협약서 (자원순환과) • 시장지시사항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지시사항 목록 (기획담당관) <p>▶ 청구 당시 행정 내부의 심의 중인 안건 또는 공공기관 내부 회의 및 의견교환 등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 자유로운 의견교환에 방해를 줄 수 있고, 미확정 내용의 공개로 인해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p>	<p style="text-align: center;">〈 부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비공개 사유의 소멸(계획수립 완료, 용역 완료, 사업종료 등)로 인해 내부검토 과정에 따른 비공개 사유가 소멸한 경우 개인정보 등 비공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 권고

청구내용	심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비사업 손실보상 사례 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 공정회의 개최 결과보고 (1차~4차) (주거정비과)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 중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용역은 현재 진행 중인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용역 종료시까지 지속적인 공정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요청 정보는 미확정된 사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공개할 경우 이해관계인들에게 오해나 혼란을 불러 일으켜 공정한 용역업무 수행 및 연구개발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2019년 제20차 정보공개심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노선신설 관련 의견 제출' 결재문서(버스정책과) ▷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선신설에 대해 관계 기관간 협의 검토 중에 있으며, 요청 정보를 공개할 경우 내부검토 단계의 미확정된 사안의 공개로 시민들에게 혼란이나 오해를 불러일으켜 노선신설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2020년 제9차 정보공개심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서울플랜(안) • 2009년 시행한 도시기본 계획 미래상 설문조사 결과 및 원자료 (도시계획과) ▷ 서울의 중심지 체계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 시 해당 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0 서울플랜(안)은 현재 미확정된 내부검토 중인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자료 내 포함된 지역의 개발계획이 사전 공개 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하며, 국토교통부 심의를 득하고 계획 확정 후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일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함 (2013년 제15차 정보공개심의회)

청구내용	심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무형문화재 신청종목 (결련택견, 십팔기) 조사보고서 (역사문화재과) ▷ 요청 정보는 전문가 조사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위한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 시 심의 등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전승 단체의 기량, 의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 시 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조사 인력풀이 한정되어 있어 공개 시 해당 조사자가 유추되어 향후 공정한 평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단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 저하 등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2015년 제14차 정보공개심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주요쟁점 2차 법률자문 결과보고’ 중 ‘붙임 법률자문 검토의견서’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자문 검토의견서’는 조례(안) 입법예고 시 접수한 의견에 대해 수용 가능여부를 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하여 제출받은 문건으로, 현재 조례(안) 제정을 위한 내부검토 과정이 진행 중에 있어 ‘법률자문 검토의견서’를 공개할 경우 확정되지 않은 사항과 관련된 자세한 법률적 쟁점사항이 제공됨으로써 이해관계인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하여 조례(안) 제정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법률자문 검토의견서’는 법무법인의 고유한 노하우와 노력으로 작성된 문건이므로 공개할 경우 당해 법무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비공개 (2020년 제11차 정보공개심의회)

청구내용	심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산국제업무지구 관련 법률 자문 결과보고 •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민갈등 해소 T/F지원팀 회의 결과 및 회의자료(47차) • 도시계획국 주요 현안업무 보고결과(세운지구, 용산국제업무지구, 원형택지) • 용산국제업무지구 관련 비상대책 T/F팀 회의결과(회의록 및 회의결과) •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사업 주민갈등 해소 T/F팀 실무 추진단 회의결과 보고(11차) • 용산국제업무지구 관련 비상대책 T/F팀 회의결과(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에 대해 서울시 대책을 논의한 문서) (지구단위계획과) <p>▶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자료로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p>	<p style="text-align: center;">〈 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청구인이 요청한 관련 자료가 공개될 경우 또 다른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비공개 (2013년 제10차 정보공개심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산콜센터 직원 본인의 민원상담 녹취록(시민봉사담당관) <p>▶ 민원인과의 통화내용은 공공업무 수행시 생성된 자료로 업무수행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비공개</p>	<p style="text-align: center;">〈 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내용 공개 시 자신의 발언이 공개될 것에 대한 부담으로 민원인의 자유로운 상담발언이 저해되는 등 상담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민원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비공개 (2015년 제10차 정보공개심의회)

청구내용	심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시설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결과보고서(시설계획과) ▷ 학교시설 관리에 대한 정책을 수립을 위한 자료로,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시설 결정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부동산 관련 특정인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사업은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것으로, 현재 정책수립을 위한 내부검토 과정에 있어 공개 시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학교이적지 및 미집행 학교시설 등의 정보는 도시관리계획과 연계되어 사전 공개 시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2015년 제12차 정보공개심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이전 관련 외부용역 갈등영향보고서 (갈등해소담당관) ▷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관련 대응 시나리오로 갈등발생 시 대응 방안을 담고 있어 갈등해소 전 공개 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청 정보는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관련 갈등 대응을 위하여 작성된 자료로, 갈등해소 전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비공개 (2013년 제15차 정보공개심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터널 면목동 방향 환기소 및 오염저감시설 시공도면과 설비내용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 해당 설계변경 건은 공사 관련 부서인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설계변경 검토 및 승인을 의뢰하여 사업주관부서인 도로계획과에서 승인여부 등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라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도로계획과에서 설계변경검토·승인 중에 있으므로 비공개 결정을 인용하되, 설계변경 검토·승인이 완료되면 공개 (2013년 제11차 정보공개심의회)

청구내용	심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들섬관련 검토회의 결과보고 (공공개발센터) ▷ 기본방향을 발전시키는 단계에 있는 사항으로 의사결정 전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시민들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들섬 활용방안 관련 공모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 공개 시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 (2015년 제10차 정보공개심의회)

[감사·감독·검사]

청구내용	심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지문터널 대기질 측정결과 보고 • 홍지문터널 측정소 적정 샘플링 위치 선정을 위한 터널주변 대기질 조사결과 (보건환경연구원 대기부) ▷ 사업기간 미종료로 아직 연구결과가 완성되지 않고 진행 중인 사업이라는 사유로 비공개하며, 사업완료 보고서 완성 이후 제공 	<p style="text-align: center;">〈 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조사계획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공개 ◦ 다만, 대기질 측정결과가 터널인근 측정값임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청구인에게 충분히 설명 (2013년 제11차 정보공개심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실태조사에 따라 행정조치 등을 하도록 구청에 통보한 문서 (공동주택과) ▷ 공동주택의 조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해당 아파트에 대한 실태조사가 완료된 상태로, 요청자료는 기 공개된 바 있는 실태조사 결과 및 그에 따른 행정상 절차를 포함하고 있으며, 정보 내 포함된 개인정보 또는 단체명 등은 이미 익명화 되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공개 (2014년 제15차 정보공개심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다” 서비스 법률자문 의뢰」 결재문서 (택시물류과) ▷ 우리 시의 자체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로 사법부 및 국토교통부의 검토·판단 전에 공개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내부검토 중인 사안이나 내부 법률자문을 위한 중립적인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 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2019년 제14차 정보공개심의회)

청구내용	심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대공원(동물원) 운영실태 특별감사 관련 결재문서 (서울대공원 총무과) ▷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직개편, 직제관리 등의 내부검토, 협의, 결정 내용이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하여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부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결과는 공개가 원칙이며, 당해 감사가 종결되어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요청정보 내 포함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 (2015년 제1차 정보공개심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8월 감사과에 제출된 경위서(진술서, 의견서 등) (민원해소담당관) ▷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부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인서 및 경위서의 경우 이미 관련 감사 및 소송 등이 종결되어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2013년 제15차 정보공개심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결과 신분상 조치가 결정된 15명에 대한 성명, 당시 부서 및 직책, 현재 부서 및 직책, 과실 (조사담당관) ▷ 감사 등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 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검토 중의 사안이고, 인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이 될 사안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공개하는 것은 향후에 있을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확정되지 않은 사항의 공개로 당사자들이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비공개 (2012년 제13차 정보공개심의회)

청구내용	심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섬 유수지 정비공사 관련 조사결과 (조사담당관) • 뇌물수수 적발 현황(적발일시, 적발자, 적발장소, 수수금액) (조사담당관) • 한우 둔갑 판매 관련 영업정지처분 업체명(소재지, 구, 동호수 포함) (식품안전과) <p>▷ 감사·감독·검사 관련 업무를 진행 중인 사항으로서,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p>	<p style="text-align: center;">〈 부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업무가 종결된 시점에서 해당 자료에 포함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 등 비공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H공사 하자 관련 감사 보고서 (안전감사담당관) <p>▷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감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p>	<p style="text-align: center;">〈 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가 종료되지 않은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 시 감사에 따른 후속조치 등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2015년 제2차 정보공개심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스운행실태점검원 근무명령’ 결재문서 (버스정책과) <p>▷ 시내버스 운행실태 점검을 위한 각 회사별 노선별 점검원에 대한 근무명령으로,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p>	<p style="text-align: center;">〈 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청정보는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전에 공개 시 비노출 방식의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 다만 해당 점검이 완료된 이후에는 공개 (2014년 제16차 정보공개심의회)

[입찰계약·기술개발]

청구내용	심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버스전용차로 승차대 광고사업권 관련 계약내용 중 무상사용기간, 운영비, 총사업비, 수익률 등 (교통운영과) ▷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청 정보는 시와 체결한 계약내용의 일부로서 공공기관과의 계약은 공개가 원칙이며, 업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2016년 제2차 정보공개심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공사 수리모형실험 평가 및 출장 결과보고’ 결재문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 시험 및 입찰계약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계약 및 수리모형실험이 완료된 사안으로 당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없으며, 공개 시 향후 예정되어 있는 동종의 실험 추진에 초래할 지장의 정도가 현저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공개 (2015년 제1차 정보공개심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5월 서울도서관 도서구매 입찰 관련 기초금액 산출내역서 (계약심사과) ▷ 입찰 관련 정보로 공개 시 외부의 부당한 관여와 압력이 예상되어 향후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도서관 도서구매 입찰은 이미 완료되어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현저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개로 인하여 향후 동종의 업무수행에 있어 보다 정교하고 치밀한 산출내역 작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공개 (2012년 제8차 정보공개심의회)

[시험·인사]

청구내용	심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사회복지직 면접평가 결과 유형별 인원 (인재채용과) ▷ 서울시 공무원 면접평가 등급 비율이 공개될 경우, 면접위원의 평가 재량이 축소되어 공정한 시험관리가 침해될 수 있고, 타 면접시험에도 영향을 미쳐 채용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결과에 대한 단순 통계수치를 요청한 사항으로 당해 시험 또는 장래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미치는 지장의 정도가 현저하지 않을 경우 공개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행정 9급 선택과목 원점수별 조정점수 (인재채용과) ▷ 선택과목의 평균점수 및 표준편차를 공개할 경우 수험생들의 과목선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선택과목별 편중현상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고, 향후 필기시험 선택과목 시험의 실시에 있어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 시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에서는 비공개 사항은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서 규정토록 하고 있는 바, 안전행정부 지침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타당한 비공개 근거로 볼 수 없으므로 공개 (2014년 제18차 정보공개심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토목7급 5년치 기출문제 (인재채용과) ▷ 서울시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의 경우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되고 있어 기출문제가 공개될 경우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부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과목을 제외한 소수직렬 과목 기출문제의 경우 공개 시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가 현저한 점이 인정되므로 비공개 ◦ 공통과목 기출문제는 공개 (2014년 제14차 정보공개심의회)

청구내용	심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 관련 면접관 각각의 점수 (평생교육과) ▷ 시험·인사관리·의사결정 과정 등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 시 시험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부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관 각각의 항목별 점수에 대하여는 비공개 ◦ 다만, 심사위원 이름은 가리고 각 면접관의 총점은 공개 (2013년 제9차 정보공개심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급에의 승진 관련 승진심사 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회의록 중 약무직 심사 부분 (인사과) ▷ 공개 시 승진심사대상자는 물론 심사위원과의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거나 외부의 부당한 압력 내지 분쟁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청 정보는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위원간의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저해되는 등 원활한 위원회 운영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2016년 제2차 정보공개심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사회복지직 임용 면접시험 평정표 (인재채용과) • 서울시 추가 임용면접 시험 평정결과(면접관으로부터 받은 각 항목별 면접점수) (인재기획과) ▷ 시험·인사관리·의사결정 과정 등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 시 시험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관 각 항목별 면접점수는 시험·인사관리·의사결정 과정에 해당되는 정보로 공개 시 시험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비공개 (2013년 제10차, 2014년 제10차 정보공개심의회)

청구내용	심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민건강위원회 일반시민 공모위원 선정 채점표 (보건의료정책과) ▷ 심사위원의 채점표는 시민위원의 역할과 자격에 대한 심사위원의 판단과 관련 경험과 학식 등에 기초한 자율적인 심사 의견으로서 공개 시 심사위원의 공정하고 자율적인 심사업무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다른 신청자의 채점표는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 채점표는 개인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결과가 담겨져 있어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개별 채점표에 기재된 심사위원명은 공개 시 면접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비공개 (2014년 제9차 정보공개심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공무원의 2007~2010년 재직 근무지 및 직명과 보직 (인사과) ▷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인의 재직근무지 및 직명과 보직에 대한 정보는 경력 관리사항에 해당되며, 공무원의 직무전문성과 상관없는 개인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비공개 (2013년 제8차 정보공개심의회)

관련 판례(재결례)

청구내용	판시(재결)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추가경정예산안 및 심의결과, 예산편성실과별 예산요구서 ▶ 5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 보장 등 투명성 확보의 이익이 훨씬 크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대전지법 2005구합32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도별 공무원 징계현황 중 연번, 공무원명(무기명), 처분일자, 요구기관, 징계처분, 징계사유 세부내용 ▶ 5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인은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특정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무기명으로 공개하되 징계사유 세부내용을 밝혀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어, 피청구인은 징계 관련자들에 대한 유추가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도 구체적 징계사유를 일부 선별하여 공개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서울고등법원 2006누 30531), ◦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다63558)는 점을 고려하면, 공무원의 징계사유 세부내용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나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 공개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출제방식으로 출제하는 공인회계사 제2차 시험 기출문제 ▶ 5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인회계사 2차 시험은 매년 새로운 출제위원들이 출제를 하는 방식의 시험으로서, 이 시험의 기출문제지가 공개된다고 하여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음 (서울행법 2005구합22128)

청구내용	판시(재결)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강 정비사업 중 하나인 낙동강살리기사업 공사의 입찰공고에 명시된 업종별 추정금액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와 기준 ▶ 5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공사는 각 구간별 추정금액이 산출된 후 실시 설계적격자가 선정되고 공사착공 및 실시설계가 이루어졌으므로, 위 정보가 입찰계약과정,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는 점, 설계 및 시공 일괄입찰공사에서 추정금액은 입찰과정에서 공정한 입찰 및 사업자 선정에 할 때 기준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미 입찰이 종료되어 실시설계적격자가 선정된 이상 큰 의미가 없으므로 공개 (부산고법 2010누56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시 ◇◇구청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결과(청소대행에 필요한 명령과 조치 등 대행업무의 지도 및 감독) 및 행정처리 서류 일체 ▶ 5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사건 감사가 실질적으로 종료되었고, 정보에 감사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비밀로써 유지되어야만 할 고도의 정책적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 반면, 원고는 관내에서 분노 수집·운반업을 하였던 사람으로 ○○광역시 ◇◇구를 상대로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던바, 이 사건 정보는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이를 공개할 고도의 공익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여 피고가 수행하는 감사 등 업무의 수행에 현저하게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는 인정되지 않음 (서울행법 2019구합15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아파트에 관한 건설원가 등과 관련한 정보 ▶ 5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미 공사가 종료된 아파트 건설원가의 산출내역의 자료에 지나지 않고,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법 2007구합6342)

청구내용	판시(재결)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교육원 원장으로 근무한 원고에 대하여, 피고(감사원)이 B교육원 사업운영비 집행 사항 등과 관련 2016. 9. 9. 원고에 대한 문답 조사에 따른 문답서 ▶ 5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이 비공개로 이 사건 정보를 열람·심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 중 2016. 9. 9.자 문답서는 원고가 감사 과정에서 문답한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서 <u>오히려 이를 공개하는 것이 피고의 조사업무 수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부수적으로 원고가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데 있어 그 권리구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u> ◦ 이에 대해 피고는 위 문답서에는 감사 담당 공무원의 질문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향후 피고의 감사중점 사항 및 조사기법 등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문답서 질문 내용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 주장의 특별한 조사기법 사항 등이 담겨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u>감사업무의 공정성 확보 등의 공익보다 이를 공개함으로써 조사상대방인 원고가 얻게 되는 방어권 보장 등의 사익이 더 크다고 판단됨</u> ◦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서울행법 2019구합653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서 본인이 제출한 답안지 ▶ 5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시험은 채점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적어 공개 시 평가기준의 정합성을 둘러싸고 시시비비가 발생하거나 채점위원의 평가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본인 답안지 열람으로 정보공개 방법을 제한하고 있어 공개로 인한 피고의 업무가 폭증한다든가 그로 인한 파급효과가 크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공개 (서울행법 2012구합35436)

청구내용	판시(재결)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역사교과서 편찬심의위원회 명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국가의 정체성 확립과 청소년 역사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역사교과서 집필 작업에 참여한 이 사건 편찬심의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에 비추어 그 구성이 편향되거나 요구되는 수준에 못 미치지 않는 등 <u>구성의 정당성에 관하여 투명하고, 공개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u> 한편 이 사건 편찬심의위원회가 비밀리에 업무를 수행할 경우 구성의 정당성 문제로 사회적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반면, 비밀리에 업무가 이루어져야 공정하고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증거는 부족함 ◦ 편찬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역사교과서의 내용이 헌법 정신에 입각한 대한민국 정통성을 저해하는지, 그 학습 내용이 학생의 수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는 공익성이 큰 업무를 담당한 이상, <u>국민에 의한 기본적 감시와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협의과정의 투명성, 공공성 및 정당성 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편찬심의위원회에 누가 참석하였는지 그 명단과 소속을 밝혀 이 사건 편찬심의위원회가 위 업무를 담당할 만한 건전한 국가의식 및 역사교육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되었는지 공개할 필요가 있음</u> ◦ 편찬심의위원회 위원들 중 <u>상당수가 자신들의 명단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편찬심의위원회의 역할, 취지, 구성 및 업무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명단공개를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이며, 위원들의 의사에 따라 공개여부가 좌우될 수는 없음</u> ◦ 다소 심리적 부담 등이 있더라도 공개를 통하여 편찬심의위원회 구성의 정당성을 검증하고 역사교과서 편찬이라는 중대한 작업에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도록 하는 이익이 더 큼 (서울고등법원 2016누65987)

청구내용	판시(재결)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위원회 회의록, 위원 명단 ▶ 5호의 비공개 대상에 일부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록 공개 시 외부의 부당한 압력 내지 분쟁에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높고 발언내용 공개에 따른 심리적 부담으로 위원 간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에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으므로 비공개 ◦ 위원명단 공개 시 추후 인사위원회 운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회의록의 내용을 바탕으로 발언자를 유추할 가능성이 있어 비공개 (서울행심 2014-863) ◦ 임기를 마친 위원들의 명단과 활동기간은 공개되고 하더라도, 위원회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아 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의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위원들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위원들이 심의결과에 대해서 일정한 책임과 부담을 가지고 심의에 충실히 임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되도록 하기 위하여 공개 (법무부행심 09-173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 5호의 비공개 대상에 일부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록의 회의내용은 비공개하여 얻고자 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주민의 알권리 보장 등의 이익이 더 크다고 보이고, 그 회의내용으로 발언자를 추단할 만한 여지가 보이지 않으며, 회의내용이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개 ◦ 발언자의 인적사항 및 직함은 공개 시 자신의 발언내용의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심의절차에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할 수 없고, 심지어 외부의 의사에 영합하는 발언을 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할 우려마저 있으므로, 이러한 사태를 막아 심의의 충실화와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비공개 (수원지법 2008구합6364)

청구내용	판시(재결)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인의 필기시험 답안지와 면접 채점표, 총 응시자의 답안지 및 면접 채점표 ▶ 5호의 비공개 대상에 일부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기시험 답안지는 청구인이 답변내용만을 담고 있으므로 공개하고, ◦ 면접시험의 평가는 단순수치만으로 계량화할 수 없는 추상적인 평가기준에 따른 주관적인 평가가 불가피하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면접심사업무와 면접관의 면접평가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비공개 (중앙행심 2009-113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산하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외부위원 명단, 발언자 명단, 회의록 ▶ 5호의 비공개 대상에 일부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위원 명단은 개인정보이기는 하나, 공개 시 각종 사회단체의 로비 등으로 인하여 적정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익적 측면에서 공개 필요 ◦ 발언자 명단은 자유롭고 활발한 심의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비공개 ◦ 회의록은 위원회의 심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 (춘천지법 2004구합12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심사위원회 회의록 ▶ 5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에는 심사위원들의 전문적·주관적 판단이 상당부분 개입될 수밖에 없는 심사의 본질에 비추어 공개를 염두에 두지 않은 상태에서의 심사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자유롭고 활발한 토의를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결과에 이를 개연성이 큰 점 등 위 회의록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알권리의 보장과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 등을 비교·교량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함 (대법원 2013두20301)

청구내용	판시(재결)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자문 의뢰내용 및 자문결과서 ▶ 5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자문 의뢰내용 및 자문결과서는 입찰계약을 집행함에 있어 판단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하고 그 의견을 받은 것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고, 자문결과가 공개되면 자문변호사들이 자문결과의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진솔한 의견을 개진할 수 없고, ◦ 피청구인이 자문결과와 다른 의사결정을 할 경우 쟁송 등이 제기되는 등 새로운 갈등이 야기될 개연성도 있어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함 (중앙행심 2011-25236) <p>※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에서는 「“타다”서비스 관련 법률 자문의뢰 문서」에 대하여 공개결정 한 바 있음. 법률자문과 관련되어 공개 여부는 개별 건마다 각기 판단해야 할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감찰조사과정에서 경찰관 들로부터 받은 고소사건에 대한 경위서 ▶ 5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사건 경위서는 공개 시 직원들의 감찰조사 기피 현상이 우려되고 감찰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공개함으로써 얻게 될 원고의 알권리 보장의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경위서는 공개될 경우 향후 동종 감사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서 비공개 (서울고법 2012누27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인의 면접채점표, 총 응시자의 면접채점표 ▶ 5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시험의 평가는 단순 수치만으로 계량화할 수 없는 추상적인 평가기준에 따른 주관적인 평가가 불가피하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면접심사업무와 면접관의 면접평가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비공개 (중앙행심 2009-20126)

청구내용	판시(재결)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의사 국가시험 문제공개와 관련된 회의록 ▶ 5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자료나 의사결정 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시험에 관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해당 시험정보가 공개될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므로 비공개 사유에 해당 (서울고법 2018누589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에 대한 세부항목별 근무성적 평정표 ▶ 5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전보·포상 등 인사관리에 반영되거나 그 다점자 순위로 등재한 승진후보자명보의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고, 근무성적평정 결과에는 평가자의 주관적 평가요소가 포함되어 공개시 평가위원들은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평정을 함에 있어 불필요한 부담이나 부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아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평가를 할 수 없게 되어 평정제도의 근간을 뒤흔들게 할 우려가 있으며, 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원고의 알권리는 미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인사관리 및 평정업무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 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비공개 (수원지법 2009구합126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은행식 치과의사 국가시험문제 ▶ 5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은행식 치과의사 국가시험 문제지와 정답지를 공개하는 것은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 (대법원 2006두15936)

청구내용	판시(재결)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등조정회의 운영관련 모든 문건, 갈등조정관 보고서, 갈등조정회의 종료에 따른 보고서 ▶ 5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등조정이란 분쟁당사자간의 양보를 통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적정 수준의 타협안을 마련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서 분쟁사안, 분쟁당사자, 갈등조정관에 따라 조정과정 및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u>특정 사안에 대한 조정내용이 다른 분쟁사안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준이 될 수 없으며,</u> ◦ 갈등조정과정 및 절차에 관한 문건이나 갈등조정과정에서 갈등조정활동 및 결과를 기록한 보고서가 공개되어 조정과정에 관한 정보나 구체적인 보상안이 유출된다면, 이미 성립된 다른 사건의 조정당사자가 조정절차 및 조정안의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조정안을 수용하지 아니하거나 조정안의 이행에 협력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게 되고, <u>향후 진행 중인 다른 조정절차에서도 조정절차나 조정안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으로 왜곡하여 해석될 여지가 있어</u> 분쟁당사자간의 갈등조정절차의 진행이나 당사자간의 양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게 되며, 이 사건 조합과 같이 법적 보상무가 없는 당사자로서는 갈등조정절차의 참여 자체를 꺼리게 되므로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해 마련된 갈등조정활동이 축소될 우려가 있고, ◦ 갈등조정관으로서도 외부의 압력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고 자신의 조정활동 및 조정의견에 대한 사항이 노출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하여 적극적인 조정활동 및 의견표명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 이 사건 정보는 <u>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사항</u>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갈등조정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청구인의 알 권리 또는 권리구제의 이익보다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함으로 인한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9186)

청구내용	판시(재결)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 ○○○○ 멘토링 프로그램 평가점수 ▸ 5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가 이미 종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평가점수가 공개될 경우 심사위원들이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될 지도 모르는 심사결과의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됨으로써 공정한 심사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 (중앙행심 2016-20954)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한 정보의 공개 여부

- 분기별 발주계획, 계약체결일, 추정가격 또는 예정가격, 계약상대방의 성명, 계약금액 및 1천만원 이상의 월별 수의계약 내역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 등에 따라 공개청구 여부에 상관없이 공개하게 되는 것이고,
- 그 외의 국가기밀이 아닌 계약에 관한 정보는 정보공개법에 의거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나,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음(법령 해석례 11-0395)

광고·홍보비 지출내역과 언론사명 공개여부

- “홍보비”는 자치단체의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매년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당해 자치단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후에야 집행할 근거가 발생하는 예산항목이라는 점에서 각 홍보건별 홍보비를 지출한 상대방과 그 상대방에게 집행된 사업비는 예산이 사적인 용도에 집행되거나 낭비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할 필요는 크다할 것임
- 반면, “홍보비가 집행된 언론사명”은 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홍보를 실시한 업체의 명칭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 해당 업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거나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홍보를 한 업체의 명칭이 공개된다고 해서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는다거나 그 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등 기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될 가능성 또는 자유로운 사업활동이 저해되고 영업활동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언론사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할 때 그 성격을 순수한 영리기업으로만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개대상 정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국무총리행심 08-22417 및 08-23015 등)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의 공개범위

- 공공기관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그 지출 용도가 공적인 목적에 제한되어 있고, 지출 성격이 기밀성을 띤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 증빙서류”는 헌법 및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단서 (다)목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집행의 합법성·효율성 확보라는 공익을 실현하고 국민들의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정신을 고양하는 한편, 예산이 사적인 용도에 집행되거나 낭비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이를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큰 것으로 판단됨(서울고법 2001누17274)
- 지출증빙 중 “사인(私人)인 행사참석자와 금품수령자”에 관한 정보는 공개될 경우 그들의 사생활이 침해됨은 물론 이와 같은 사생활 침해에 대한 반감 등으로 인하여 원활한 조직운영, 홍보, 격려 등 위 각 추진비를 지출하는 목적 달성이 오히려 저해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추진의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도 있으므로 비공개(대전고법 2001누2162)
- 금품수령자 정보 중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자격 등으로 금품을 수령”한 경우에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함
- 법인 등의 “상호, 단체명, 영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에 관한 정보는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함
- 법인 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이름과 결합하여 공개 시 당해 법인 등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대법원 2003두8302)

사업공청회 의견서 정보공개청구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과 관련, 개발사업에 대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부지 선정 및 매입, 입찰과 계약절차를 통한 업체 선정이 완료되어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이 아니더라도 “의견서”를 공개할 경우 사업추진에 대한 찬·반의견이 노출되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시시비비가 일어날 소지도 있으며, 결국 사업 착공 후에 집단행동 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면 비공개가 가능할 것이고, 이러한 우려가 없다면 공개가 가능할 것임. 공개 시에도 제6호와 관련 이름과 전화번호를 가린 형태의 부분공개가 가능할 것임

관인목록 및 관인대장 정보공개청구

- 관인목록 및 관인대장을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 시 청구인이 이를 위·변조하여 범죄에 이용하는 등 다른 형태로 그 정보의 성질을 훼손하여 악용할 소지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형태를 열람이나 사본·복제물 교부에 의한 공개로 변경할 수 있음. 다만, 정보공개결정 통지 시에 청구인이 청구한 공개형태 및 수령방법의 변경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불필요한 민원제기가 없도록 해야 함

회의 녹음내용 정보공개청구

- “주민과 시장과의 대화·회의내용(녹음)”의 정보가 공개될 경우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견 교환 등이 저해되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또한 해당 정보는 제3자와의 관련성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바, 제3자 관련 정보라고 판단되면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제3자 의견청취(제11조제3항) 절차를 거쳐야 함

공모탈락자로부터 공개모집(점수표, 심사기준표 등) 관련 정보공개청구

- “공모탈락자의 공개모집(점수표, 심사배점표 및 기준표) 관련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관한 사항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 및 장래의 동종사무의 적절한 수행에 지장을 받는다든지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함
- 따라서, 청구자가 공개 청구한 공개모집 관련 정보는 비공개에 해당하는 점수표의 심사위원 이름을 가린 부분공개 결정이 가능할 것임. “심사위원 이름을 가린 형태의 점수표(총점)”는 특정 위원이 특정항목에 대하여 몇 점을 부여했는지를 정보를 취득한 청구인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받는다든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적고, “심사 배점표 및 평가 기준표”의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아닌 오히려 청구자의 알권리와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공개가 가능한 부분임

0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의 의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제6호는 2020.12.22.부터 시행

[구법]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2020.12.22. 시행 개정 정보공개법에 대한 안내

구법이 2004.1.29. 전부 개정으로 제7조제1항제6호 본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변경되면서 대법원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으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개인식별 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

2020.12.22. 시행 개정법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 사유가 ‘개인에 관한 사항’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 변경되었으므로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본 매뉴얼에 기재된 기존의 사례와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음

•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다. '가' 또는 '나'의 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헌법재판소 2003헌마282)

• 민감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1항, 동법 시행령 제18조)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1.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2.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3.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
4.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

• 고유식별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1.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3.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비공개 이유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대법원 2004두1262)
 - 사생활의 비밀 : 국가 또는 제3자가 개인의 사생활영역을 들여다보거나 공개하는 것에 대한 보호
 - 사생활의 자유 : 국가 또는 제3자가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대한 보호(헌재2002헌마518)

비공개 여부의 판단 기준

- 청구된 내용 중 6호에 따른 비공개 사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비공개로 결정할 수 없으며, 비공개 부분만 가리고 부분공개(법 제14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와 관련된 개인의 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대법원 2012다49933, 헌재 2002헌마518)

- 공개청구 대상정보에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교량하여야 하며, 개개의 개인식별정보가 공개가 가능한지 여부, 비공개대상 개인식별정보와 나머지 정보의 분리가능성 및 나머지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지 여부, 공익을 위한 개인식별자료의 공개필요여부 등에 관하여 판단(대법원 2004두9180)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침해되는 인격적 법익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표현행위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이익이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충돌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공적인 존재인지 여부, 개인정보의 공공성 및 공익성,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절차·이용형태의 상당성, 개인정보 이용의 필요성, 개인정보 이용으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의 성질 및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 보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비공개 이익)과 표현행위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공개 이익)을 구체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대법원 2008다42430)

다목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대법원 2003두8050)

- 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 보호제도는 정부활동의 감시를 목적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널리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제도와 특정의 개인에게 본인정보를 공개하는 개인정보 보호제도에는 성질상 차이가 있음. 따라서 본인의 개인정보 공개문제는 개인정보 보호제도(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등)에 의하여 처리함이 바람직함(2019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 안내서 P150)
- '이미 사망하였거나 실종선고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로 볼 수 없으나, 사망자의 정보가 사망자와 유족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정보이거나 유족 등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망자 정보인 동시에 관계되는 유족의 정보이기도 하므로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포함할 수 있음(2019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 안내서 P137)

예외적으로 공개 가능한 정보(법 제9조제1항제6호 가목~마목)

- 가.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대부업 등록부¹, 건축물 배치도²)
- 나.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고위공직자³의 인사발령 사항)
- 다.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정보(행사참석자 정보 중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공무원⁴, 징계처분 대상 검사의 이름·소속·직위·처분의 내용⁵)
- 라.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입증서류 구비 확인)
- 마.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⁶의 성명·직위(각종 문서의 기관장명, 회계관직 공무원명)
- 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
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3.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21조
4. 대법원 2003두8302 등
5. 검사징계법 제23조, 서울행법 2006구합27298
6.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임직원 포함(중앙행심 2007-14671, 2007-19790)

법 제9조제1항제6호 가목의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단서조항 ‘가목’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로 개별법에서 열람을 허용하고 있는 입법례를 예시하여 보면,
 - ① 민사집행법 제7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 불이행자 명부나 그 부분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신청자 모두에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고
 - ②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업자 등록부’의 열람으로서 청구인에게 대부업자 성명, 주소, 영업소 명칭, 소재지, 대부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며,
 -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의한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발급’의 교부로서 청구자에게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은 각 개별법령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공문서의 성립과정에 참여한 공무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공문서

- 당해 공문서의 성립과정에 참여한 공무원의 성명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라목에서 비공개 대상정보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당해 공문서가 동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법령 해석례 06-0131)

대부업 등록부의 내용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등록부의 내용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가목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비록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그 공개를 제한하거나 비공개로 할 수 없음(법령 해석례 07-0253)

※ 개인에 관한 사항이나 공개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대 상	공개 정보	비 고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소속, 직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6호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문서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의 직위나 직급(대외직명 포함), 서명 ※ 관인, 서명 등 위변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공개 • 행정기관의 우편번호,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 주소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기안문의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무 관련 정보 및 업무분장 • 휴가일자, 직무수행 관련 휴가사유 등 ※ 개인사유로 인한 휴가·휴직(연가, 병가, 출산휴가 등) 사유 및 휴가지는 비공개 	직무수행과 무관한 정보는 비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장신청 및 결과보고서 • 출장여비 수령내역 	대전지법 2005구합1536, 서행심 2015-349, 중앙행심 2013-12347
공인 ※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인의 성명 • 공인의 직업(소속 및 직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6호 마목 ※ 시정의 투명성 및 알권리 충족, 위촉된 공인 등의 전문성 검증을 위해 공개
일반시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공개 청구인의 성명, 주소 ※ 주소 중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 참고항목은 제외하고 공개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 제3차 의견청취 시

서울시 정보 비(부분)공개 사례 분석

청구내용	심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보건증 유무와 위생문제에 대한 단속요청 관련 다산콜센터에 신고한 날짜 (시민봉사담당관) ▶ 특정 개인정보는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쉽게 개인을 유추할 수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한 날짜를 공개하는 것만으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적고, 일반적으로 각종 행정처분일은 본인에게 통지하는 등 본인 관련 신고사항에 대한 알 권리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공개 (2012년 제15차 정보공개심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수에 대한 전액관리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 바, 당시 적발 공무원의 명단 (교통지도과) ▶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당시 적발확인 공무원을 추적하기 위해 청구한 건으로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하다는 사유로 심의 요청 	<p style="text-align: center;">〈 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에 관한 정보 예외규정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라목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성명과 당시의 직위는 공개 (2013년 제13차 정보공개심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대공원 내 민원이 제기된 업체의 업종과 수익허가 면적 (서울대공원 운영과) ▶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별 제기된 민원 건수는 공개 시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보기 어려우며, 특히 민원제기 횟수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은 당사자의 청구로,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공개 (2016년 제3차 정보공개심의회)

청구내용	심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사고 목격자의 신고내용 (서울종합방재센터) ▶ 제3자의 의견청취 결과 비공개 요청하였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취파일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이므로 녹취파일을 충실히 서면으로 정리한 녹취록을 공개하되, 청구인에게 녹취록을 공개하는 취지를 상세히 설명 (2012년 제15차 정보공개심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롯데월드 안전사고 등 관련 부실측정 및 벌점부과 검토보고’ 결재문서 (건축기획과) ▶ 벌점 부과대상자의 이름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부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벌점부과 대상자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2015년 제11차 정보공개심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송파구 방이동 ○○아파트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금 관련 정보 (강동수도사업소) ▶ 개인에 관한 사항과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부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공적 직무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단체의 계좌번호는 단체의 경영·영업상의 비밀로 공개 시 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인정보 및 계좌번호를 제외하고 공개 (2014년 제6차 정보공개심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출입기자단 명단(소속, 직책, 성명, 연락처, 메일주소, 언론사별 인원수) (언론담당관) ▶ 제3자가 비공개 요청하였으며, 공개 시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부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출입기자의 직책, 연락처, 메일주소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비공개 ◦ 소속된 언론사명, 인원수, 성명은 정보의 특성상 보도 등을 통하여 이미 상당수 대중에 공개되어 있고,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정보로 볼 수 없으므로 공개 (2016년 제13차 정보공개심의회)

청구내용	심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의 금품 수수 적발실태 관련 자료(적발일시, 적발자, 적발장소, 수수금액, 처리결과) (조사담당관) ▷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부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발자 인적사항 및 처리결과 중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청구의 취지가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정보의 일부를 공개할 수 있을 때에는 정보공개법 제14조에 의거 해당 개인정보를 가린 나머지 정보는 공개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퇴직자 현황(이름, 직위, 일시, 재직기간, 재직시 징계 및 수상현황, 채용방식, 퇴직 사유) (인사과) ▷ 퇴직자는 현재 민간인 신분으로 개인의 동의 없는 정보공개는 불가하며, 부분공개 시에도 정보를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유추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부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청 정보는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개인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 다만 5급 이상 정년퇴직, 명예퇴직자의 경우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21조에 의해 공보에 게재되는 수준(성명, 소속, 퇴직사유, 퇴직 일자)으로 공개 (2013년 제16차 정보공개심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직원(산하기관, 소속기관 포함) 공무원이 외부강의를 신고한 실적(기간, 내용, 성명, 직위, 소속직책, 신고 내용 일체) (조사담당관) ▷ 청구 정보 중 성명 등과 같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부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하고 청구의 취지가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정보의 일부를 공개할 수 있을 때에는 정보공개법 제14조에 의거 해당 개인정보를 가린 나머지 정보에 대해 공개 권고

청구내용	심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가 원고·피고로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소송 현황 (법률지원담당관)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재판의 심리 및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어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며, 사건번호는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사건검색)를 통하여 소송상대방을 비롯한 소송진행 내용에 대한 상세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 및 법인 단체의 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부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행 중 또는 종결된 소송의 사건번호, 소송물, 당사자, 소송액, 소송사유는 공개 시 소송 상대방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 진행 중인 소송의 경우 소송 관련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 진행 중 소송의 사건명, 접수일, 진행상태, 상급별 판결결과, 확정된 소송의 사건명, 최종판결일자 및 판결결과 등 공개 (2015년 제9차 정보공개심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19차 건축위원회 심의위원 명단 및 연락처 (건축기획과) ▷ 이름/소속 및 연락처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부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위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촉한 공인에 해당하므로 공개 ◦ 위원 연락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공개 시 당사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2014년 제12차 정보공개심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사용승인 시민자문단 전체회의(7.8) 결과보고 (건축기획과)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부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위원의 자문의견서 및 위원의 개인정보는 공개 시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 그 외 정보는 저층부 임시사용승인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미 완료되었으므로 공개 (2015년 제11차 정보공개심의회)

청구내용	심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가 검찰, 경찰로부터 받은 공무원범죄 처분결과 통보서 및 범죄내역(연도별, 범죄유형별, 범죄혐의내용, 사후조치내역) (조사담당관) • 공무원 금품수수 적발실태 관련 자료(적발일시, 적발자, 적발장소, 수수금액, 처리결과) (조사담당관) <p>▷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p>	<p style="text-align: center;">〈 부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내역은 통계자료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 공무원범죄 처분결과 통보서, 적발실태 관련 자료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하고 청구의 취지가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정보의 일부를 공개할 수 있을 때에는 정보공개법 제14조에 의거 해당 개인정보를 가린 나머지 정보에 대해 공개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복지지원센터 위탁 운영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명단, 연락처, 이메일 주소 (주택정책과) <p>▷ 주거복지전문가가 소수로 한정 되어 있고, 심의위원들이 유관 위원회에 중복 참여하고 있어 향후 공정한 위원회 등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유로 비공개</p>	<p style="text-align: center;">〈 부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 명단은 해당 건에 대한 심의가 종료되어 공개 시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가 현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 위원 연락처, 이메일 주소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공개 시 당사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2015년 제15차 정보공개심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경전철 수익성 확대를 위한 검토용역 보고서, 경전철 수익성 확대를 위한 협의회 관련 정보 (도시철도계획부) <p>▷ 서울시 경전철 수익성 확대를 위한 협의회 구성현황, 개최실적, 회의자료, 회의결과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p>	<p style="text-align: center;">〈 부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 보고서는 해당 용역이 이미 종료되어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개 ◦ 협의회 구성현황, 회의자료 및 결과는 공개 시 업무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만한 민감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인정보 및 발언자명을 제외하고 공개 ◦ 그 밖에 개최실적은 공개 (2015년 제15차 정보공개심의회)

청구내용	심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단법인 ○○협회 인가신청 당시 회원사 명부(경제정책과) ▷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 시 악용사례 또는 염려되고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부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직위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 회사명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 (2014년 제18차 정보공개심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교 투신사고 관련 119신고 접수 통화 내용, 접수직원 이름, 직위, 나이, 경력, 방재센터 조치사항, 경찰에 연락한 사람, 유품발견 시간 및 발견자 (종합방재센터) ▷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부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음성파일, 접수직원의 나이와 경력은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비공개 ◦ 그 외 음성파일이 아닌 통화내용, 접수자의 이름과 직위, 조치사항, 유품발견 시간 및 발견 공무원은 공개 (2012년 제10차 정보공개심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촌호수 주변도로 함몰에 대한 안전진단’ 민원회신 결재문서 (건축기획과) • ‘쓰레기 매립지’ 민원회신 결재문서 (자원순환과) ▷ 민원회신 문서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 되어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부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인 성명 등 신상정보를 제외한 민원답변서는 공개시 민원인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보기 어려우므로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2015년 제11차 정보공개심의회)

청구내용	심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전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관련 회의결과 보고' 결재문서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 ▷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로서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부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건물의 매각이 완료되어 의사결정이 종료된 사안으로 외부 참석자 성명 등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 (2015년 제1차 정보공개심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와 함께 하는 녹색식생활 체험교육 일일 추진현황보고' 결재문서 (농업기술센터) ▷ 교육 참여자의 개인정보 및 사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부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붙임문서는 교육대상자의 이름, 사진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 나머지 결재문서 본문은 공개 (2014년 제17차 정보공개심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회신(○○○, 위커힐)' 결재문서 (공동주택과) • '서부간선지하도의 신구로 우수지 수직환기구 설치관련 자료 공개' 결재문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 길고양이 TNR사업 관련 민원회신문서 (동물보호과) ▷ 민원(정보공개 청구) 회신 문서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부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 또는 정보공개 청구 관련 검토(회신)문서로 정보공개법 제14조에 의거 개인정보 및 민원인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권고

청구내용	심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산책로 조성 공사 민원관련 실무 관계자 회의 개최’ 결재문서 (임대주택과) • 남마공동체-항구적인 주거 및 생활대책 민원 검토 보고 (자활지원과) <p>▷ 사업관련 민원에 대해 검토한 사항으로 공개 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p>	<p style="text-align: center;">〈 부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 관련 검토(회신)문서로 정보공개법 제14조에 의거 개인정보 및 민원인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2조’의 인력확보기준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상근인력자 명단, ② 상근인력자 자격증 사본, ③ 상근인력자 증명서류 사본 (주거정비과) <p>▷ 법인의 직원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는 사유로 비공개</p>	<p style="text-align: center;">〈 부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상근인력자 명단’, ‘② 상근인력자 자격증 사본’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③ 상근인력자 증명서류 사본’은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당해 사업장의 명칭과 자격취득일을 청구인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복지관 관련 제기된 민원내용, 민원인 성명, 민원처리결과 (어르신복지과) <p>▷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p>	<p style="text-align: center;">〈 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사건 관련 민원에 대한 공개요구로, 개인이름을 가리더라도 다른 정보들에 의하여 특정 민원인에 대한 내용임을 쉽게 유추할 수 있어 민원인(제보자) 보호를 위하여 비공개 권고

청구내용	심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지도점검 전 민원내용 (출산육아담당관)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심의 관련 진정민원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회) <p>▷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p>	<p style="text-align: center;">〈 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법, 부정행위 등의 신고, 통보자 인적사항은 공개 시 참고인 및 피의자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민원내용의 개인이름을 가리더라도 다른 정보들에 의하여 특정 민원인에 대한 내용임을 쉽게 유추할 수 있어 비공개 (2013년 제11차, 2014년 제6차 정보공개심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산콜센터 팀장과 민원인(본인)의 대화록 음성파일 원본 (시민봉사담당관) <p>▷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p>	<p style="text-align: center;">〈 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음된 음성은 고유한 개인정보로서 요청한 음성파일에는 민원인뿐만 아니라 상담사의 음성도 포함되어 있어 공개 시 상담사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2014년 제9차 정보공개심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기 시정학교 수료자 명단,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시민소통담당관) <p>▷ 개인식별정보로서 공개 시 수료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p>	<p style="text-align: center;">〈 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당사자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2015년 제11차 정보공개심의회)

청구내용	심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인 본인이 감사담당관 소속 공무원과 전화통화 녹음파일 (감사담당관) ▷ 녹음파일에 청구인 뿐만 아니라 해당 공무원도 통화당사자로서 목소리가 포함되어 있어 해당 공무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청 녹음파일에는 청구인만이 아니라 공무원이 통화당사자로서 개인 음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개할 경우 공무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2019년 제16차 정보공개심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도상가 변상금 부과와 관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과 내역 (건설혁신과) ▷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부과내역은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인의 성명은 비공개 (2019년 제17차 정보공개심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노숙인 주택 공급 사업’ 관련 사업별 주택 소재지의 주소, 공급호, 세대수 (자활지원과) ▷ 주소 등은 개인식별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거주자의 사생활을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숙인 주거지원사업’의 사업별 주택 주소, 주소지 별 공급호 및 세대수를 공개할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또는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2019년 제18차 정보공개심의회)

청구내용	심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산구 남영동 재개발의 진정서를 제출한 ○○○외 259명의 명단 (지구단위계획과) •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 세목(사업인정) 고시에 첨부된 주민동의서 (지구단위계획과) • 사단법인 ○○협회 총대의원 명단 (장애인복지과) • 노인돌보미사업 및 방문건강관리 사업 수혜대상자 명단(노인복지과) • 서울시 지방하천에 개인 사유지가 포함된 번지와 소유자(하천관리과) <p>▷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p>	<p style="text-align: center;">〈 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정보에 포함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은 개인식별형 정보로서, 공개 시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현저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이므로 비공개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북촌 한옥 지원 현황 (건축기획과) <p>▷ 개인별 비용지원 현황 자료에는 주소, 지원금액 등이 있어 개인 정보사항으로 판단하고, 공개 시 사생활의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p>	<p style="text-align: center;">〈 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옥수선 등에 따른 개인별 비용지원 현황(지번, 금액, 지원내역)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개인사생활의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 ◦ 청구인의 알권리 충족 및 시정의 투명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북촌 한옥 총 지원비용 및 지원건수는 공개 (2013년 제7차 정보공개심의회)

청구내용	심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부서 개인별 초과근무내역 및 지급받은 초과근무 수당 (보도환경개선과) ▷ 각 개인별 초과근무내역 및 지급받은 초과근무 수당은 공무원의 소득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의 소득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개인식별 정보를 제외하고 통계 등의 형태로 제공 권고 (2013년 제11차 정보공개심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공무원의 재직근무지, 직명, 보직 (인사과) ▷ 공무원의 보직경로는 경력관리 사항에 해당되며, 공무원의 경력은 직무의 전문성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공개토록 되어 있으나, 공무원의 직무 전문성과는 상관없는 청구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인의 재직근무지 및 직명과 보직에 대한 정보는 경력관리사항에 해당되며, 공무원의 직무 전문성과 상관없는 개인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비공개 (2013년 제8차 정보공개심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사건 방송보도 관련 조사 관련자 진술내용 (조사담당관) ▷ 감사(조사) 관련자에 대한 진술 내용을 담은 자료로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진술내용만으로도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로서 공개 시 진술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관련자 진술내용은 성명 등 일부 정보를 제외한 형태로 공개하더라도 당사자를 유추할 가능성이 크며, ◦ 조사 대상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거나 조사 대상자의 자유로운 발언이 위축되어 조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 (2016년 제6차 정보공개심의회)

관련 판례(재결례)

청구내용	판시(결정)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면심사위원 명단과 약력 ▶ 6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면심사위원회 위원과 같은 공직자의 신분을 사생활의 비밀이라고 할 수 없고, 공직자의 신분이나 담당 업무가 일반에 알려진다고 하여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될 것도 없으므로 공개 (서울행법 2008구합319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사고의 피의자 인적사항 ▶ 6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사고의 피의자 인적사항은 피의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보증을 청구하기 위해서 피의자의 주소가 반드시 필요하기에 공개 (중앙행심 2010-172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력범죄 피해자인 고소인이 피고인 공소장에 대한 청구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와 본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 6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력범죄의 피해자인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의 공개를 청구한 사안에서, 공소장의 주요 내용은 검사가 수사하여 기소한 피고인의 죄명, 공소사실, 적용조항 등에 관한 내용으로서, 이러한 정보의 공개로 보호되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 등 이익이 피고인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보다 더 중함 (서울고법 2005누170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사고의 발화지점 및 발화지점 점유 사용자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 ▶ 6호의 비공개 대상에 일부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공개 시 청구인의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원천 봉쇄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이 이 사건 발화지점의 점유 사용자의 사생활 등 이익에 비해 더 크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 ◦ 단, 주민번호는 민사소송 등의 청구를 위한 필수 정보는 아니므로 비공개 (중앙행심 2009-18296)

청구내용	판시(결정)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업체의 영업비밀이 경쟁업체에 유출되었다고 제보하였으나, 제보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제보자에 관한 정보 <p>▷ 6호의 비공개 대상에 일부 해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사건 정보는 제보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로 구성되어 그 자체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고 할 것이나, ◦ 제보자의 신원정보 공개로 인해 그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는 정도보다는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정보가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보자의 이름, 주소에 관한 부분은 비공개정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 다만, 청구인의 권리구제는 제보자의 이름, 주소의 공개만으로 충분히 달성될 것으로 보이므로 연락처에 관한 부분은 비공개정보로 봄이 상당함 (서울행법 2008구합264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정사건 기록 중 ○○○에 대한 각 진술조서 <p>▷ 6호의 비공개 대상에 일부 해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정보 중 주민등록번호, 연령, 생년월일, 주거, 본적,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학력, 가족관계, 근무지, 주민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외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 (서울행법 2007구합77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사소송 판결문(배우자의 이름, 직업,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선고형의 종류 및 형량, 혼인관계, 부동산의 소유관계 및 부동산의 구체적 내역,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경위, 부동산 매입자금 등 재산형성과정 등 포함) <p>▷ 6호의 비공개 대상에 일부 해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결문 중 원고 남편의 이름, 직업,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선고형의 종류 및 형량, 위 원고의 신분 및 혼인관계, 남편의 부동산의 소유관계 및 부동산의 구체적 내역,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경위, 부동산 매입자금 등 재산의 형성과정 등은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반면, 이를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비공개 ◦ 이를 제외한 부분은 공개 (청주지법 2013구합1923)

청구내용	판시(결정)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 사업승인 심사자료에 포함된 개인 주주의 성명, 출자액, 신규발행 주식수, 총투자액, 주식 수, 주식대금총액, 업종, 소속 및 직위, 국적 • (나) 법인 주주 대표이사 등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출생지, 경력 • (다) 경진대회 수상자 성명, 소속, 국적 등 수상자, 강연자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라) 비용지출 수령인의 이름, 서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수령금액 등 정보 등 <p>▷ 6호의 비공개 대상에 일부 해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의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함 ◦ (나)의 정보는 법인 주주에 관한 정보와의 관련성을 넘어서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공개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비공개 ◦ (다)의 정보는 모두 대외적 활동으로서 각 대회, 사업, 강연 등에 공개적으로 참가하였던 것으로 공개 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공개 ◦ (라)의 정보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로서 그 공개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비공개 (서울행법 2013구합168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사용 내용에 관한 서류 <p>▷ 6호의 비공개 대상에 일부 해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속철도역의 유치위원회에 지자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의 사용 내용에 관한 서류 일체 등의 공개를 청구한 사안에서 공개 청구한 정보 중 개인의 성명은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등의 이익이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보다 더 중요하므로 이를 제외하고 공개 (대법원 2009두142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추진비에 관련된 정보 중 행사 등에 참가 또는 금품을 수령한 공무원에 관한 정보 <p>▷ 6호의 비공개 대상에 일부 해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품수령자 정보 중 공무원이 직무와 관계하여 금품을 수령한 경우에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자격 등으로 금품을 수령한 경우에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 2003두8302)

청구내용	판시(결정)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추진비에 관련된 정보 중 사인(私人)인 참석자 내지 금품수령자에 관한 정보 ▶ 6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출 증빙 중 사인(私人)인 행사참석자와 금품수령자에 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그들의 사생활이 침해됨은 물론 이와 같은 사생활 침해에 대한 반감 등으로 인하여 원활한 조직운영, 홍보, 격려 등 위 각 추진비를 지출하는 목적 달성이 오히려 저해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추진의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도 있으므로 비공개 (대전지법 2005구합2928, 대전고법 2001누 21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사업 내 보상 관련 정보 중 제3자와 관련된 토지조서, 감정평가내역 등 ▶ 6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는 개인적인 사항에 관한 정보로서 여기에는 개인의 인적사항,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비록 당해 정보 자체로부터 개인이 식별되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통상 입수할 수 있는 관련 정보와 조합함으로써 상대방의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이 식별되는 경우에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 (수원지법 2005구합52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CTV에 녹화된 통행인 얼굴 ▶ 6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사건 녹화물 중 일반 통행인의 얼굴 등 특정인을 식별할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 해당함 (대법원2012두257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 쉰 가구의 가구주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구원수, 소득, 재산, 주거현황, 전화번호 등 ▶ 6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 쉰 가구의 가구주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구원수, 소득, 재산, 주거현황, 전화번호 등은 공개 시 악용될 가능성이거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그다지 필요한 정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비공개 (서울행법 2009구합40575)

청구내용	판시(결정)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사업의 사업제안서 및 착수계에 기재된 참여인력 성명 ▶ 6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사업의 업체 이름이 이미 공개되어 있고,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면 이름과 소속을 통하여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게 되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중앙행심 2013-194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교과전문가협의회 참석자명단 ▶ 6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협의회 위원들은 만장일치에 의하여 55개 수정권고안의 토대 마련가 마련되어 참석자 명단 공개 시 위원들의 개인적인 사상 및 역사관이 공개되며, 한국 근·현대사 역사교과서에 관한 각계각층의 의견대립이 치열한 현 상황에서 여론 공격은 향후 교과서 검정 등 공적 업무의 수행에도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정보는 공익을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라고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법 2009구합47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급 순위명부 ▶ 6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급 지급대상의 이름이 명기된 성과급 순위명부는 각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비공개 (대전지법 2005구합15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의 채권압류 현황 ▶ 6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의 채권압류 현황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이므로 비공개 (전라북도 행심 08-2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별 시간외 근무수당 ▶ 6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 근무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한 직무수행 시간에 대한 보전차원에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에 관한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개별 공무원의 이름을 가린 형태로 부분공개 (국무총리행심 06-14443)

청구내용	판시(결정)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인의 상벌, 징계, 승진일시 및 사유를 포함한 인사기록 ▶ 6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인이 요구한 자료는 공무원의 상벌, 징계, 승진 일시 및 사유 등이 기록되어 있는 개인의 인사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는 공개 시 정보공개 대상자의 불명예스러운 정보를 포함한 개인의 인격에 관한 정보가 공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반면, 사회통념에 의하여 공무원의 상벌, 징계, 승진일시 및 사유 등을 공개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구체적으로 상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이유로 하여 행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중앙행심 2005-174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에 대하여 감사한 사항과 그 결과 ▶ 5호, 6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인 개인정보를 삭제하더라도 민원대상이 되는 상대방 등 일부는 당해 민원내용과 조사결과 등 자료를 통해 민원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고, 특정인의 성명, 직책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민원내용, 제출자료 및 피청구인의 조사사항을 종합하면 특정 인물 또는 단체로 특정될 가능성이 높아 일반인에게 제한 없이 공개가 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크고, 민원인으로서의 자신이 제기한 민원사항이 공개된다면 공개에 따른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의견표출이 어려워지게 될 우려가 있으며, 신고건에 대한 담당 조사관의 구체적인 조사내용, 조사결과를 담고 있어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에는 조사관은 자신의 판단내용의 공개에 따른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민원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여러 당사자들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그로인해 업무의 원활하고 공정한 수행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 감사는 종료되었으나 후속조치 등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국무총리행심 2009-23701)

청구내용	판시(결정)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기소처분 기록 중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외의 진술내용 <p>▶ 6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기소처분 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비공개 대상에 해당됨 (대법원 2011두167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의자신문조서 내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및 진술내용, 관련자 등의 이름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주거 또는 직장주소), 본적, 전과 및 검찰처분, 상훈·연금, 병역, 교육, 경력, 가족, 재산 및 월수입, 종교, 정당·사회 단체가입, 건강상태, 연락처, 전화 등 <p>▶ 6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고가 비공개 결정한 정보 중 관련자들의 이름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주거 또는 직장주소), 본적, 전과 및 검찰 처분, 상훈·연금, 병역, 교육, 경력, 가족, 재산 및 월수입, 종교, 정당·사회 단체가입, 건강상태, 연락처, 전화 등의 개인에 관한 정보’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비공개 (대법원 2011두23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군본부 감찰실에서 작성한 민원조사 결과보고서 <p>▶ 6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인과 관련자인 주변 인물들에 대한 내용이 실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군 내지는 공군 헌병병과라는 협소한 조직사회 내에 국한된 일로서 내용 중 성명을 지우고 공개하더라도 누구를 지목하는 것인지 특정할 수 있는 개연성이 매우 크고 이는 단결과 화합이 생명인 군 조직 내에서 조직원 상호간에 상당한 갈등과 반목 내지 불신의 분위기를 유발할 여지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비공개 (중앙행심 2013-20117)

청구내용	판시(결정)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검행심위원회 사건 관련 위원 참석 및 심리수당 ▶ 6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한 위원들의 참석비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동 위원들은 「행정심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들로서 행정심판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예산의 범위에서 공통적으로 지급받고 있는 참석비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중앙행심 2016-144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甲의 미성년자 자녀 乙 등이 작성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급여 분할 청구 민원서류 ▶ 6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서류는 행정관청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乙 등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서 개인적인 민원 청구 내용 및 작성자들의 휴대전화번호 등 신상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점, 乙 등은 연령 등에 비추어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데 민원서류의 공개에 부동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정보는 乙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甲이 친권자라고 하여 공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96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사업 내 보상 관련 정보 중 제3자와 관련된 토지조서, 감정평가내역 등 ▶ 6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는 개인적인 사항에 관한 정보로서 여기에는 개인의 인적사항,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비록 당해 정보 자체로부터 개인이 식별되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통상 입수할 수 있는 관련 정보와 조합함으로써 상대방의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이 식별되는 경우에는 비공개정보에 해당 (수원지법 2005구합52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CTV에 녹화된 통행인 얼굴 ▶ 6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사건 녹화물 중 일반 통행인의 얼굴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 해당함 (대법원 2012두25729)

[공무원의 개인정보 관련]

구분		대상정보
공개 가능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소속, 직위 • 공문서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의 직위나 직급(대외직명 포함), 서명 ※ 관인 서명 등 위변조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전자파일이 아닌 서면으로 공개 • 사무실 전화번호, 팩스번호 • 업무용 전자우편 주소 • 복무 관련 정보 및 업무분장 • 출장신청 및 결과 보고서, 출장여비 수령내역 • 휴가일자, 직무수행 관련 휴가 사유 등
비공개 가능	직무수행과 무관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대전화번호(개인용) • 자택주소 • 개인 이메일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신용카드번호 • 통장계좌번호 • 가족관계, 인적 유대관계 • 퇴출후보자 명부 •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 개인의 평가에 관한 기록 • 인사교류 신청내역 • 채용후보자 명부 • 학력 및 경력, 자격사항 ※ 공무원의 직무 전문성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공개 •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 신원조사 • 인사기록카드 • 범죄사실 기록 • 납세내역 • 재산 및 채무 현황 • 개인별 급여 및 수당내역 • 개인별 복지포인트 배정 및 사용내역 •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 개인사유로 인한 휴가·휴직사유, 휴가지 등(연가, 병가, 출산휴가 등) * 직무수행 관련 휴가인 경우는 공개

- 1) 다른 법령에 공개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 우선 적용
- 2)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①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공개, ② 개인식별정보(성명 등)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한 경우는 부분공개(서울시 복지포인트 지급 현황, 부서별 초과근무수당 지급 내역 등)

공무원 개인정보 정보공개 범위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 성격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예를 들어 각종 문서 등에 기록된 기관장명, 당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 회계관직 공무원의 성명 등은 여기서 말하는 개인정보가 아니라 당해 공무원이 공공기관을 대신하여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의 일부로 간주되나 공무원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도 근무성적, 학력, 소득에 관한 정보, 연가·병가 사유 등은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비공개가 가능할 것임
- 공무원의 정보 중 개인에 관한 비공개의 구체적인 대표 사례로
 - 1) 근무성적·학력·소득에 관한 정보, 근무상황부 중 연가·병가 사유,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과 같이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 2) 인사교류 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3)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신고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공무원 개인의 인적사항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한 경우의 행사참석자 정보, 비위사실 조사보고서, 공무원 범죄수사, 처분에 관한 사항의 정보를 들 수 있음

퇴직공무원 인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 “퇴직공무원의 인사기록사항”이 개인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예외적 공개대상인 제6호 각 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함
- 또한 해당 정보는 제3자와의 관련성을 함께 검토하여야 하는 바, 제3자 관련 정보라고 판단된다면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에 의거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개인의 징계처분 결과 정보공개청구

- 공무원의 징계처분 내역은 당해 공무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비공개가 가능하나, 판·검사는 ‘법관징계법’ 제26조 및 ‘검사징계법’ 제23조에 의거 징계처분 내역을 관보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예외적으로 공개가 가능함

학교장 및 교감의 개인정보 공개청구

-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제6호에서 정한 예시사항으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인 신체,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인적 유대관계, 초상 등에 관한 정보도 제6호의 대상정보가 될 수 있음. 다만, 제6호의 예외사유로 공개가능한 개인정보가 제6호 각목에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교장·교감의 이름, 소속, 성별, 나이, 직위, 현직위임용일, 전공과목”의 정보는 공무원 개인정보로서 그 성격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함.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장 인사와 교직원 현황에 성명, 직위, 사진 등이 이미 공개된 학교가 대부분인 점, 전공과목은 개인의 학력정보로 인정될 수도 있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바람
- 동시에 정보공개법 제14조는 부분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인정되면 해당 부분만을 가린 부분공개 결정이 가능함

특정인의 인사발령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 이전 근무지 및 담당 직명, 보직 경로에 대한 것(인사발령 기록)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내용이 공개될 경우 궁극적으로 특정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가 가능할 것임

기관장 개인명의의 기부금 및 재산 환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 기관장이라 하더라도 개인명의 기부금 및 재산환원 내역이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개인의 명예, 재산 등에 해당되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비공개가 가능할 것임

[사인의 개인정보 관련]

채권보유자의 채무자에 대한 토지보상내역 정보공개청구

- “특정인이 보상을 받았는지의 여부, 보상일자, 보상금액”의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는 비공개 대상정보인 바, 이를 공공기관이 공개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공개동의나 청구인의 청구취지가 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단서 조항 ‘다목’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어야 예외적으로 공개가 가능함
- 단서조항 ‘다목’의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 및 개인구제(사익)를 비교·형량(교량) 하여 그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단서조항 ‘다목’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한 입증은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한 공공기관이 아닌 청구자가 하여야 할 것이며, 그 입증서류로는 법원의 가압류와 가처분 결정서, 지급명령서, 민사소송의 확정판결문 등을 들 수 있음. 채무자의 개인정보 중 재산(부동산, 동산, 무체재산, 유체재산, 채권 등) 상황에 관련된 정보는 청구인의 정보의 사용목적과 관련하여 입증이 이루어졌다면 법 제1조, 제3조, 제9조제1항 각 호, 제14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채무자의 개인정보 중 채권확보에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공개가 가능할 것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관련 서류 공개 가능 여부

- 토지보상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 수행을 위하여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물건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물건조서의 내용 및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계획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작성된 “물건이 있는 토지의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등과 물건소유자의 성명, 그 밖에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 물건조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단서 조항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로서 공개가 가능함
- 다만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상의 시기, 방법, 절차 및 금액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이 작성된 보상협의요청서”는 토지보상법 제15조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보상 금액 및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침해가 우려되어 비공개함이 타당할 것임

택지개발 관련 의견서 정보공개청구

-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의견서”의 내용에 개별 의견 제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명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할 경우 개인정보의 침해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와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이해관계자들 간의 분쟁의 소지 및 시시비비에 휘말려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단서 조항 ‘다목’의 규정인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는 정보인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 및 권리구제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해야 함

건축인허가 관련 정보공개청구

- “건축인허가 관련 자료”에 대한 공개여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제7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함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와 관련, 해당 인허가 신청서에는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가 가능할 것이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와 관련, 건축허가신청서에 포함된 건축 설계도면(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및 구조도, 설비도 등)이
① 설계·시공의 창의적인 고안·노하우 등으로서 공개함으로써 당해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를 기록한 문서인지 여부,
② 건축물의 설계도·설비의 배치도 등 시설설비의 관리에 관한 것으로서 공개함으로써 차후 준공 후 당해 건축 시설설비 경비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또한, 정보공개 여부 결정과 관련하여 해당 건축허가신청 민원인은 정보공개법상의 제3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보공개청구 사실통지 및 의견청취의 절차를 거쳐야 함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회원명단 정보공개청구

-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회원명단(회원 개인의 이름, 주소와 연락처 등)”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 ‘개인식별형’ 정보인 이름과 ‘프라이버시 침해형’ 정보인 주소 및 전화번호이기 때문에 회원 개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므로 비공개가 가능함
- 검토여하에 따라 공공기관은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제3자 의견청취(법 제11조제3항) 절차를 거쳐야 하나, 그 청구 대상 정보가 비공개 대상정보가 명백할 경우에는 이를 거칠 필요가 없음

소송제기를 위한 부동산중개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 “부동산중개업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의 정보는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로서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이며, 다만, 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공개 동의나 단서조항 각목에 해당되어야 함
- 단서 조항 각목 중 ‘다목’인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 및 개인구제(사익)를 비교·형량(교량)하여 그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함
- 예를 들어 민사소송을 통한 확정판결 후 또는 가압류, 가등기 등 법원의 허가를 얻은 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필요한 채무자의 재산상황에 관한 정보와 같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음
- 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단서조항인 ‘다목’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한 입증책임은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한 공공기관이 아닌 청구자가 하도록 해야 함

시청 콜센터 등의 녹음파일 공개 가능 여부

- “시청 콜센터 등의 녹음파일”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사생활 침해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함
- 해당 정보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열람 및 정보공개법제10조에 따라 공개청구를 할 수 있으며, 녹음파일에 직무상 응대한 직원의 음성 외에 제3자의 음성도 포함되어 있다면, 청구사실 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후 공개 또는 부분공개 하여야 할 것임
- 당사자가 사건 관련 증거자료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재판부에서 증거자료의 축약을 통해 해당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제출이 가능함

CCTV 녹화내용 정보공개청구

- 정보공개법 제2조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문서·필름·테이프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으로 정의하고 있어 “CCTV 내용”도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됨
-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며, (대법원 2009두6001 판결 참조)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른 부분공개란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할 것임(대법원 2003두12707 판결 참조)
- 한편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 정보가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는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 대상 정보의 기초 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고, 당해 기관에서 통상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사용하여 그 기초자료를 검색한 후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작업이 당해 기관의 컴퓨터 시스템 운용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면, 그 공공기관이 공개청구 대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기초자료를 검색·편집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09 두6001 판결 참조)
- 따라서 CCTV에 녹화된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한 후 영상압축기술에 의하여 새로운 동영상을 만들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하여 공개하는 것이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임(대법원 2012두25729 판결 참조)

과태료 납부내역 정보공개청구

- “특정개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납부내역”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회적인 지위, 경력, 명예 등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비공개하여야 할 것임

주택임대차계약 확정일자 정보공개청구

- 공공기관에서는 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도 함께 검토하여야 하는 바,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확정일자 부여일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요청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정보공개법’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함
- 따라서, 2014.1.1.일 이후 부여된 확정일자의 공개여부 및 그 내용과 범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고, 2013.12.31.이전에는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를 최대한 존중하고 동일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법과의 충돌·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하고, 추가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다목’의 ‘개인의 권리구제’ 사유를 인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개인의 권리구제’ 사유로 확정판결 후 채무자의 재산상황을 들 수 있음.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에서 예외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을 채권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공개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이 민사소송을 통한 확정판결 이후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가압류 및 가등기의 권리가 설정(공정증서 등)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됨. 따라서 청구자로부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허가하는 법원의 가집행 판결문을 청구서와 같이 접수받았다면 이는 청구자 즉 채권자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공개가 가능할 것임
 - ※ 확정판결(지급명령 등)의 경우 채무자가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만 한정
-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는 해당 주택의 임대인·임차인, 해당 주택의 소유자, 해당 주택 또는 그 대지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권리자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정하고 있음
 - ※ 등기기록에 기록된 권리자 중 법무부령에 정하는 자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제6조의 환매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질권자, 저당권자·근저당권자, 임차권자, 신탁등기의 수탁자, 가등기권리자, 압류채권자 및 경매개시결정의 채권자임

07.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의 의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함.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법인 등

주식회사, 공익법인, 종교법인, 특수법인, 기타 법인 외에 정치단체, 기타 법인격 없는 단체,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도 포함되나 공공기관은 포함되지 않음

•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2호의 ‘영업상 비밀’(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에 한정되지 않음 (대법원 2009두19021, 대법원 2010두24647)

비공개 이유

-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 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함 (대법원 2008두13101)

비공개 여부의 판단 기준

-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도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공개여부 결정(대법원 2009두19021)
-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라 함은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당해 법인 등의 경영·영업 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영업이익·거래신용 또는 법적 지위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로, 법인 등의 영업특성, 업무규모 등 제반 사정을 개별·구체적으로 고려함(중앙행심 2012-24651)

‘정당한 이익’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법인 등의 성격, 법인 등의 권리, 경쟁상 지위 등 보호받아야 할 이익의 내용·성질 및 당해 정보의 내용·성질 등에 비추어 법인 등에 대한 권리보호의 필요성, 법인 등과 행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대법원 2012두12303)

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크고 이를 감수하여야 하는 면이 강한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다른 법인 등에 대하여 보다 소극적으로 해석(대법원 2010두24647)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이라 함은 각종 행정처분 통지서 등을 들 수 있으며, 반드시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이 이미 발생한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님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 개연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이 이미 행하여지지 않았더라도 해당(정부법무공단 2012-440)

예외적으로 공개 가능한 정보 (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나목)

-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약해, 식중독 등에 의한 위해 발생 및 확대를 미리 방지
-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사업자의 각종 행정처분 통지서 등

서울시 정보 비(부분)공개 사례 분석

청구내용	심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서별 신문구독현황 (언론담당관) ▸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청 정보는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2016년 제2차 정보공개심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행심 2014-○○, -○○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 거부처분 취소청구 관련 심판 청구인이 제출한 교통영향평가 자료 (법무담당관) ▸ 관련 법령 및 제3자 의견 검토 결과,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청 정보는 타 법령에서 공개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위임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적인 교통영향 평가·분석 기법에 기초한 평가결과일 뿐이어서 공개 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2015년 제9차 정보공개심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월호 사고 기부금(성금) 모금 관련 ○○(주)가 제출한 기부금품 모집사용계획서 및 단체별 모금액 (민관협력담당관) ▸ 제3자가 제출한 정보로서 비공개 요청한 바 있으나, 법령상 공개가 필요한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심의 요청 	<p style="text-align: center;">〈 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 법령상 공개 대상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개 (2016년 7차 정보공개심의회)

청구내용	심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통신사에 지급된 기사검색 뉴스사이트 이용료, 전자신문 스크랩 운영 및 저작권료, 전광판 광고비 내역 등 (언론담당관) <p>▷ 소관부서의 공개 결정에 대하여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p>	<p style="text-align: center;">〈 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의 예산집행 내역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시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공개가 원칙이므로 공개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법인 ○○○○○○에 대한 행정처분통지서 (장애인복지정책과) <p>▷ 소관부서의 공개 결정에 대하여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p>	<p style="text-align: center;">〈 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공개를 요청한 정보는 재판에 관련되어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정이 없으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고,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개 (2020년 제5차 정보공개심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에서 추진한 한강 괴물 조형물 설치에 대한 상세비용내역 (한강사업본부 문화홍보과) <p>▷ 총 사업비, 자금계획, 상세내역 등은 경영상 영업상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p>	<p style="text-align: center;">〈 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한 사항이나 해당 계약이 이미 체결 완료되었으며, 특히 예산의 세부 집행내역은 공공기관에 대한 행정감시 및 시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공개 권고

청구내용	심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버스전용차로 승차대 광고사업권 관련 계약내용 중 무상사용기간, 운영비, 총사업비, 수익률 등 (교통운영과) ▷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의 이름과 결합하여 공개 시 당해 법인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청 정보는 시와 체결한 계약내용의 일부로서 공공기관과의 계약은 공개가 원칙이며, 업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2016년 제2차 정보공개심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메트로 9호선과 서울시가 체결한 실시협약서 (도시기반시설본부) ▷ 정보공개 청구 당시 해당 사업이 진행 중이었고, 협약서 상에 협약서 내용에 대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는 기밀 유지 규정이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시점에서 사업이 완료되었고, 협약서를 비공개 할 경우에 보호할 수 있는 기업의 영업상 이익과 시민의 알권리 및 시정의 투명성 보장을 위한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공개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실야구장 관리본부에서 제출한 '잠실야구장 편의시설 확충 관련 검토 요청'에 대한 답변내용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 확정되지 않은 사업계획 등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공개할 경우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청 정보에 포함된 사업계획은 개괄적인 사항으로서 공개 시 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 (2014년 제16차 정보공개심의회)

청구내용	심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시에 보조한 콜 관련 금액 (택시물류과) ▷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콜 관련 보조금은 전체 영업이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음 (2012년 제13차 정보공개심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수 충전소 노사협약서 및 2013년 7월 10일 충전소 관련된 서류 일체 (택시물류과) ▷ 노사 간에 협약한 내부관리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 시 악용이 염려되는 상황으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공개 요청한 경영·영업상 이익을 침해할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없고, 충전소명은 기 공개되어 있어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되지 않음 (2013년 제13차 정보공개심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영리 민간단체 ○○○○ 승인 서류 일체 (동물보호과) ▷ 단체의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 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부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승인 서류 중 ① 등록신청서, 정관, 임원회의록, 임원취임 예정자 명단, 위촉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시 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②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는 공개 시 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영·영업상 비밀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 ③ 수입지출예산서는 단체의 경영·영업상 비밀로 공개 시 정당한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2020년 제2차 정보공개심의회)

청구내용	심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동물) 입양사업 프로젝트 입찰 관련 ○○○○에서 제출한 서류 일체 (동물보호과) ▶ 단체의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 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부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 제출 서류 중 ① 지방보조금교부신청서, 청렴 이행서약서, 지방보조사업자관리카드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시 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② 단체소개서는 공개 시 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영·영업상 비밀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 ③ 지방보조금사업계획서는 단체의 경영·영업상 비밀로 공개 시 정당한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통장사본 및 보조금카드사본은 단체의 금융정보로 공개 시 정당한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2020년 제2차 정보공개심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재역환승주차장 조건부 사용기간 연장 허가검토’ 결재문서 (주차계획과) ▶ 업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고, 개인정보 내용을 담고 있어 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부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장 허가가 이미 완료된 사항으로 시설 계약자 및 전세금 등 일부 개인정보 및 경영·영업상의 비밀을 제외하고 공개 (2016년 제11차 정보공개심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서울형어린이집 재평가 최종 결과’ 결재문서(보육담당관) ▶ 공개 시 개별 어린이집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거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부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붙임문서는 개별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점수 등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일부 포함하고 있어 공개 시 해당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어린이집명 및 공인여부를 공개 ◦ 결재문서 본문은 상기 우려가 현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2016년 제1차 정보공개심의회)

청구내용	심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의도공원 스케이트장 운영 결과 보고 (공원녹지정책과) ▸ 금융기관에서 사업비 기부를 받아 조성하고, 민간단체에서 운영한 사항으로, 기부기관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부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을 수반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예산, 사업 내용 및 운영실적 등은 공개 ◦ 다만 사업비를 기부한 업체명과 기부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업체별 기부내역이 드러나지 않도록 정보공개법 제14조에 의거 업체명을 제외하여 공개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와 ○○도시철도 민자사업자와의 협약서 중 패널티 징구 근거 부분 등 (도시철도공무부) ▸ 제3자가 비공개 요청하였으며, 협약서상 비밀유지 조항을 들어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부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서 중 민원처리와 관련된 내용 및 계약공기에 대해 명백한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연기될 경우 위약 패널티 근거 조항은 공개 ◦ 다만, 당초 총 사업비와 사업비 구성 상세내역 등은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공개 시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되어 비공개 (2013년 제5차 정보공개심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충리뜰야구장 인조잔디 철거 및 펜스 보호패드 폐기물 처리 용역사업 계약 관련 정보, 펜스 보호패드 구매설치사업 계약 관련 정보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 ▸ 계약에 관한 사항과 업체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부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청 정보 중 견적서 및 산출기초조사서, 예정가격 검토보고 문서는 업체의 제안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경영상·영업상 비밀로서 비공개 ◦ 이를 제외한 계약서 및 사업 시행방침, 공사내역서, 대가 지급현황서(준공검사·감독조서) 등 계약 관련 정보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2015년 제6차 정보공개심의회)

청구내용	심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힐링센터 운영회의 결과보고 (인력개발과) ▷ 상담사례 등 위탁업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이 포함되어 공개 시 위탁업체 권익의 심각한 침해가 우려된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부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의 운영실적, 성과, 상담사례 등을 담은 문서로, 보호의 필요가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이나 상담기법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 참가자 사진 등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라매안전체험관 프로젝터 램프 구매 관련 정품확인서, 수입신고 필증, 기타 납품관련서류 일체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 업체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해당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부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청 정보 중 수입신고필증 내 해외거래처 정보는 경영상·영업상 비밀로서 비공개 ◦ 정품확인서 및 해외거래처를 제외한 수입신고필증은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2015년 제6차 정보공개심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자치구 소재 에너지 다소비 신고업체 및 업체별 에너지 사용량 (녹색에너지과) ▷ 해당 신고업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업체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부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다소비신고 업체명은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로 볼 수 없으므로 공개 ◦ 사용량은 해당 사업자의 동의 시 공개하고, 부동의 시 구체적 사용량이 아닌 개략적인 범위만 공개 (2012년 제12차 정보공개심의회)

청구내용	심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행사 이전등록 접수서류 (버스관리과) ▶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된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부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서류 중 양도양수 신고서의 양도가격과 시기는 당사자 간에 체결한 계약의 주요내용으로서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외하고 공개 (2012년 제13차 정보공개심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단법인 ○○선교회가 제출한 정관변경(기본재산 편입) 신청서류 (문화예술과) ▶ 서울시가 허가한 비영리 법인 관련사항 중 단체의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부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청 정보 중 법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타인의 기명날인 부분 및 법인기본재산 상세목록은 비공개 하고, 정관 등 나머지 정보에 대하여 공개 (2015년 제5차 정보공개심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사회 소속 구급차량 번호 및 지부현황 (보건의료정책과) ▶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회복지 법인 관련 사항 중 법인의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시 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부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부현황은 단체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된 자료로서 비공개의 실익이 없으므로 공개 ◦ 소속 차량번호는 단체의 내부운영에 관한 자료로서 비공개 권고

청구내용	심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0 다산콜센터 각 위탁업체 운영장부 (출납장부 및 주거래은행 통장 사본) (시민봉사담당관) ▷ 120 다산콜센터 위탁업체는 공모를 통해 선정·운영 중에 있으며, 위탁운영 중에도 분기별로 평가를 받는 경쟁관계에 있어 위탁업체별 운영장부가 공개될 경우 당해 업체들의 정당한 영업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0 다산콜센터 각 위탁업체 운영장부는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는 자료로 공개 시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비공개 (2013년 제7차 정보공개심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 투자사업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3201호) 관련 최초제안자 제안서, 총사업비 산출내역서 (도로계획과)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제15항에 따라 공개 시 최초제안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항이라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제안자 제안서’와 관련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제3차 제안공고 등 입찰계약에 준하는 과정이 진행 중에 있어 요청 정보가 공개될 경우 ‘제3차 제안’ 선정 등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최초제안자 제안서’는 제안업체가 축적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작성된 경영·영업상의 비밀로 공개할 경우 향후 동종·유사사업 참여 시 경쟁업체가 제안업체의 기술·경영상의 노하우를 이용하여 유리한 조건에 있게 됨으로써 제안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며, ◦ ‘총사업비 산출내역서’는 제안업체가 축적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작성된 경영·영업상의 비밀로 공개할 경우 향후 동종·유사사업 참여 시 경쟁업체가 제안업체의 기술·경영상의 노하우를 이용하여 유리한 조건에 있게 됨으로써 제안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 비공개 (2020년 제3차 정보공개심의회)

청구내용	심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보고서(KDI PIMAC) (동남권사업과) ▷ 최초제안자의 영업상 비밀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최초제안자의 영업상 비밀 침해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청 정보에는 최초 제안자의 제안서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제3자 제안공고 이전에 제안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할 경우 경쟁업체가 제안사의 기술·경영상의 노하우를 이용하여 유리한 조건에 있게 됨으로써 제안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 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2020년 제13차 정보공개심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지정금고 현황 (재무과) ▷ 시 금고 은행의 경영 및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자율은 시 금고 입찰과 관련된 업체의 영업전략 으로서 경영·영업상 비밀에 직접적으로 해당되어 비공개 (2013년 제14차 정보공개심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나눔카 서비스 운영현황 보고’ 결재문서 (교통정책과) ▷ 법인의 경영·영업상에 관한 정보 등으로 공개 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눔카 서비스는 비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요 청 정보는 민간사업자의 실적 등 경영·영업상의 비 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 시 해당 업 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2014년 제8차 정보공개심의회)

청구내용	심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포자원회수시설 비정상 가동에 따른 손실비용 청구 계획' 결재문서 중 「손실비용 산출내역」 (자원순환과) ▷ 법인의 사업활동 중 채무불이행 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한 내용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의 경영 및 영업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의 사업활동에 따라 발생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산출내역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정보로 공개할 경우 당해 법인의 경영·영업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2020년 제6차 정보공개심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비촉진구역 조합에서 제출한 원가자문 설계도서 (계약심사과) ▷ 해당 조합에서 재개발 사업진행을 위해 작성하고 검토를 의뢰한 설계도서로서 공개 시 조합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가자문 업무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 시 자문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조합의 계약(입찰)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여 조합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2016년 제4차 정보공개심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무형문화재 신청종목 (결련택견, 십팔기) 조사보고서 (역사문화재과) ▷ 조사보고서는 전문가 조사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위한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 시 심의 등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전승단체의 기량, 의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 시 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조사 인력풀이 한정되어 있어 공개 시 해당 조사자가 유추되어 향후 공정한 평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단체의 사회적 평가 저하 등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2015년 제14차 정보공개심의회)

청구내용	심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사업제안서 (마을공동체담당관) ▶ 공모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공개 시 공정한 심사업무 추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모단체의 사업제안서에는 개인정보 및 사업추진 전략 등 경영·영업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거나 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2014년 제12차, 제15차 정보공개심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자료 (재생지원과) ▶ 기술인력소득증명원, 4대보험사업장 가입자 현황, 표준재무제표증명 등은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는 정보사항이라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인력소득증명원, 4대보험사업장 가입자 현황, 표준재무제표증명 등은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비공개 (2013년 제7차 정보공개심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국가정보통신 IP응용 서비스 (인터넷전화) 사업자 선정 관련 사업자별 평가점수-기술평가 (실적평가), 가격 평가 결과 (총무과) ▶ 동종 사업이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추진되어 평가 점수가 공개될 경우 해당 사업자의 사업실적 및 사업전략 등 영업비밀 사항 예측이 가능하여 타기관 입찰시 사업자의 이익에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청 정보는 타사의 사업실적 및 영업전략 등이 유추가능한 정보로 공개 시 해당 업체의 영업상의 지위 등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업체명을 가린다 하더라도 기 공개된 타 정보와 결합하여 해당 업체를 유추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비공개 (2013년 제17차 정보공개심의회)

청구내용	심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부당사용 업체명 (택시물류과) ▸ 부가세 부당사용에 대한 환수 조치 등 국세청의 최종처분 이전의 자료로서 국세청의 추가 점검 및 최종처분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확정되지 않은 정보로 공개 시 특정 업체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청 정보는 부당사용 여부에 대한 중간단계 성격의 점검결과로서 국세청의 확정처분 전까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미확정된 사실의 공개로 해당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2016년 제15차 정보공개심의회)

관련 판례(재결례)

청구내용	판시(재결)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등의 상호, 단체명, 영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에 관한 정보 ▶ 7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추진비에 관련된 정보 중 법인 등의 상호, 단체명, 영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에 관한 정보는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함(대법원 2003두8302) ◦ 공공기관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물품구매 관련 '지출결의서'상 계약상대방에 관한 정보 중 상호, 사업자번호, 성명, 주소에 관한 정보는 법인 등의 영업상 유·무형의 비밀이나 노하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동법 제9조 제1항제7호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 ◦ 다만, 물품구매 관련 계약상대방에 관한 정보 중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동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살펴보아야 함 (법령해석례 06-01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공사의 수사집행 접대성 경비의 건별 집행서류 일체 ▶ 7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사건 정보에 피고 주장과 같이 거래 일시 및 거래 장소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정보가 피고의 영업상 유·무형의 비밀에 해당한다거나 이를 공개할 경우 피고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피고가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국민들이 납부하는 수신료 등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사로서 이 사건 업무추진비 등에 대하여 자의적이고 방만한 예산집행의 여지를 미리 차단하고 시민들의 감시를 보장함으로써 그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라도 그 집행증빙을 공개할 필요성이 큼(대법원 2007두1798)

청구내용	판시(재결)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택시 사업장별 고용·산재보험 보험료신고서 및 보수총액신고서 기재 내용 중 자격취득일, 자격상실일, 연간보수총액, 월평균 보수, 월별근로자수 등 정보 <p>▷ 7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사건 정보는 택시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수와 그들의 보수와 관련된 정보와 고용·산재보험의 가입 및 해당 보험료 산정을 위한 신고와 관련된 정보들로서, 그것이 공개될 경우 택시회사의 경영 및 영업상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비밀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공개(대전지법 2012 구합54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수업체 적자노선 지원 보조금액 (운수회사별, 일자별, 항목별) <p>▷ 7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자노선 보조 등의 공익적 이유로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이 당해 목적을 위하여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함으로써 그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공개의 필요성이 큼 ◦ 운수업체의 적자노선에 관한 실태가 공개될 경우 그 처분 등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공익과 비교할 때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됨이 정당함(대법원 2005구합91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의 ○○지구 아파트 관련 아파트 토지매입보상비, 택지조성비 등 <p>▷ 7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를 공개한다고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거나 재정악화로 인하여 각종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곤란해진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정보의 공개를 통하여 위 아파트의 분양원가 산출내역을 알 수 있게 되어 수분양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공개(대법원 2011두46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주택공사의 아파트 분양원가 산출내역 <p>▷ 7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주택공사의 아파트 분양원가 산출내역에 관한 정보는 그 공개로 위 공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06두20587)

청구내용	판시(재결)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 조성원가 산출내역 ▶ 7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고가 조성원가 산출내역을 비공개함으로써 업무추진상 편의를 거두는 이익이 공개함으로써 조성원가 산출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정부투자기관이 내부적으로 빠질 수 있는 행정편의주의와 형식주의 및 권한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익 등 보다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서울행법 2005구합123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재건축 주택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제공될 무상보상 평수의 사업수익성 등을 검토한 자료 ▶ 7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정보가 공개되면 피고와 소외 조합 사이의 재건축 사업 계약에 의하여 조합원들에게 제공될 무상보상 평수의 산출 근거를 알 수 있게 되어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이 사건 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보면, ‘공개 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03두94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생제 평가등급에서 상위 또는 하위에 속한 요양기관의 수, 명단 ▶ 7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양기관에서 항생제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 지를 조사하여 등급을 매기고, 그 중 상위 또는 하위등급에 속하는 기관의 수와 주소·명칭을 공개하는 것은 의료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의 제공과 의료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에 해당 (서울행법 2005구합168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시회사의 노사 단체협약서, 임금협정서 ▶ 7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사건 정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라 노동조합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에게도 적용되는 사항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경영상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어 청구인 회사의 노조원들에게는 공개된 자료이므로 경영·영업상의 비밀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중앙행심 2013-07528)

청구내용	판시(재결)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2012년 ○○대학교 병원에서 산정한 청소용역 원가산정내역서, 외주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등 ▶ 7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기업이 다른 용역업체와의 관계에서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된다거나 영업 활동이 곤란해진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소속 근로자들의 현재 근로 조건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핵심적인 정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대전지법 2012구합30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TL 사업 추진현황 및 실시협약서 ▶ 7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협약의 내용을 이루는 이 사건 정보 전체가 피고 보조참가인의 영업상 비밀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개로 인하여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사회기반시설 사업 자체가 공공적·공익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 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크고 이를 감수하여야 하는 면이 강하므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일부 해당한다 하더라도 같은 조항 단서 나목 소정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개 (광주지법 2008구합11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공사와 ○○건설 컨소시엄간 체결한 어등산 개발협약서 ▶ 7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공공성·공익성이 강하고, 지역경제 및 자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보조참가자(리조트)는 협약에 의해 사업의 실질적 시행자가 되므로 협약을 단순한 사법적·일반적 계약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점, 협약의 체결이 완료된 이상 이 사건 협약을 공개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협약에 따른 피고보조참가인 등의 지위나 사업 수행에 장애가 있게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오히려 협약체결·이행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는 현 시점에서 정보공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투명성 확보 및 지역주민 불신 등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여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없음 (대법원 2010두12156)

청구내용	판시(재결)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기관의 정부(정책)광고와 관련, 이미 집행한 정부광고의 ‘매체사별 계약단가’ ▶ 7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광고가 집행되는 매체사 중 지상파 방송과 기타 매체사는 각각 한국방송공사와 신문발전위원회를 통해 방송 프로그램별 광고단가와 전체 발행부수, 구독수입과 광고수입 등을 공개하고 있으며, 또한 이미 집행한 정부광고(정책광고)의 ‘매체사별 계약단가’는 법인 등의 영업상의 비밀 중 판매방법의 일부만 포함하는 것이므로 생산방법 등이 포함될 수 있는 판매원가 산출내역보다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다고 볼 수 없음 (법령 해석례 06-00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언론사(방송, 신문, 인터넷 언론 등)에 지출한 광고비 세부내역(건별 집행일자,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 명칭, 집행액수, 광고내용 등) ▶ 7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이 집행한 예산의 내역으로서 지출 성격이 기밀성을 띤 것이라 볼 수 없고, 피청구인의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점,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 피청구인이 집행한 홍보비는 이를 수령한 언론사의 광고수입의 일부분을 구성할 뿐이어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해당 언론사의 경영 및 영업상의 비밀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려움 (중앙행심 10-215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 공사비 명세 ▶ 7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고가 이미 고속도로 및 부속시설의 건설이라는 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실시협약서의 내용이나 공사비의 명세 등을 공개한다고 하여 참가인의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된다거나 사업완료 후 고속도로 등의 관리·운영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곤란해진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통하여 실시협약서의 내용이나 공사비의 명세 등을 알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피고의 사회간접시설 확충·운영에 관한 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공개 (대법원 2010두24647)

청구내용	판시(재결)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시 유가보조금 의심거래 및 부제일 신용카드 결제 관련 차량번호 ▸ 7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번호를 공개함으로써 인하여 피청구인이나 해당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동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 확립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국정 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유가보조금 허위청구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 하고 유가보조금 지급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그 공개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임 (중앙행심 2016-007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한 정보 ▸ 7호의 비공개 대상에 일부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기별 발주계획, 계약 체결일, 추정가격 또는 예정 가격, 계약 상대방의 성명, 계약금액 및 1천만 원 이상의 월별 수의계약 내역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 등에 따라 공개청구 여부에 상관없이 공개하게 되는 것이고, 그 외의 국가기밀이 아닌 계약에 관한 정보는 정보공개법에 의거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나,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음 (법령 해석례 11-03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추진비에 관련된 정보 중 회사의 수입·지출내역, 각종 자금조달과 회계처리내역 등이 포함된 과세정보 ▸ 7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추진비에 관련된 정보 중 문제의 과세정보에는 개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여부, 그 시기 및 세무조사의 내용과 결과, 언론사의 수입·지출 현황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정보는 경쟁 언론사에 대한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노출될 경우 당해 언론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인정됨 (서울고법 2002누19086)

청구내용	판시(재결)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 7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이름과 결합하여 공개 시 당해 법인 등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대법원 2003두83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평가업자 선정서 및 선정절차와 관련된 제반 서류 ▶ 7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평가업자 선정서 및 선정절차와 관련된 제반 서류의 경우, 그 일부에는 감정평가기관을 추천한 위 사업지구 보상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감정평가업자 선정과 관련된 사항들을 담고 있어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고로서는 향후 감정평가업자 선정 등에 있어 선택의 폭이 제한되는 등 이익이 현저히 저해될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정한 비공개정보임 (수원지법 2005 구합52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기사별 운송수입현황 (회사 소속 운전기사별 출입고 시각, 수입금, 연료량, 주행거리, 영업거리, 영업시간 등 포함) ▶ 7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정보는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공개될 경우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비공개 (광주지법 2012구합32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교와 인천시 간 ○○대 송도캠퍼스 부지이전 관련 사업협약서 ▶ 7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가 투자유치 차원에서 ○○대와 체결한 이 사건 사업협약서의 내용은 투자유치를 위한 치열한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인천시 송도지구 이미 입주하였거나 입주를 추진하고 있는 국내외 기업, 대학 등과 관계에 있어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로서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함 (중앙행심 2013-14606)

청구내용	판시(재결)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 이해도 조사 설문지 중 면접원의 질문요령, 문항과 관련한 예시 ▸ 7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이해도 조사를 위해 작성한 설문지에는 면접원의 질문요령, 질문문항, 문항과 관련한 예시,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겠다는 각서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면접원의 질문요령, 문항과 관련한 예시는 피청구인이 실시하는 조사업무에 대한 고유의 노하우가 반영된 자료로서 동 자료가 공개될 경우 다른 조사기관과의 경쟁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아 피청구인의 경영·영업 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받거나 영업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중앙행심 2013-027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사업자등록을 위하여 제출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 7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이 그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이 사건 건물부분에 관하여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함 (서울고법 2008누26574)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 관련]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명과 근로자수 등 공개 가능 여부

- “사업체명과 그 사업체의 외국인 근로자수”는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특정업체의 인력 운영현황을 나타내는 자료이므로 타인에게 공개하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로서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고, 한편 특정업체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현황이 공개될 경우 해당 업체의 신용도나 영업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우려를 배제할 수 없어 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청구인의 알권리 보호 등의 이익보다 이를 비공개함으로써 해당 업체의 기업경쟁력 등을 보호할 이익이 더 크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로 보아야 할 것임
- 한편 “외국인근로자의 국적”은 근로자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특정근로자의 개인정보가 알려짐으로써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법인 등의 상호, 단체명, 영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에 관한 정보

- 업무추진비에 관련된 정보 중 법인 등의 상호, 단체명, 영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에 관한 정보는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함(대법원 2003두 8302)
- 공공기관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물품구매 관련 ‘지출결의서’상 계약상대방에 관한 정보 중 상호, 사업자번호, 성명, 주소에 관한 정보는 법인 등의 영업상 유·무형의 비밀이나 노하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동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
- 다만, 물품구매 관련 계약상대방에 관한 정보 중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동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살펴보아야 함(법령해석례 06-0132)

금고 관련 자료 정보공개청구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 중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함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소정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에 한하지 않고,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며,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는 앞서 본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크고 이를 감수하여야 하는 면이 강한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다른 법인 등에 대하여 보다 소극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음(대법원 2007두1798)
- 따라서 “금고 약정서, 금리, 평잔 등”을 공개했을 경우 은행 등의 독립적인 내부사항, 노하우 등이 알려지게 되어 법인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함
- 또한 해당 정보는 제3자와의 관련성을 함께 검토하여야 하는바, 제3자 관련 정보라고 판단된다면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제3자 의견청취(제11조제3항) 절차를 거쳐야 함

하도급계약서 및 하도급내역서(최초, 최종) 및 원하도급 대비표 (최초, 최종) 공개 가능 여부

- “공사도급계약서 및 하도급계약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하도급업체 선정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여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를 확립하게 되는 등 공익상의 이익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소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개가 가능할 것임
- “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가 작성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 대비표”에는 각 (하)도급업체의 자재 및 공정별 원가정보와 그 산출근거까지 포함되어 있어 이는 도급사 및 하도급사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가 가능할 것임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한 정보

- 분기별 발주계획, 계약 체결일, 추정가격 또는 예정 가격, 계약 상대방의 성명, 계약금액 및 1천만 원 이상의 월별 수의계약 내역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 등에 따라 공개청구 여부에 상관없이 공개하게 되는 것이고, 그 외의 국가기밀이 아닌 계약에 관한 정보는 정보공개법에 의거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나,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음(법령 해석례 11-0395)

검인계약서 매매일자, 매매금액 정보공개청구

- “(사)위원회가 취득한 계약서상 매매일자과 매매금액”의 정보는 ‘법인의 내부정보’에 해당되는 경영·영업상의 비밀사항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를 공개할 경우 당해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대표자(제3자)의 의견청취 결과를 참고하여 “청구인의 청구취지(정보사용 목적)를 근거로 한 공개로 인한 청구자의 이익과 비공개로 보호되는 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교량)하여 결정해야 함

정부기관의 정부(정책)광고와 관련, 이미 집행한 정부광고의 ‘매체사별 계약단가’

- 정부광고가 집행되는 매체사 중 지상파 방송과 기타 매체사는 각각 한국방송공사와 신문발전위원회를 통해 방송 프로그램별 광고단가와 전체 발행부수, 구독수입과 광고수입 등을 공개하고 있으며, 또한 이미 집행한 정부광고(정책광고)의 ‘매체사별 계약단가’는 법인 등의 영업상의 비밀 중 판매방법의 일부만 포함하는 것이므로 생산방법 등이 포함될 수 있는 판매원가 산출내역보다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다고 볼 수 없음(법령해석례 06-0037)

식품위생 등 공개 가능한 행정처분의 범위

- “식품위생 등 행정처분 내역”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소정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에 한하지 않고,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으로 해석함이 상당함(대법원 2007두1798)
- 예외적으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도 공개가 가능한 단서조항 중 ‘가목’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로서 이는 약해, 식중독 등에 의한 위해발생을 미리 방지하거나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는 공개하라는 취지이며, ‘나목’은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로서 이는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업자의 각종 행정처분내역 등은 공개가 가능할 것임
- 참고적으로 공인중개사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내역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1항제7호 나목에서 정한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 할 것임

국고보조사업 시행자 관련 정보공개청구

-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는 해당 정보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 등에 해당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법 제14조에 의한 부분공개를 검토해야 함
- 참고로, “보조금에 관한 문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세금과 같은 공적자금에 의해 조성된 금원을 반대급부 없이 제공받는 보조금의 성격을 고려할 때, 보조금 관계 문서는 공개할 필요성이 큰 정보에 해당함
- 다만, 동종의 보조사업이 차년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 현재 행하고 있는 보조금 교부에 관한 정보 공개로 인해 보조금 교부의 우선순위 등의 실체가 판명되고 장래 보조금 심사사무 등에 현저히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고, 보조사업의 계산내역이 판명되어 장래의 계약 사무의 적정한 실시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가 가능함

08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의 의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함

비공개 이유

-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정보로서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정당한 가격결정에 왜곡을 초래하여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서울행법 2007구합15131)
 - 부동산 투기·매점매석은 건전한 시장기능을 교란시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 유형의 예시에 해당함(2019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 P170)

비공개 여부의 판단 기준

- 제8호는 대상 정보가 특정되지 않고 단지 그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이지만 하면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됨(2019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 P170)
- 해당 계획이 이미 공표되었거나 그 내용을 다른 경로를 통해 공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는 비공개 대상이 아님
- 결정통지서에 공개 시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정황을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함

서울시 정보 비(부분)공개 사례 분석

청구내용	심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납토성 합리적인 방향 및 추진전략 연구용역보고서 (문화재과) ▷ 보고서에는 권역별 개발방향 등 각종 부동산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개 시 투기 등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정보는 주민의견을 수렴, 문화재관리 및 민원 해소 방안을 마련하여 정책결정 권한이 있는 문화재청에 기본계획을 수정·반영토록 건의하고자 정책참고용으로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공개 시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막연한 예측만으로 비공개하기보다는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의 의사결정과정에 지속적으로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 (2012년 제13차 정보공개심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부동산시장 동향(재건축 연한 완화에 따른 가격변동 점검) (토지관리과) • 용산국제업무지구 부동산시장 동향보고(토지관리과) ▷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자료는 2007년도부터 내부적인 정책참고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월 단위로 발행하는 참고자료로서 공개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지구 및 한강변 관리방안 용역 관계관 검토회의’ 결재문서 (공동주택과) ▷ 공개 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용역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2014년 제17차 정보공개심의회)

청구내용	심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정비사업 중 시장 직권해제 예정지역 현황과 판단근거, 구청장 및 주민이 해제요청한 각 지역 현황 등 (재생협력과) ▷ 직권해제 예정지역 및 해제 요청지역은 공개시 해당지역 주민들의 혼란 및 재산권 침해 등이 예상된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부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직권해제 예상지역 및 판단근거는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 시 해당 업무 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대상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구청장 및 주민이 해제요청한 지역 현황은 고시 등의 방법으로 이미 공개된 사항이므로 공개 ◦ 사전협의체 및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추진실적 등은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하여 일부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공개하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전체 현황과 상이할 수 있음을 안내 (2016년 제8차 정보공개심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조성과에서 투자심사위원회에 제출한 사업목록과 심사분석의뢰서 관련 서류 (공원조성과) ▷ 보상대상 사유지 지번, 향후 보상계획 등 공개 시 보상금을 목적으로 해당지역의 토지를 매입하는 등 부동산 투기행위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하고, 투자심사를 통과하여 공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부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상이 미완료된 사업의 심사분석의뢰서는 공개 시 보상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비공개 ◦ 투자심사위원회에 제출된 사업목록 및 보상이 완료된 사업의 심사분석의뢰서는 공개 (2014년 제14차 정보공개심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타운 재개발 실태조사 관련해 현재까지 실태조사가 완료된 구역 모두의 개별 자산평가금액 목록 (재생지원과) ▷ 특정 개인의 재산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로서 공개 시 개인의 재산의 보호에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부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자산평가금액 목록은 특정 개인의 재산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재산보호에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고,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지정 및 해제가 결정되고 이에 따른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비공개 ◦ 실태조사 감정평가 등에 관한 기준은 공개 (2013년 8차 정보공개심의회)

청구내용	심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시설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결과보고서 (시설계획과) ▷ 학교시설 관리에 대한 정책을 수립을 위한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며, 도시계획시설 결정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미리 공개 시 부동산 관련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사업은 관련 정책수립을 위하여 수행한 것으로, 현재 정책수립을 위한 내부검토 과정에 있어 공개 시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학교이적지 및 미집행 학교시설 등의 정보는 도시관리계획과 연계되어 사전 공개 시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2015년 제12차 정보공개심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산 지구단위계획(서부 이촌동 일대)’ 재정비용역 착수 보고회의 결과 (도시관리과) ▷ 현재 진행 중인 용역에 대한 정보로서 공개 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행 중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 시 미확정된 내용이 공개되어 부동산 투기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며, 재정비용역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2015년 제3차 정보공개심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비사업장 집중분석을 위한 현장조사 보고서 (재생협력과) ▷ 다수의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정책으로 공개 시 사회적 갈등으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정비구역 현장조사를 통해 집중분석이 진행 중에 있어 공개 시 정책관계자, 시민 등의 혼란과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구상을 위한 내부검토 자료로서 각 이해관계자의 의견 및 주관적인 판단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공개 시 무용한 혼란이나 오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미확정된 지역정보의 제공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유발하고, 해당 주민의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2015년 제1차 정보공개심의회)

청구내용	심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허가건축물확인원 제3자 발급 가능 여부(건축기획과) ▶ 무허가건축물확인원에 대한 제3자의 발급요청에 대하여 발급에 대한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하다는 사유로 심의 요청 	<p style="text-align: center;">〈 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청 정보의 제3자 발급 시 무허가 건물 거래에 악용되어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조성 업무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비공개 (2013년 제16차 정보공개심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자동차 터미널 복합화 사전협상 검토기준(공공개발센터) ▶ 관련 부서간 개괄적인 사항에 대해 사전 협의를 위한 자료로, 공개 시 관련 부지의 부동산 투기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적인 시의 개발방향 등이 포함되어 대상지 및 인근 지역에 부동산 투기 유발 등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 해당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는 시점 이후 공개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수장 인근 아파트 등 주변 거주민을 위한 대책(검토결과) (공원조성과) ▶ 공개 시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정보공개 청구건은 정수장 전면부 지역에 대한 공원용지 편입여부 및 내용에 관한 것으로서, 공원용지 편입여부는 인근 아파트, 상가 등의 재산변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에 따라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며, 현재도 세부적인 정책이 미결정된 상황으로 내부결정 과정의 정보이므로 비공개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역세권 중심의 주거재정비방안 연구용역 (임대주택과) ▶ 해당 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 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용역 결과에 특정 지역에 대한 개발분석 및 방안 제시안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사업이 종료된 시점에서 정보공개 여부를 재검토해야 함

청구내용	심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아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 계획 변경(안) 보완요청 (재정비과) • 삼청동길 및 가회동길 지역지구 단위계획(한옥문화과) • 돈화문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보고회 결과보고 (한옥문화과) • 공공주택 10만호 건설사업 추진계획(임대주택과) •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역세권 중심의 주거재정비방안 연구용역 (임대주택과) <p>▷ 정보공개 청구 당시 해당 개발 기본계획이 진행 중인 사항 으로서,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을 부추기고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p>	<p style="text-align: center;">〈 비공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정보에 특정 지역에 대한 개발분석 및 방안제시안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사업 종료 등 비공개 사유 소멸 시점에서 공개 권고

관련 판례(재결례)

청구내용	판시(재결)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이 끝난 상태인 경우의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와 관련된 구비서류 및 협의내용과 협의결과 ▶ 8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환경성 검토와 관련하여서는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 요청기관이 행정계획을 확정·승인·지정하기 이전이나 개발사업을 허가·인가·승인하기 이전에 특정인이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와 관련된 구비서류와 협의내용 및 협의결과를 알게 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에 이용하게 되어 부당한 이익을 초래하게 될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음 (중앙행심 2005102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서류 일체 ▶ 8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건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서류 일체에 대한 정보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입안하여야 되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공개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됨 ◦ 설사 동 정보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고 하여도 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함 (중앙행심 2001038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정로 역세권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 설명회 PPT 자료 중 ‘4. 구역계 설정부분의 중구청 주관부서 검토의견’을 제외한 부분 ▶ 8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중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있는 4. 구역계 설정부분의 중구청 주관부서의 검토 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자료는 충정로 역세권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하여 공개 시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보기 어려움 (서울행심 2011-373)

청구내용	판시(재결)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관련 자료 ▸ 8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사건 정보는 대체취득 부동산의 주소, 소유주, 임대상황과 동 부동산의 감정평가 세부기준 및 인근 부동산의 평가사례, 감정평가금액 및 계약조건 등 계약이 해지된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세부내역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어 제3자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고, 부동산 투기 등 개인적인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으며,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예치기관 및 계좌번호, 예치기관별 예금액 등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금융거래 현황과 수익용 기본재산의 세부적인 변동사항 및 운용방법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내역이 포함되어 있어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대학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 (중앙행심 2013-065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유림 매수 현황(소재지번, 면적, 매수이유, 매수목적, 매수금액, 현재 활용 현황) ▸ 8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청은 2030년까지 국유림 비율 32%를 목표로 ‘국유림 확대 기본계획’에 따라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국유림과 연결하거나 가까운 위치에 있는 사유림 등을 매입하여 국유림율을 확대하고 있는 바, 소재 지번과 면적, 매수 이유, 매수 목적, 매수 금액, 현재활용 현황 등의 정보가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임 (중앙행심 2011-30387)

제4장 답변 및 공문 예시

01. 정보공개 관련 통지서 **답변 예시**

공개 결정통지서 예시

- 공개대상 정보를 당해 기관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경우

서울시에서 직무상 보유·관리하고 있는 자료 중 귀하께서 요청하신 정보와 일치한 자료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개 문서명 / 공개 내용]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과 ○○○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T.○○○○-○○○○)

- 공개대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으나 이미 사전공개·공표된 경우로서 정보소재 안내로 갈음하는 경우

서울시에서 직무상 보유·관리하고 있는 자료 중 귀하께서 요청하신 정보와 일치한 자료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개 문서명 / 공개 내용]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전 공개된 자료로서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서울정보소통광장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열람·출력할 수 있으므로 정보소재 안내로 대신합니다.

- 정보소재 : 서울 정보소통광장 홈페이지의 '행정정보'
- 접속주소 : (해당 사이트 URL)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과 ○○○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T.○○○○-○○○○)

- 청구내용과 일치하는 자료는 없으나, 유사한 자료로 갈음하는 경우

귀하께서 요청하신 정보와 일치하는 자료는 없으나, 청구정보의 핵심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아래자료를 공개합니다.

[공개 문서명 / 공개내용]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과 ○○○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T.○○○○-○○○○)

부분공개 결정통지서 예시

- 공개대상 정보에 일부 비공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부분공개할 경우

[공개 내용]

귀하께서 요청하신 정보 중 아래 자료를 공개 합니다.

공개 자료 : ○○위원회 회의록(발언자명 제외), 수당 지출문서(개인정보 제외)

[비공개 내용 및 사유]

귀하께서 요청하신 정보 중 아래 자료에 대하여 비공개 처리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비공개 내용 : 회의록 내용 중 발언자명, 참석수당 지출문서 중 위원 계좌번호
2. 비공개 근거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3. 구체적 사유
 - 회의록의 내용 중 내용 중 발언자명은 향후 자유롭고 활발한 심의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심의회가 종료된 이후에도 심의과정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장할 필요가 있고,
 - 외부위원의 계좌번호는 공개될 경우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하며, 이에 해당 부분을 가린 정보를 공개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과 ○○○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T.○○○○-○○○○)

비공개 결정통지서 예시

- (1호) 다른 법률이나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 내용 및 사유]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공개 결정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비공개 내용 : 서울시에서 비영리단체에 재산세를 부과한 사례
2. 비공개 근거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정보는 해당 법률 등을 우선 적용하여 공개하지 않음
3. 구체적 사유
 - 귀하께서 청구하신 ‘비영리단체에 재산세를 부과한 사례’는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지방세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 상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에서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는 정보입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정보로 판단되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과 ○○○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T.○○○○-○○○○)

- (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보

[비공개 내용 및 사유]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공개 결정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비공개 내용 : ○○아리수정수센터의 상황별 위기관리 매뉴얼

2. 비공개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함

3. 비공개 사유

- 정수시설은 국가보안 목표시설로, 아리수정수센터의 위기관리 매뉴얼은 대테러 등 비상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을 포함하여 궁극적으로 서울시민의 생명수인 '아리수'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할 목적으로 수립되었습니다. 이러한 목적의 매뉴얼이 공개될 경우 대테러 등 비상사태에 대한 대처 및 복구에 관한 사전정보가 유출되어 원활한 인적·물적 동원의 차질이 발생하는 등 국가안전 보장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정보로 판단되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과 ○○○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T.○○○○-○○○○)

- (3호)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공공안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보

[비공개 내용 및 사유]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공개 결정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비공개 내용 : 다중이용시설 ○○○의 도면

2. 비공개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함

3. 비공개 사유

- 다중이용시설의 도면은 공개될 경우 테러 및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현저한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정보로 판단되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과 ○○○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T.○○○○-○○○○)

- (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보

[비공개 내용 및 사유]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공개 결정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비공개 내용 : 특별관리대상 수용자의 수용·관리계획

2. 비공개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
-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함

3. 비공개 사유

- 특별 관리 대상 수용자의 수용·관리계획은 특별처우, 계호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어 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재소자들의 관리와 근무자들의 안전 확보 등 교정행위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됩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정보로 판단되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과 ○○○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T.○○○○-○○○○)

- (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에 대한 정보

[비공개 내용 및 사유]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공개 결정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비공개 내용 : ○○년 인사위원회 회의록

2. 비공개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함

3. 비공개 사유

-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압력 내지 분쟁에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높고, 발언내용 공개에 따른 심리적 부담으로 위원들간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에 제한을 초래하는 등 공정하고 원활한 인사관리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정보로 판단되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과 ○○○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T.○○○○-○○○○)

- (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비공개 내용 및 사유]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공개 결정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비공개 내용 : 119 신고자의 성명 및 연락처

2. 비공개 근거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함

3. 구체적 사유

- 119 신고자의 성명 및 연락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신고자의 사생활을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입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정보로 판단되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과 ○○○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T.○○○○-○○○○)

- (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보

[비공개 내용 및 사유]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공개 결정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비공개 내용 : ○○법인이 거래하는 금융기관 계좌번호
2. 비공개 근거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7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함
3. 구체적 사유
 - ○○법인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는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의 이름과 결합하여 공개될 경우 당해 법인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정보로 판단되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과 ○○○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T.○○○○-○○○○)

- (8호)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정보

[비공개 내용 및 사유]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공개 결정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비공개 내용 :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 중심의 주거정비방안 연구용역 결과
2. 비공개 근거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함
3. 구체적 사유
 - 청구하신 연구용역 결과에는 특정지역에 대한 개발 분석 및 방안제시안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정보로 판단되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과 ○○○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T.○○○○-○○○○)

정보공개 청구외(부존재) 통지 예시

-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서울시에서 보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므로 아래와 같이 부존재함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존재 내용 : 서울시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직업현황
2. 구체적 사유 :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 귀하께서 청구하신 '서울시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직업현황'은 관련 법령 및 업무분장, 업무지침이나 훈령, 예규 등에 따라 서울시가 생산·접수하지 않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공개할 대상 정보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과 ○○○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T.○○○○-○○○○)

- 정보를 취합·가공해야 하는 경우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서울시에서 보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므로 아래와 같이 부존재함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존재 내용 : 건축회사별, 층수별, 주차장보유여부별 건축인허가 통계
2. 구체적 사유 : 정보를 취합·가공해야 하는 경우
 - 서울시는 건축인허가 서류자체만을 보유·관리하고 있을 뿐 귀하께서 청구하신 기준(건축회사별, 층수별, 주차장보유여부별)에 대한 건축인허가 통계를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개할 대상 정보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과 ○○○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T.○○○○-○○○○)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보존 연한 경과로 폐기된 경우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서울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므로 아래와 같이 부존재함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존재 내용 : 하천공사 준공인가 신청 시 보완요청 기안용지 관련서류
2. 구체적 사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보존연한 경과로 폐기된 경우
 - 귀하께서 청구하신 '하천공사 준공인가 신청 시 보완요청 기안용지 관련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또는 근거법률)」상 보존기간이 ○○년으로, 보존연한 경과 등으로 폐기되어 공개할 대상 정보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과 ○○○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T.○○○○-○○○○)

-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서울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므로 아래와 같이 부존재함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존재 내용 :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 관련된 서류 일체
2. 구체적 사유 :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 귀하께서 청구하신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 본인과 관련된 서류 일체'는 청구내용과 범위가 포괄적이고 특정되지 않아 대상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공개할 대상 정보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과 ○○○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T.○○○○-○○○○)

• 공개 정보와 부존재 정보가 혼합된 경우(공개결정)

귀하께서 청구하신 내용 중 서울시에서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는 정보가 일부 포함되어 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공개 내용 : 심의회 위원 명단 및 위촉일

2. 부존재 내용 : 정보공개 심의위원의 학위논문

- 사유 :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공개 심의위원의 학위논문'은 관련 법령 및 업무분장, 업무지침이나 훈령, 예규 등에 따라 서울시가 생산·접수하지 않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공개할 대상 정보가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과 ○○○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T.○○○○-○○○○)

• 부분(비)공개 정보와 부존재 정보가 혼합된 경우(부분(비)공개결정)

귀하께서 청구하신 내용에는 공개가능한 부분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비공개 정보, 그리고 서울시에서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는 정보가 혼합되어 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비공개 내용 : 심의회 위원의 개인 휴대폰 번호

2. 비공개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함

3. 비공개 사유

- 심의회 위원의 개인연락처는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정보로 판단되어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함을 알려드립니다.

4. 부존재 내용 : 정보공개 심의위원의 학위논문

- ‘정보공개심의위원의 학위논문’은 관련 법령 및 업무분장, 업무지침이나 훈령, 예규 등에 따라 서울시가 생산·접수하지 않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공개할 대상 정보가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과 ○○○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T.○○○○-○○○○)

다른 기관 이송 통지 예시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서울시에서 보유 또는 관리하지 않는 정보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제4항에 의거,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를 2021.〇〇.〇〇자로 해당 업무의 소관 기관인 '〇〇구'로 이송함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기관명) 정보공개 담당자 성명 〇〇〇, 전화번호 〇〇〇〇-〇〇〇〇

02. 관련 공문 예시

-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 요청한 경우

제목 : 정보공개 관련 제3자 의견 요청

1. 우리 시로 아래와 같이 귀 기관에서 제출하신 문서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되었습니다.
2. 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귀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1년 ○○월 ○○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개요청 내용 : 2021 ○○○○사업 시행 세부계획
3. 만약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과 ○○○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 청구에 대한 보완 필요 시 청구인이 공문으로 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제목 : 정보공개 청구내용 보완요청

1.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법인택시 사업주에게 보낸 공문서 일체와 관할관청에 보낸 공문서 일체'(접수번호, 접수일자)와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내용은 청구내용과 범위가 포괄적이고 특정되지 않아 대상을 확정하기 어려우니, 청구대상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시에서는 구체적인 정보에 대한 청구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목록'을 아래와 같이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정보소통광장(<http://opengov.seoul.go.kr>) → 정보공개청구 → 정보공개목록
4.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과 ○○○주무관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2021

정보공개 업무 매뉴얼

발행일	2020년 12월
제작	행정국장 김태균
	정보공개정책과장 김혁
	정보공개팀장 박미희
	주무관 최우석
발행처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정책과